

감사행정 편람

2013

경 기 도
(감사담당관)

발 간 사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감사행정 편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령이 개정되고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분야별 업무매뉴얼」이 일선 시·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실무용 참고서인 데 반해 도와 시·군 감사담당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경기도 「감사행정 편람」은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참고해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의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실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일반행정, 보건복지·환경, 지역경제·교통, 도시주택·건설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지침서로서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감사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지적한 분야별 감사사례를 수록하고 2012년 새로이 마련된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 매뉴얼'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수록해 표준화된 감사절차와 처리기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한 「감사행정 편람」이 감사원에서 발간한 「2012 자체감사 통합매뉴얼」과 함께 현장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 김은수

감사행정서비스연장

경기도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속·공정·편리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모든 고객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고객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① 우리는 모든 고객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시정 및 피해 구제조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③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인의 자세

- 우리 감사인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역군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진다.
- 우리는 항상 법에 기본을 두어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에는 공명정대하고 근면·성실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생활에는 청렴하고 결백하며, 공직자와 이웃의 규범이 된다.
- 이러한 신념과 실천의지를 다지면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감사인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밝힌다.

1. 생활 자세

- 정직과 청렴은 감사인의 표상으로서 우리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고고한 자세, 고매한 인격으로 정의를 실천한다.
- 항상 긍정적 가능성의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창의적 생활 자세를 견지한다.
- 가정에는 화목하고, 이웃에는 친절하며, 정부시책에는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모범시민이 된다.
- 생활은 근검절약하고 사치낭비와 허례허식은 일체 배격하며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근무 자세

- 조직의 발전이 개인발전의 근본임을 깨닫고, 매사를 개인의 이익 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앞세워 판단하며, 이를 솔선 실천한다.
- 맡은 일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은 부지런히 익혀 개인의 자질향상에 정려함으로써 조직의 업무발전을 기한다.
- 지시명령은 철저히 준수하고 정당한 주장은 적극 건의하여 조직의 용화를 기함으로써 항상 최상의 기강 수준을 유지한다.
- 단정한 복장과 용모, 예의바르고 절도있는 언행으로 항상 명량한 근무 자세를 유지한다.
-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감사 자세

- 감사는 사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판단한 연후에 실지감사에 임한다.
- 실지감사는 사전 도출된 문제점 중심으로 이를 확인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주장을 삼가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 실지감사 시에는 품위와 예절을 지키고 친절, 지도적 자세를 견지하며, 어떠한 감사비용도 수감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감사결과 처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긍정적으로 국가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처리한다.



목 차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 | |
|------------------------|-----|
| 제 1 장 지방재정 분야 | 1 |
| 1. 예산·회계 | 1 |
| 2. 지방세·세외수입 | 25 |
| 3. 재산관리 | 55 |
| 제 2 장 일반행정 분야 | 77 |
| 1. 인사 | 77 |
| 2. 정보통신 | 105 |
| 3. 문화·관광·광고물 | 127 |
| 4. 소방 | 143 |
| 제 3 장 보건복지·환경 분야 | 165 |
| 1. 보건·위생 | 165 |
| 2. 사회복지 | 185 |
| 3. 아동·청소년 | 205 |
| 4. 환경 | 219 |
| 제 4 장 지역경제·교통 분야 | 243 |
| 1. 지역경제 | 243 |
| 2. 농·림·축·수산 | 257 |
| 3. 교통 | 275 |
|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분야 | 299 |
| 1. 도시계획·GB | 299 |
| 2. 주택·건축 | 321 |
| 3. 지적·부동산 | 345 |
| 4. 건설공사 | 367 |

제 2 편 감사관련 서식

| | |
|-------------------------|-----|
| 1. 확인서/감사결과 처리의견서 | 393 |
| 2. 문답서 | 396 |
| 3. 질문서 | 397 |
| 4. 현지조치 요구서 | 399 |
| 5. 변상명령서 | 400 |
| 6. 징계·문책요구서 | 401 |
| 7. 시정요구서 | 402 |
| 8. 주의요구서 | 404 |
| 9. 훈계(경고)요구서 | 406 |
| 10. 법령상 개선요구서 | 407 |
| 11. 고발서 | 408 |
| 12. 수사요청서 | 409 |
| 1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 410 |

제 3 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 | |
|-------------------------------|-----|
| 1. 감사문장에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 413 |
| 2. 순화대상 행정용어 | 433 |
| 3. 띄어쓰기 요령 | 445 |

제 4 편 감사관련 기본법규

| | |
|---------------------------|-----|
| 1~18. 감사관련 기본법규(목록) | 457 |
|---------------------------|-----|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1 장 지방재정



1. 예산·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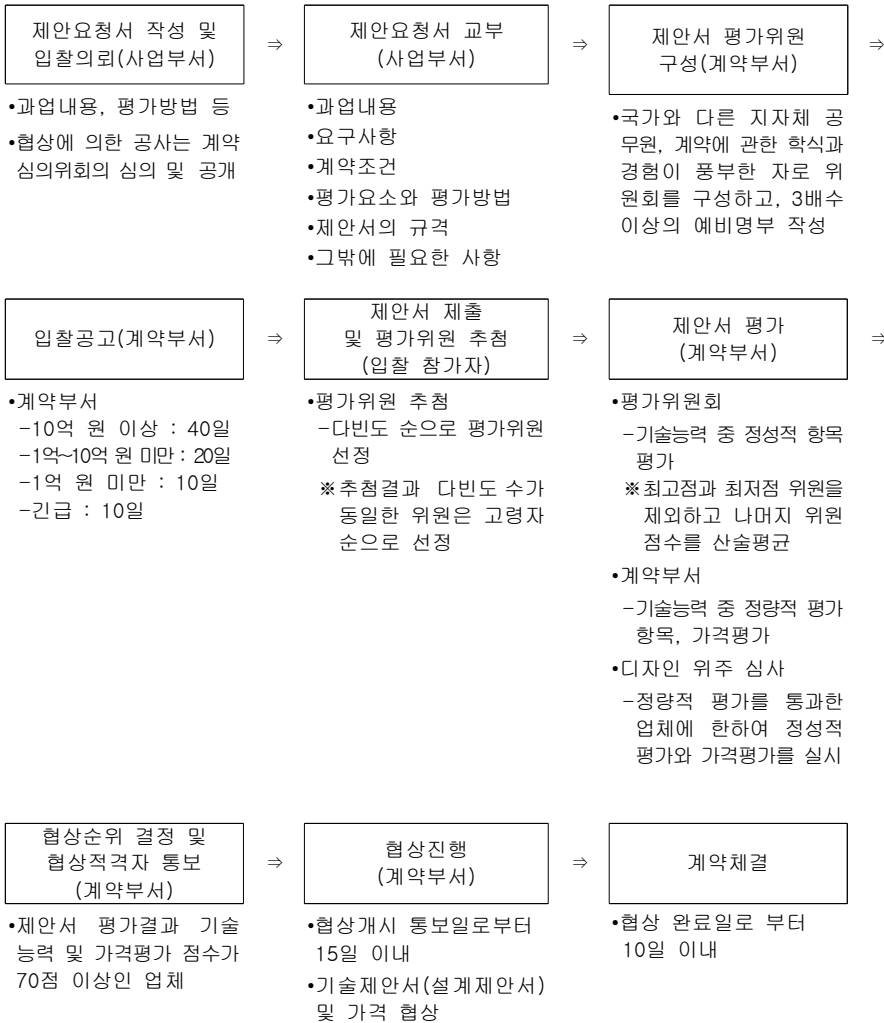
공사계약 세부처리 절차

| | | |
|------------|---|---|
| 사업부서 | ○ 공사 집행 품의 ↔ 예산집행 사전 협의제 운영 ←주무팀(선택적), 회계부서 - 계약 심사결과 반영,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도서 첨부, 기타 조건 등 | |
| | ○ 공사발주 의뢰 (→회계부서) - 공사계약 의뢰, 관급자재 구입 의뢰(선택적), e호조 계약요청 | |
| 회계부서 | ○ 추정가격, 특정사유 등 종합판단 법규내 가장 효율적 계약방법 선택 - 공개입찰, 수의계약(1인, G2B) 여부 판단 및 계약, 관급자재 조달 요청 | |
| 사업부서 | ○ 착수계 확인 경유(도장) 제출 (→회계부서) | |
| 회계부서 | ○ 착수계 접수 및 감독 공무원 지정 통보 (→사업부서) | |
| 미비준 청구서 | 사업부서 | △ 선금금 청구서 경유 제출 (→회계부서) - 선금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선금금 청구서, 보증서 및 사용계획서] |
| | 회계부서 | △ 선금금 청구서 접수 및 지급여부 검토 - 서류의 적정성 및 지급요건 충족 여부 검토 |
| | 사업부서 | △ 추산 및 관련 서류 제출 (→회계부서) - 추산 (e호조 다중분개, 자금배정, 지출결의서 도장)후 관련 서류 제출 |
| | 회계부서 | △ 선금금 지급 및 통보 |
| 사업부서 | ○ 공사 감독 시행, 관급자재 출고 및 사업 시행업체 인계 - 관급자재 출고 요청서 작성(내부결재) 직인 날인 후 업체 송부 | |
| 기성미 청구서 | 사업부서 | △ 기성금 청구서 경유 제출 (→회계부서) - 공사감독조서 작성, 기성금 지급을 위한 기성검사 서류 경유(도장) 등 |
| | 회계부서 | △ 기성 검사 공무원 지정 통보 - 기성(공사감독조서포함) 검사 공무원지정 통보 |
| | 사업부서 | △ 기성 검사 (→회계부서 임회) △ 추산 및 관련 서류 제출 (→회계부서) - 기성 검사조서(사진 첨부) 작성 - 추산 (e호조 다중분개, 자금배정, 지출결의서)후 관련 서류 정리 제출 |
| | 회계부서 | △ 기성금 지급 - 기성금 : 기성검사 조서(공사 진척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
| 사업부서 | ○ 준공계 경유 제출 (→회계부서) - 공사감독조서(팀장,과장 결재) 작성, 준공계 확인 검토 경유(도장) 등 | |
| 회계부서 | ○ 준공검사 공무원 지정 통보 - 준공계(공사감독조서포함) 접수 후 검사 공무원지정 통보 | |
| 사업부서 | ○ 준공검사 (→회계부서 임회) - 준공검사 후 검사 조서 등 관련서류 작성 | |
| 회계부서 | ○ 준공 대금 지급 | |

용역계약 세부처리 절차

| | |
|------|--|
| 사업부서 | ○ 발주 품의 기초자료 작성 - 기본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비 산출 등 |
| | ○ 용역 집행 품의 ↔ 예산집행 사전 협의제 운영 ←주무팀(선택적), 회계부서 - 용역계약 의뢰 협조문 작성, e호조 계약요청 |
| 사업부서 | ○ 용역 계약 의뢰 (→회계부서) - 첨부 : 품의서, 과업지시서, 기본계획서, 견적서등 산출내역 적정성 입증자료 |
| 회계부서 | ○ 추정가격, 특정사유 등 종합판단 법규내 가장 효율적 예산집행 방법 선택 - 공개입찰, 1인 수의계약, G2B수의계약 여부 등 판단 후 계약추진 |
| 사업부서 | ○ 착수계 확인 경유(도장) 제출 (→회계부서) |
| 회계부서 | ○ 착수계 접수 및 감독 공무원 지정 통보 (→사업부서) |
| 사업부서 | ○ 용역 감독, 성과품 검수 제출 등 (→회계부서) - 용역감독 및 감독조서(팀장,과장 결재) 작성, 준공계 확인 경유(도장) 제출 |
| 회계부서 | ○ 준공계 및 용역 감독 조서등 확인 후 준공처리 (→사업부서) - 준공계 및 용역감독조서 접수 후 추산 서류 송부 |
| | 사업부서 |
| 회계부서 | ○ 용역 대금 지급 - 관련 서류 검토 후 용역대금 지급 |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계 약 | <p>【분할계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였는지 여부 ○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를 분리해야 하는데도 통합발주하였는지 여부 <p>【수의계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것을 공구별, 사업장별로 분할 발주의뢰 및 수의계약 여부 ○ 하자 불분명 및 책임곤란, 혼잡성 등을 이유로 전회 시공자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여부 ○ 추가시설 물량을 설계변경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였는지 여부 ○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전차공사 업체와 수의계약하였는지 여부 ○ 단일생산품이 아님에도 특허 등을 이유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였는지 여부 <p>【입찰공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정인(업체)을 위한 특혜성사업 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여부 ○ 공사물량을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계 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를 당해공사(물품)의 추정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공고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 ○ 일반경쟁계약방법으로 계약하는 것을 지명경쟁 계약으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 특정업체에 낙찰시키기 위하여 특수한 설계나 시방기준을 명시하여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민간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실적만 인정하여 입찰공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부당하게 특허제품,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 ○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같은 실적에 해당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p>【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입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의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이 있는지 여부 -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계 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 등을 무효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입찰참가자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면허·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사용인감 등이 상이함에도 낙찰을 결정하여 계약하였는지 여부 ○ 계약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면제하였는지 여부 <p>【계약변경 및 준공검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하였는지 여부 ○ 현상공모 시 당선자에게 설계권만을 부여하지 않고, 시공권 또는 감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수급인 측에 불리한 공정을 유리한 공정으로 설계 변경하였는지 여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 감독관이 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는지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 |

예산·회계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예산절감을 이유로 특정인과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2. 원가계산서 유출 등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3.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경영상태 평가
4. 변조된 실적 인정에 따른 계약상대자 전도
5. 전문공사를 물품제조로 편법 발주
6.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7. 거래상 지위남용 및 계약해지 부적정
8. 물품 제조 계약의 준공검사 부적정
9. 공사 선금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10. 불명확하게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평가
11.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타 기관】**
1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부적정 **【타 기관】**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타 기관】**
14. 특허를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타 기관】**
15. 공사 설계변경 부당처리 **【타 기관】**
16.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에 따른 변상판정 **【타 기관】**
17. 준공검사 확인 부적정 **【타 기관】**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계 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시공 되었음에도 준공 처리하였는지 여부 ○ 계약물품 등이 납품되지 아니한 것을 납품된 것으로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지체상금 면탈기회 부여를 위하여 부당하게 공기 연장을 하거나 준공계를 허위 접수처리 하였는지 여부 ○ 설계도면 및 내역서상의 물량보다 적거나 다르게 시공 하였음에도 보완조치 등 없이 준공처리하였는지 여부 ○ 하자보수 보증금 및 이행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구하였는지 여부 ○ 하자 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자체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p>【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경쟁입찰로 가능한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하였는지 여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해당 소속직원(공무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제안서 평가의 적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별 정성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여 산술평균 하지 않고, 정성 평가 세부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한 후 산술평균하였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예산절감을 이유로 특정인과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에서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그 특정인이 아니면 해당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 ○○시에서는 ‘○○○ 타당성조사 및 ○○특구(변경) 지정용역(가)’과 ‘○○호수 및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나)’을 발주하면서,
 - ① (가)용역은 원활한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 용역기간 단축, 불필요한 중복수행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경쟁입찰 방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기존 ○○시와 유사용역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A업체가 기존자료 활용에 따른 용역비 절감 및 용역기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방침을 받아 462백만 원에 수의계약.
 - ② (나)용역 발주 시에는 불과 2개월여 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위 (가)의 용역 사례를 답습하여 같은 방식으로 시장방침을 받아 위 A업체와 465백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수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게 특혜 제공.

2. 원가계산서 유출 등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객관적 지표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배점을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 예정가격 및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에서는 2개 용역을 발주하면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을 무효로 미처리, 가격입찰서는 접수도 하지 않고 입찰자의 참석 없이 비공개로 개찰, 발주용역의 규모보다 26배 ~ 115배가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만 만점부여하고 전차용역 배점을 부여하는 등 특정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사전에 설계내역서를 입찰참가자와 공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가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같은 서식으로 모든 단가의 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제시된 과업량 수치까지도 똑같이 작성되는 등 이미 계약상대자를 정해 놓은 것과 다름없이 입찰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입찰자간 담합의 원인 제공.

3. 협상계약 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경영상태 평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고,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 시 “경영상태 평가는 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산정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하였으나,
- 입찰참가업체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만 산정하여 종합점수 88.26점으로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352백만 원에 계약 체결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면 B업체가 종합점수 88.52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부적정한 평가로 B업체에게 피해 제공.

4. 변조된 실적 인정에 따른 계약상대자 전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재단에서는 2009. 12. 29. (주)○○○와 ‘2010년 ○○○의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용역’ 계약(계약금액 454,781천 원, 계약기간 2010. 1. 1. ~ 2010. 12. 31.) 체결 시, 위 업체는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인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의 연면적 14,744㎡이상 실적이 없는데도, ○○○○로부터 실제 사업기간이 2009. 8. 1.~2010. 12. 31.까지인 용역이행실적을 2008. 8. 1.~2010. 12. 31.으로 변조된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였고,

- 위 재단에서는 허위 실적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였으나, 위 계약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었고, 판정기준 점수인 95점에 미달되어 부적격자인 업체인데도 종합평점 97.6으로 평가하여 적합으로 결정하고 계약 체결.

5. 전문공사를 물품제조로 편법 발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1]에서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인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7호 다목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역 광장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로 계약심사를 받았으나 금속구조물공사로 발주할 경우에는 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공장과 수의계약이 어렵게 되자, ‘○○역광장 버스승강장 제작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한 후,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산업(주)와 계약 금액 90,00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함

6.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인 견적서

제출가능 한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2011년~2012년도에 ○○시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를 650,275천원에 발주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2천만 원미만으로 32건을 분할하여 (주)○○○○ 등 4개 업체와 68백만 원~183백만 원씩 수의계약 함으로써 다수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예정가격 650,275천원 대비 95.4%인 620,545천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나 입찰로 진행한 타지자체의 낙찰율 약 86% 대비 9% 높게 계약체결 한 것으로써 약 58백만 원 (650,275천원×9%)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7. 거래상 지위남용 및 계약해지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가에 의하면 계약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에서는 ‘○○번 자전거도로 LED조명 구입’을 하면서, 2010. 2. 19. A업체와 127백만 원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LED램프는 현재 KS인증대상이 아님에도 시방서에 KS규격에 맞게 제작하도록 요구한 후 KS인증이 없다며 물품검수를 거부하였고, 계약 당시 시방서에 없는 한국조명연구원의 광속유지율과 개폐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을 계약기간 중에 요구 한 후, 시험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60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채 2010. 5. 31. 계약해지 하였으나, 위 계약업체는 계약해지 이후인 2010. 8. 6. 정상적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시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 발생.

8. 물품 제조 계약의 준공검사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감독(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수중펌프 구입을 추진하면서 2010. 3. 11.부터 2010. 4. 13.까지 사회복지법인 ○○재단과 7개 사업 1,044백만 원의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나, 물품검사 소홀로 검사 시 제출 된 준공(납품)도서만으로도 사실상 제3자업체의 수중펌프가 납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 요건인 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수중펌프 제조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위 계약상대자에게 총 1,044백만 원의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9. 공사 선금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고등학교 대체도로(중2-10)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2009. 3. 4. 310,000천 원, 2009. 6. 23. 160,000천 원) 총 470,000천 원을 선금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차에 걸쳐 공사 중지(1차 : 2009. 7. 21., 2차 : 2010. 12. 22.)를 통보하면서 시공사에 지급한 선금 정산을 시행하지 않았고, 당초 시공사가 제출한 선금보증서 역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새로운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결과 2차 공사 중지 이후 재착공 통보 전인 2011. 3. 7.에 시공사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선금잔액 222,570천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위 금액만큼의 예산상 손실이 발생

10. 불명확하게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평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공고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시에서는 ‘○○시 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A업체가 제출한 참여 용역인력 32명에 대한 현황(총괄)표 상에 단지 분야별 책임자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분야별 책임자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후 2순위 업체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위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상의 인력총괄표에서도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과 경력 확인이 가능하였고, 아니면 위 A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0점”으로 처리한 결과 정상적으로 평가한다면 A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잘못 평가하여 B업체와 304백만 원에 계약체결.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1.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도에서는 도의원 ○○○가 재직하는 기간(2006. 1. 1.부터 2011. 8. 31.까지) 아버지가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와 2007. 10. 24.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가로등주) 구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주식회사와 총 4건, 670백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

1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 부적정(○○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직전 물가변동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¹⁾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1)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율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지수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하는 방법임

- ○○도에서는 2008년 상반기 물가상승에 따라 ‘○○도로 확·포장 전기공사’ 계약에 대하여 각각 2008. 2. 29., 같은 해 5. 31., 같은 해 9. 1.에 총 3건, 계 209,401천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한 반면, 2008년 하반기 물가하락에 의한 61,187천 원은 감액 조정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광역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확인서를 확인한 후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19,749백만 원의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위 공사의 최종 준공금을 정산하면서 시공사에서 실제 지급한 위 3개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을 확인하지 않고 산출내역서대로 준공금을 지급한 결과 308백만 원을 과다 지급함.

14. 특허를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광역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부에서는 ‘○○ 1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의 관급조달 물품인 응집기를 구매하면서 위 사업 실시설계 업체에서 위 응집기의 대용·대체품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고 다른 응집기

제조업체에서도 위 응집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특허제품이면서 대용·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 응집기를 조달청에 구매의뢰 하여 2011. 12. 7. 999,990천 원의 수의계약 체결.

15. 공사 설계변경 부당처리(○○도)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공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 ○○도에서는 계약금액 2,333,000천 원의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발주하지 않고, 위 공사 현장과 1.2km 떨어져 있는 ‘○○~○○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약업체 : ○○종합건설 외 1개 회사)에 위 사업을 포함시키는 추가공사로 설계변경 하여 위 업체에 사실상 수의계약 하는 특혜 제공.

16.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에 따른 변상판정(○○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그 종료일은 계약 이행기일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계약이행 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건설과 541,256천 원의 ‘송배수관 정비 공사’ 계약(공사기간 : 2009. 3. 2.~2009. 8. 24.)을 체결한 후 계약

금액의 59.8% 상당인 324,000천 원을 선금급으로 지급한 후 선금급보증서(보증기간 : 2009. 3. 10.~2009. 10. 23.)를 징구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하절기 급수대책, 선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정비공사의 준공기한을 2009. 12. 31.까지 연기하는 '공사변경계약 통보서'를 받고도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급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기하는 조치를 하지 이행하지 않았음

- 위 ○○○건설이 공사이행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2010. 4. 8. 동 계약을 해지한 후 위 사업소에서는 2010. 4. 14.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금급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급보증서상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사유 "보증책임 부인통지"를 통보받아 선금급 중 275,752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 초래.(회계관계 책임자 변상판정)

검사결과를 확인하면서, 책임감리업체(주식회사 ○○○○ 등 2개 회사)로부터 당초 70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성능시험운전 및 신뢰성시험운전이 30일만 시행한 결과물이 제출되었는데도, ○○시에서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고, 시공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경우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로 준공검사 승인한 결과, 준공 후 폐수처리시설의 소화조 압력이 낮아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폐수처리시설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운전기간을 줄여 준공처리함에 따라 지연배상금(추정금액 779백만 원)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업체에게 특혜 제공.

17. 준공검사 확인 부적정(○○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위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시에서는 (주)○○○ 등 2개 회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건립공사' 계약(공사금액: 20,708백만 원)을 체결하고, 준공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1 장 지방재정



2. 지방세 · 세외수입

세 외 수 입 관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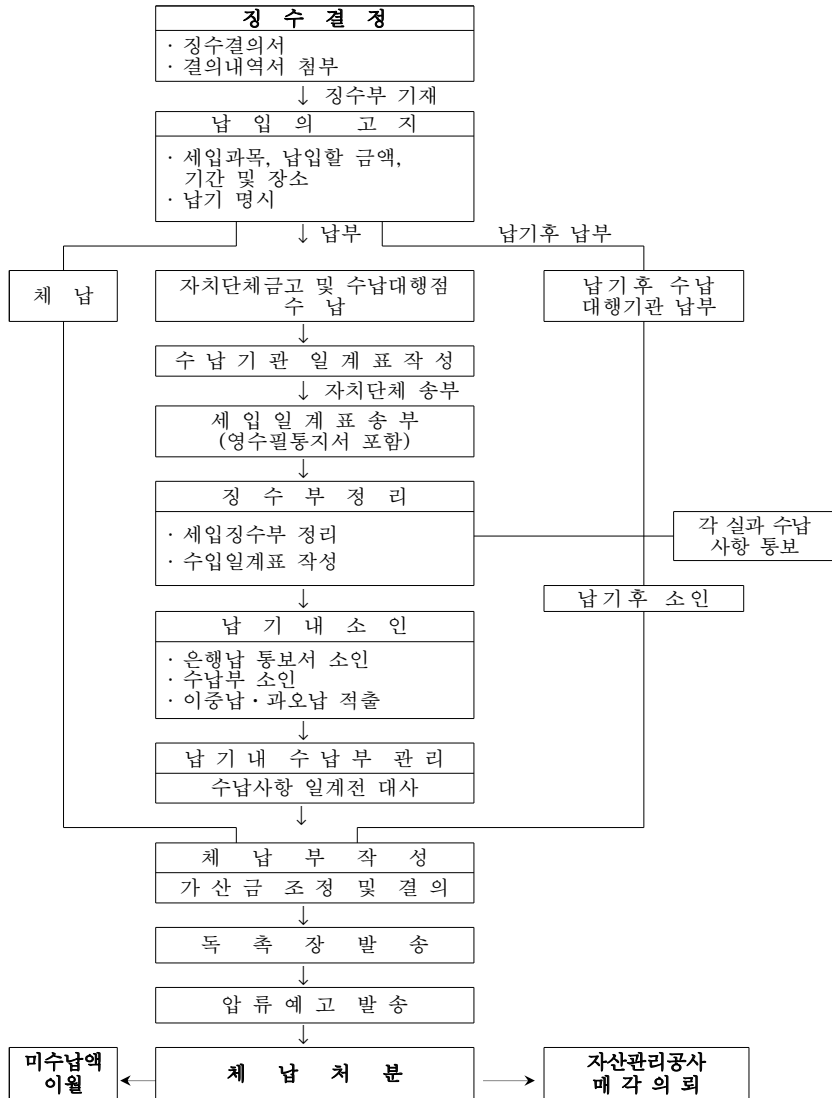
관 계 법 령

-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관리 및 처분)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 자치단체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시·군)
-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4조(세입세출외현금 등의 금고보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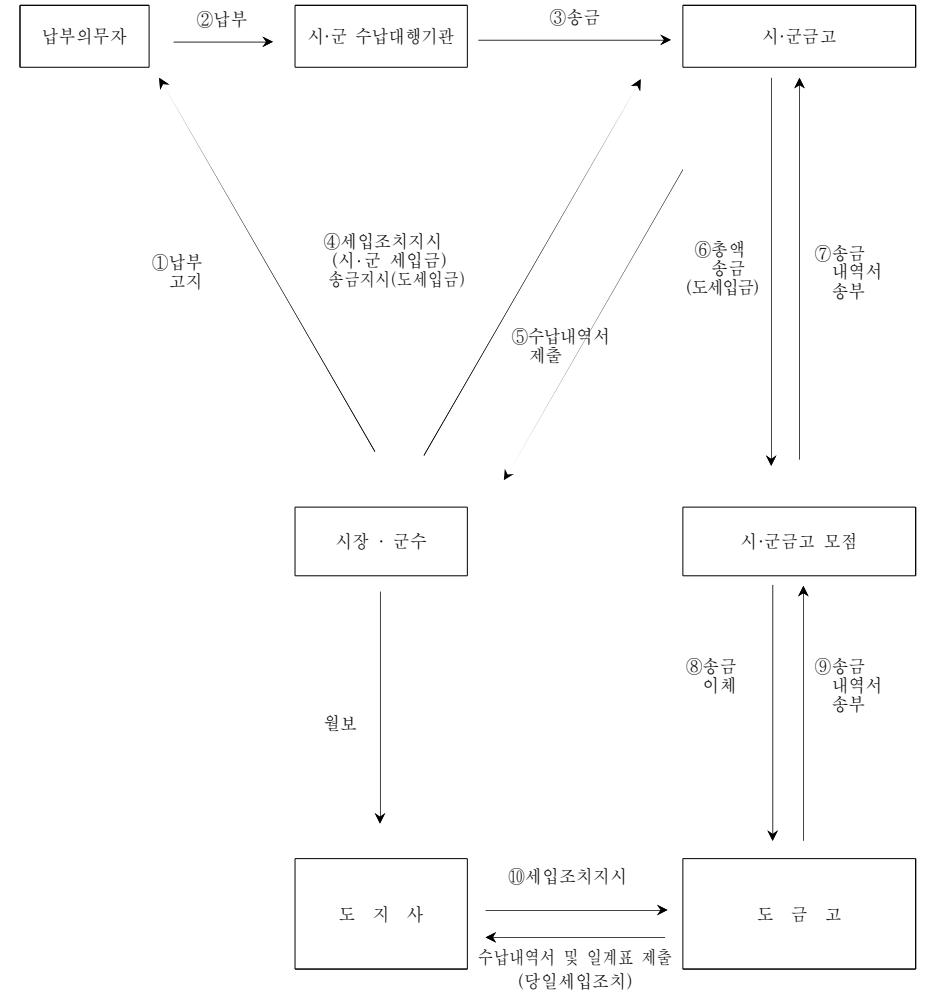
-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도세징수의 위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도세징수의 위임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 부담금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부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매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 건축법 제80조(이행 강제금)

업무처리 절차

세외수입 업무처리 흐름도



세입금 수납·송금 흐름도



세부 착안 사항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세외수입 총 칙 | 1.수입체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에 관한 관계법규는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 일정액(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금액기준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 세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어 있는지 여부 ○ 수입절차의 번잡으로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관계 장표류는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징수관, 분임징수관, 수입금출납원) | 재무회계규칙 |
| | 2.징수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를 누락하거나 부족 징수결정된 것은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의 적용에 있어 그 비율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일정금액의 적용에 있어 수량 및 건수 파악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부 ○ 수입의 근거는 명확한지 여부 | 규칙 |
| | 3.납입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수령거부 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하고 있는지 여부 ○ 징수결과와 납입고지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 규칙 |
| | 4.징수부의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결정된 것은 징수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 | 규칙 |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5. 세입금 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징수결정 일자(세입징수관이 세입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여부 ○ 계수의 정리와 정정에 잘못이 없는지 여부 ○ 세입일계표와 영수필 수납액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세입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 출납원 또는 수납대행정이 수납한 세입금을 그 다음날(수납대행정은 5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납입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였는지 ○ 수납소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가 소인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자 수납소인 여부 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 6. 체납액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연도폐쇄)후 과목별 체납부 작성여부와 누락자는 없는지 여부 ○ 가산금의 징수결과와 부과지는 하고 있는지 여부 ○ 미납자의 독촉장 발부 여부와 체납부와는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지방세기본법 제59조~61조, 제91조 |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7. 보 고 | | ○ 체납자 재산조회와 압류조치는 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 압류재산 처분과 관리는 적정히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 |
| 8. 징수유예, 과오납·결손처분 등 | | ○ 미수납액의 이월수납부 작성과 징수결정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부합하지 아니하는 월계 대대표가 첨부되는 등 불부합 사항은 없는지 여부 | |
| | | ○ 징수유예조치는 정당히 처리되었는지 여부 | |
| | | ○ 과오납금 환부(계좌입금) 절차는 적정한지 여부 | |
| | | ○ 환부와 관련한 금품수수, 유용행위는 없었는지 여부 | |
| | | ○ 체납액에 대하여 소정 기일내에 독촉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한 :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 | ○ 시효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에 잘못은 없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9. 세입금 관리 | ○ 시·군 금고 계약 적정여부와 금고 감사는 실시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10. 세입·세출외 현금 | ○ 세입결산서 작성과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 현금관리와 수납절차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 현금반환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유용행위는 없는지 여부 | |

2. 지방세·세외수입

제 1 장 지방재정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세외수입 (경상적) | 1.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개년간 임대내역을 서로 대사와 미임대 감소의 사실상 사용여부를 현지 확인 ○ 매년 실태조사는 실시하였는지와 사실상 지목대로 사용료를 산출부과 하였는지 ※ 토지공시지가 조사표와 대사 | 국유재산법 제66조~제7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 | 2. 사용료 (도로, 하천,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입장료, 기타 공공시설의 사용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 기간, 조건, 사용료율, 재산가액평가, 사용료 납부 시기는 적정한지 ○ 건축허가 등 인·허가 내역과 사용료 부과 내역을 대사와 사실상 사용여부를 현지 확인 ○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지와 사실상 사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면적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3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도로법 제41조 제43조 도로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
| | 3. 수수료 (수입증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인·허가, 제증명, FAX민원발급 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지, 봉투제작에 따른 인영관리 및 원판회수는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 증지, 봉투판매 수수료는 위탁판매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공무원판매 여부 확인) ○ 수불상황의 기록관리가 적정한지와 수불부와 사실상 잔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 재활용품 판매계약 및 단가는 적정한지 여부 | 공인조례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세외수입 (임시적) | 4. 사업수입 (사업장수입, 요금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금의 회계처리와 세입과목(특히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적정한지 여부 ○ 농산물 등의 파종·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은 일치하는지 여부 ○ 노상주차장 요금수입의 세입절차는 적정한지 여부 ○ 주차증 발부수량과 세입금은 일치하는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5. 징수교부금 (도세, 사용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이 제 날짜에 적정액이 교부되고 있는지 여부 ○ 징수교부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67조 | |
| | 6. 이자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급계획과 유휴자금 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 계획서를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지와 자금배정은 적정한지 여부 | 재무회계규칙 | |
| | 7. 융자금회수 수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촌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촌소득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교부, 회수절차는 적정한지 여부 ○ 원리금 미 회수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는 적정한지 여부 | 사업별 특별회계조례 | |
| | | | | |
| | | | | |
| | | | | |

2. 지방세·세외수입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세외수입 (임시적) | 8. 부담금 (하수도, 교통유발 환경개선, 개발) | ○ 인·허가 내역과 부담금 부과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부담금 산정과 부과징수는 적정한지 여부 ○ 부담금의 면제는 적정한지 여부 | 개별법 지방자치법 제140조 |
| | 9. 잡수입 | (불용품매각대) ○ 불용품을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는지 여부 (변상금) ○ 변상금 산정과 세입금 수납절차는 적정한지 여부 (위약금) ○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을 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과태료) ○ 위반내역과 과태료 부과내역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절차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체납처분 수입) ○ 공과금등 체납자 압류재산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제36조 법 제76조 동법 81조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4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제 1 장 지방재정

| 분 야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 (기부금 수입) ○ 의뢰, 권유, 할당식 반강제적인 금품 모집은 없는지 여부 ○ 모금액을 허가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기금수입) ○ 기금운용(자금관리)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 ○ 이자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금품의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제7조 |
| | 10. 과년도수입 | ○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세입금을 다음연도로 이월 징수 결정하고 있는지 여부 ○ 과년도 수입금에 발생된 가산금(연체료)을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50조 |
| | 11. 특별회계 (사업수입, 상수도, 하수도, 주택,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타) |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 최근 5개년 간 업종별 인·허가 내역과 부과내역을 대사하고 부과 적정여부 확인 ○ 관내 세차장의 지하수 개발신고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확인 | 사업별 특별회계 조례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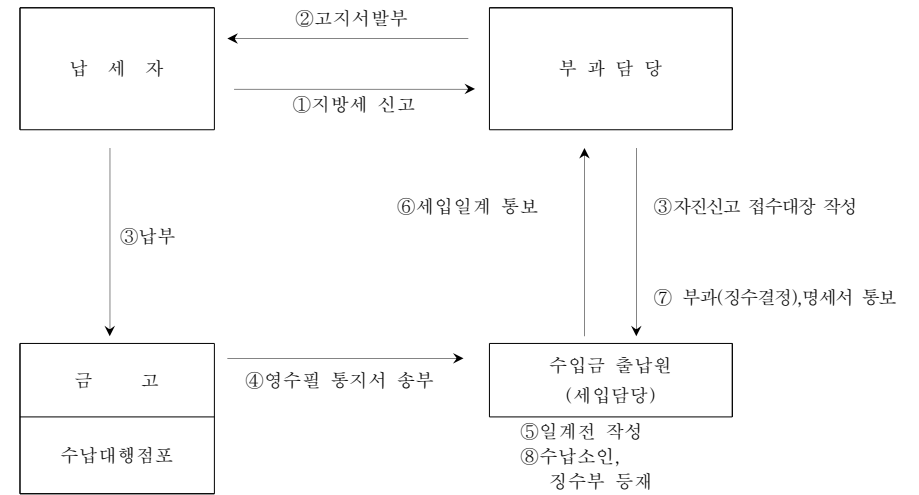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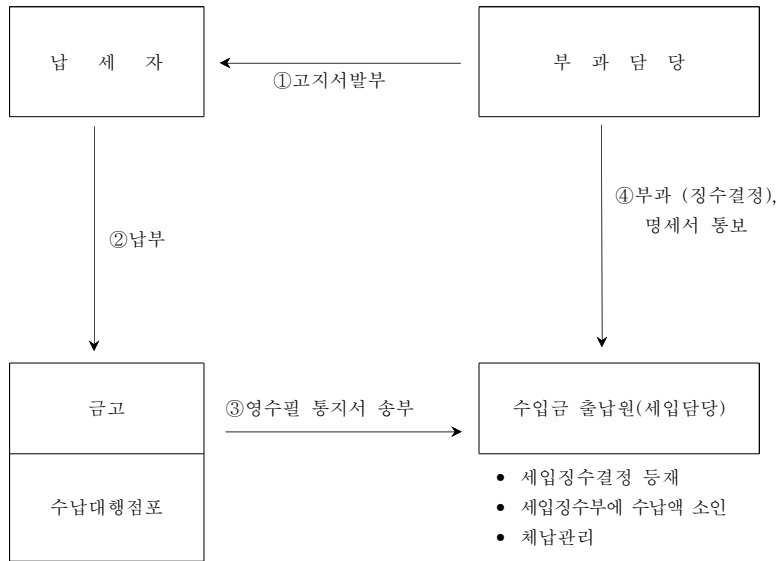
- 지방세기본법 제1조 “정의”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 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제30조 “신고 및 납부”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5조 “신고납부 등”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레저세)
- 지방세법 제78조 “세율” 제81조 “세율”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주민세)
- 지방세법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재산세)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업무처리 절차

<신고납부>



<보통징수>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1. 체납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지방세는 납기 기한이 경과한 후 15일(은행납은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지 여부 ○ 재산의 압류 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압류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일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압류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 요구에 불응함에도 압류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 압류해제 사유는 정당한지 여부 ○ 압류재산의 처분은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 지방세기본법 제59조~제61조 국세징수법 제53조 |
| 2. 결손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행방불명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체납자 재산이 있음에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체납자의 거소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음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납부고지 및 독촉 등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정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결손처분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황 | 관 계 법 규 |
|---------|---|-------------------|
| 3. 징수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징수유예한 것은 없는지(법 제42조) ○ 징수유예 사유는 정당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징수유예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사업에 많은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손실을 받은 것 같이 허위로 징수유예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질병 등이 있는 것 같이 허위로 징수유예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징수유예 기간 중에 유예한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 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도 징수유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 담보의 변경 또는 기타 담보보전의 명령에 불응함에도 징수유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여부 - 재산상황과 기타 사업의 변화로 징수유예할 필요가 없는 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체납처분 등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84조 |
| 4. 과오납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금 환부 시 다른 지방세 체납액 총당 여부 ○ 과오납금 환부시 기산일 적용의 적정 여부 ○ 환부시 지급내용 권리자에게 통지 여부 ○ 세입과오납금 환부지급(총당)통지서 서식 사용 여부(시행규칙 제19조) ○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영 제39조) ○ 과오납금 계좌이체 지급 여부 ○ 과오납금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횡·유용 또는 착복 여부(계좌이체하지 않은 부분 추적 조사) | 지방세법기본법 제76조~제78조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황 | 관 계 법 규 |
|---------|---|---|
| 5. 일일결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금고로부터 공과금 일계표 일일통보 적정 여부 ○ 징수부서 수납부와 수입일계표 정리 여부 ○ 수납부와 수입일계표 대사 후 결재 여부 ○ 수기고지서 수납분 전산수납 처리는 적정한지 |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5조, 제76조 지방재정법 제63조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46조 |
| 6. 금고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필통지서 기일내 통지는 적정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
| 7. 취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관련 자료통보 및 확보는 적정한지 ○ 사실상 취득가액 입증자료 확보는 했는지 ○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여부 ○ 공장 신·증설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적정성 여부 ○ 취득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 지방세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 제13조 지방세법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
| 8. 등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 ○ 등록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지방세법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

지방세·세외수입분야 주요 지적사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임시용(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2.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과세
3.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4.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소홀
5.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등 중과세 소홀
6. 학술연구단체 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미과세
7. 의료법인 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미과세
8. 감면 부동산 과세전환 소홀
9. 장애인 감면차량 사후관리 소홀
10. 도세 부과·징수 사무위임 부적정
11.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관리 소홀
12. 5천만 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소홀
13.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채권보전 부적정
14.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미부과
15. 소기업 공장 신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착오부과(타 기관)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업무 소홀(타 기관)

1. 임시용(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2항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공사용 임시사무실 또는 아파트 홍보를 위한 모델 하우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신고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가 공사용 사무실을 축조신고한 후 이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취득세 등 19,844천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미부과.

2.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과세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4항 등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가 2011. 9. 14. ○○동 541-1번지 지상(330㎡)에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동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되었으나, 이에 대한 지목변경 토지분 취득세 등 62,993천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미부과.

3.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미과세

- 「지방세법」 제6조(정의) 등에 따르면,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에너지 공급시설(건축물)로 보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2011. 8. 23. ○○동 781-1번지 ○○○(주)가 같은 곳 지상에 설치(취득)한 자동차 충전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내에 설치된 주유기와 자동차충전기 등 에너지 공급 시설 4건에 대한 취득세 49,893천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미부과.

4.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종과세 소홀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종과) 제5항 등에 따르면,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그 부속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시에서는 ○○○가 2011. 11. 8. ○○리 220-1번지에 주택(건물 293.14㎡, 시가표준액 698,000천 원)을 신축하고서, 지하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85㎡증축하여 사실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미납한 취득세 등 106,140천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5.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등 종과세 소홀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항 등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28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의 3배로 취득세를 종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 ○○구에서는 2011. 9. 27. (주)○○○(본점 : 안양시 ○○구 소재)가 ○○시 ○○구 ○○동 216번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12. 2. 14. 같은 곳에 지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납부하여 종과세율을 적용하여 미납한 취득세 등 46,457천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6. 학술연구단체 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미과세

-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동법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등에 따르면 학술연구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학술연구단체인 (사)○○○이 2011. 5. 2. ○○구 ○○동 250-30번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취득세 등 1051,328천 원 미부과.

7. 의료법인 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미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동 366-1번지 의료법인 ○○○이 2011. 4. 11. ○○동 366-1번지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공사용 웬스와 터파기만 하였을 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취득세 등 254,285천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미부과.

8. 감면 부동산 과세전환 소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주)○○이 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음에도 총 4건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득세 등 48,137천 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누락.

9. 장애인 감면차량 사후관리 소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등급 1급 에서 3급인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최초로 취득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 28,162천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누락.

10. 도세 부과·징수 사무위임 부적정

-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2010. 6. 1. ○○시 사무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차량 등록사업소장에게 도세 부과, 징수업무 중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사무를 재 위임함에 있어 위탁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취득세 등 4,597건 1,650,582천 원 부과.

11.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관리 소홀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여야만 등록을 해제시켜야 하는데도,
- ○○시 ○○구 ○○과에서는 같은 시 ○○동 132번지에 거주하는 ○○○ 등 0명의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2010. 1. 20.부터 2011. 2. 2.까지 ○○○○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후 체납자들이 일부 납부하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신용정보제공을 해제.

12.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소홀

- 지방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자 중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 시킬 수 있는데도,
- ○○시 ○○과에서는 ○○시 ○○읍 ○○리 000번지 ○○○ 등 2인과 ○○법인 등 2개 법인이 2012. 2. 28. 현재 주민세 등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나 무재산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를 조사한 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미요청.

13.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채권보전 부적정

-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자료를 지방세 과세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010. 8월부터 2012. 8월 까지 7회에 걸쳐 ○○도로 부터 통보받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조회 내역을 처리함에 있어 ○○시 ○○동 00번지 ○○○의 경우 00,000천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은행 계좌 등에 00,000천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보 받고도 미징수.

14.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미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등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등기 가능일)부터 3년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시 ○○구 ○○동 105-7번지 (주)○○○이 2007. 3. 9. ○○동 8번지 토지 5,369㎡를 ○○○와 금 2,192,400천 원에 취득한 후 잔금 지급일(반대급부 이행일)부터 4년 3개월여를 경과한 2011. 10. 2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과징금 377,723천 원 미부과.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대하여 취·등록세를 비과세 감면 처리하여야 하나, 관계규정의 잘못 적용으로 취·등록세 17,111천 원을 부과·징수한 바, 감사일 현재까지 잘못 부과·징수된 취·등록세에 대하여 미환급.

15. 소기업 공장 신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착오부과(○○○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민원인의 공장신설(411㎡)건에 대하여 2008. 1. 23. 공장신축부지의 원 소유자인 ○○○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및 자료제출의 안내를 문서로 통보한 후 2008. 4. 21. 개발부담금 17,902천 원을 부과함에 따라 2008. 10. 21. 공장부지를 임대한 민원인이 이를 대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초래.

1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업무 소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법인 또는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군에서는 ○○○○○○조합법인 외 13명이 취득한 부동산에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1 장 지방재정



3. 재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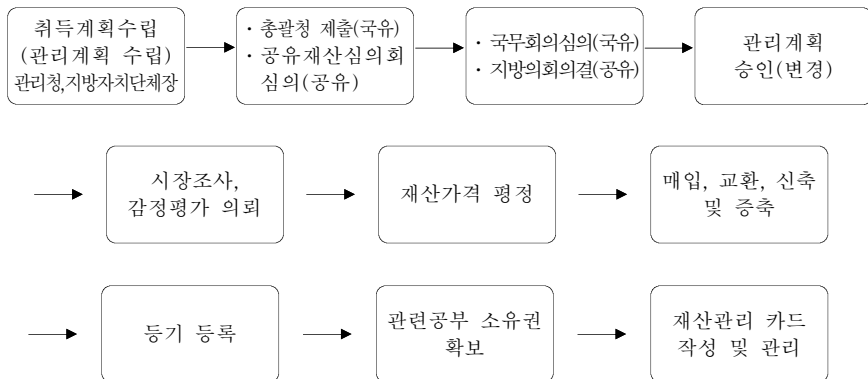
재 산 의 취 득

관 계 법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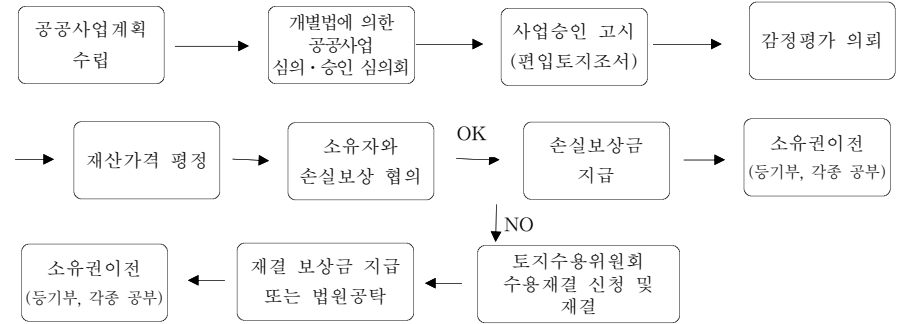
- **취득 1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취득)**
 -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취득 2 (개별법에 의한 손실보상 취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업 무 처 리 절 차

취득 1)



취득 2)



취 약 요 인

- 취득재산의 사전조사 소홀(취득목적의 적합, 사권설정 등)
- 취득절차이행 없이 임의 재산취득(관리계획 미반영)
- 취득가격의 결정(평정) 부적정(감정평가, 거래실례가)
- 권리보전조치 미이행(등기·등록 등)

감 사 착 안 사 항

- 재산취득의 타당성 및 공법·사법상 권리제한 재산취득 여부
- 법령규정에 의한 취득절차 적정성 여부
- 취득재산 가격평정 적정여부 및 산정착오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 매매대금 지급 후 권리보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산일실 여부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취득계획 및 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에 관한 계획이 법규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 취득을 위한 예산확보 등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는지 ○ 사정변경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재산의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계획변경 사유는 타당한지 ○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재산취득계획을 수립 한 것은 없는지 ○ 필요한 계획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p> |
| 취득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계획에 위배하여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재산을 장기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취득목적에 부적합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지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조사는 철저히 하였는지 ○ 취득재산의 관리비가 과중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도시계획예정지, 풍치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 벨트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재산취득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불요불급한 재산을 취득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p>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취득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입 또는 기부 채납한 것은 없는지 ○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초래된 것은 없는지 ○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인데도 매입한 것은 없는지 ○ 무주의 부동산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은닉재산으로 신고된 재산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11조(사면 설정의 제한), 제13조 (기부채납), 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 제7조(기부채납), 제8조(사면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제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p> |
| 취득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에 지목, 지번 등 착오는 없는지 ○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보다 고가로 취득한 사유는 타당한지 ○ 인근재산의 거래실례가격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은 없는지 ○ 토지를 취득한 때 지장물이 있을 경우 철거비용 등을 감안하여 취득하였는지 ○ 감정 후 시가 변동사실이 있었는데도 감정가격대로 취득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취득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고가로 매입하게 된 것은 없는지 ○ 가격평가를 잘못하여 고가로 매입 한 것은 없는지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손실보상은 적정하게 하였는지 ○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조성된 공공용 재산을 무상 귀속 조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귀속)</p> |

| 세부사무명 | 감사확인사항 | 관계법규 |
|-----------|---|---|
| 취득방법 및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시기는 타당한지 ○ 계약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어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국·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재산을 방치하였는지 ○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 취득재산의 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은 비치하고 있는지 ○ 과거 공공사업시행 시 기 보상된 재산을 이중으로 보상하고 취득한 재산은 없는지 ○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없는지 ○ 사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선금 지급 후 사권을 해제하는 조건부로 취득하였는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조성된 공공용 재산을 무상귀속 조치 했는지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청구한 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p>※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p> | <p>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등기·등록 등)</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9조(공부 등록 등)</p> <p>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8조(사권 설정재산의 취득제한)</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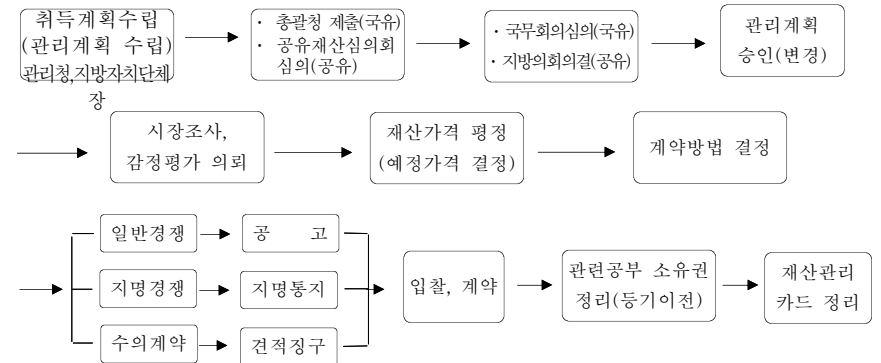
재 산 의 처 분

관 계 법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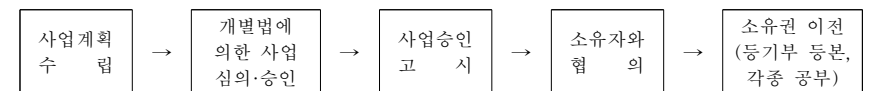
- 처분 1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처분)
 -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처분 2 (개별법에 의한 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업 무 처 리 절 차

처분 1)



처분 2)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처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매각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 매각에 관한 계획 변동 사유는 타당한지 ○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지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매각 계획한 재산은 없는지 ○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3조(국유 재산 관리·처분의 기본 원칙), 제9조(국유재산 중립계획), 제27조(처분의 제한)</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10조(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제9조(처분 등의 제한)</p> |
| 처분방법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한 사유는 타당한지 ○ 기관 상호간에 관리 전환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없는지 ○ 일반공매를 할 때 공고내용에 지번, 지목은 정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 당해 국·공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당해 관리청에 허가 없이 본인명으로 매수하거나 교환한 것은 없는지 ○ 매매계약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지정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제공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였는지 ○ 매수신청자(전 소유자)와 매도자(공공사업 시행부서)는 적정한지 여부 ○ 비관리청 주체로 시행되는 개발사업 지구내 포함된 재산 중 사실 상 일반화된 재산이 무상귀속된 재산은 없는지 여부 | <p>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제43조(계약의 방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2조(매각 계약의 해제), 제54조(교환)</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재산 관리관 등의 행위 제한),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6조(일반 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제 등), 제39조(교환)</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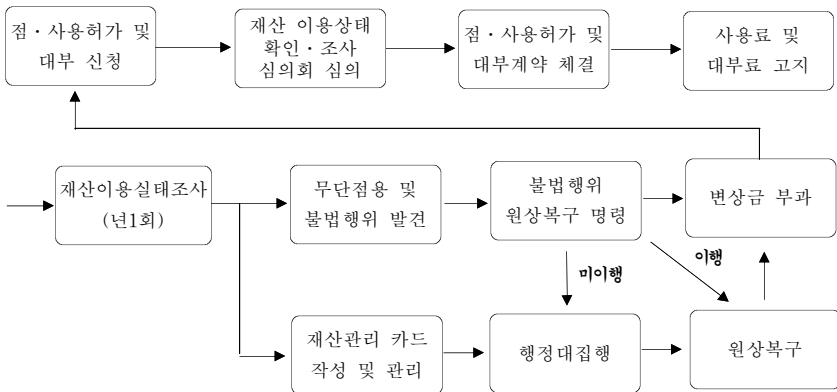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매각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처분재산의 매각가격은 타당한지 ○ 감정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면서 지목, 지번, 지적 등의 기재내용의 착오는 없는지 ○ 입찰이 지연되어 가격변동이 있었는데도 평가액을 결정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일반 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40조(매각대금의 처감)</p> |
| 매각대금의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을 귀속 조치하고 있는지 ○ 매각대금 완납 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 재산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수납하지 아니한 사유는 타당한 지 ○ 분납하는 경우 이자 및 분할납부 기간은 적정한지 | <p>민법 제565조(해약금)</p> <p>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p> |
| 교환 및 양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교환 및 양여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는지 ○ 교환재산의 가격평정은 적정한지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교환한 것은 없는지 ○ 당해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재산과 교환하면서 관리청의 허가없이 교환한 것은 없는지 ○ 교환재산 일방의 가격이 타방 가격의 4분의 3 미만임에도 교환한 것은 없는지 ○ 교환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되어 있는지 ○ 교환자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지 ○ 일반재산의 양여사유는 타당한지 | <p>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제54조(교환), 제55조(양여)</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5조(재산 관리관 등의 행위 제한), 제39조(교환), 제40조(양여)</p> |

재 산 의 관 리

관 계 법 령

-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30조(사용허가), 제41조(처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8조(관리 및 처분)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재산의 유지·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므로써 편취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환지처분 받은 재산을 국·공유재산대장 등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국·공유토지 보상공탁금이 횡령 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국·공유재산의 소관청을 잘못 지정하여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행정재산 등의 관리 기관은 적정한지 ○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불법점유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무단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건물 등 재산의 보수, 개량, 규지를 태만히 하여 사용 불능케 된 것은 없는지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충분한 관리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행하여 졌는지 ○ 불필요한 관리비의 지출로 예산을 낭용한 것은 없는지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한 감독은 하고 있는지 ○ 주식지분, 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한 관리는 적정한지 | <p>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30조(사용허가), 제41조(처분 등),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제60조(현물출자), 제72조(변상금의 징수)</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제81조(변상금의 징수)</p> |
| 관리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개폐에 따른 재산의 관리환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지 ○ 관리환에 있어 관리청 상호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지 ○ 상이한 회계간에 관리환을 무상으로 한 것은 없는지 ○ 관리환의 사유는 정당한지 ○ 관리환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없는지 ○ 유상으로 관리환하는 경우의 재산가액의 결정방법은 적당한지 | <p>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73조(유상 관리전환 등)</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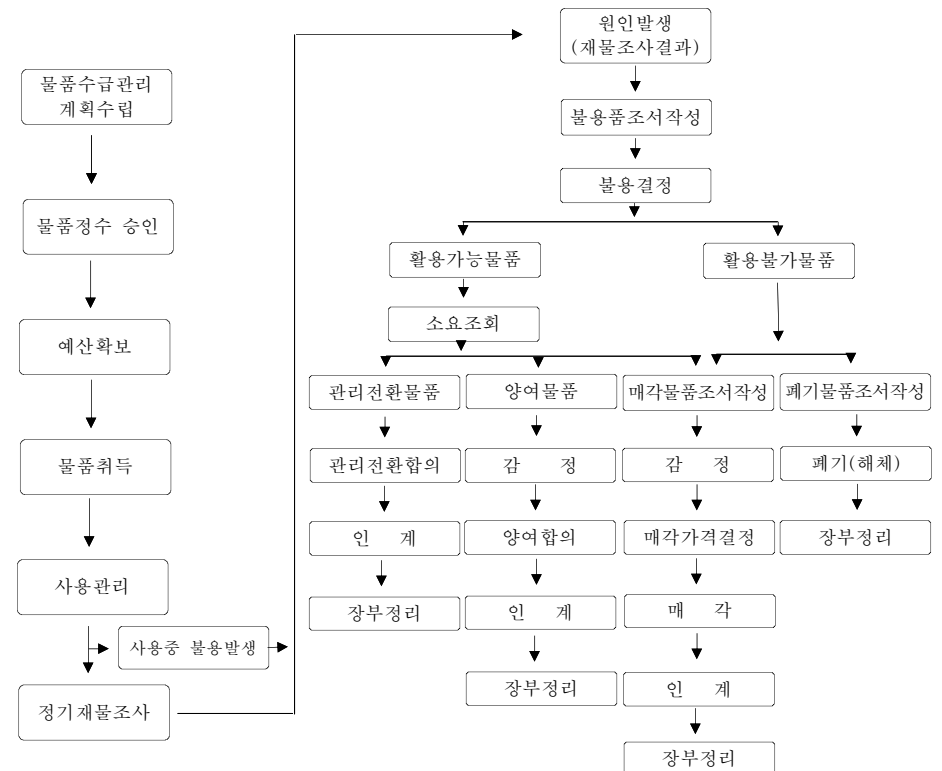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행정재산의 보존사용·수익 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수익허가로 인하여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사용수익 허가한 사유는 정당한지 ○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가 그 재산에 영구적 시설물을 축조한 것은 없는지 ○ 일시적 시설 및 가설물은 언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데도 허가를 철회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는데도 사용료 이외에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료의 산정, 사용료 면제 등의 사유는 타당한지 ○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사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적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 사용허가한 보존재산을 훼손한 때에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은 추징하였는지 ○ 기부채납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면서 사용료 면제약정은 기부채납 당시의 재산가액 범위내인지 | <p>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2조(사용료),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72조(변상금의 징수)</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81조(변상금의 징수)</p> |
| 일반재산의 대부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적정한지 ○ 대부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 대부료가 체납되었는데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재산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 <p>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대부료의 과의 해제 등),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80조(연체료의 징수)</p> |

물 품 관 리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60조(재물조사 등)
- 물품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업 무 처 리 절 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물품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품명이 상이한 물품임에도 동일한 규격으로 일괄 기록관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를 통하여 물품목록번호 규격 식별번호가 “9999” 인 것을 점검 하였는지 ○ 신축 건물의 경우 당초 시설비로 구입된 물품을 물품으로 분리 등재하였는지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사용 중인 변압기, 발전기 등을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비소모품을 소모품으로 전환시 아무 절차없이 임의로 분류전환(-) 처리한 사례는 없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제51조(표준화) |
| 물품수급 관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소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수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취득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시 예산과 연계 검토하였는지 ○ 예산의 삭감 또는 증액과 관련하여 수급관리계획을 조정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 잉여품, 초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취득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지 ○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았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 물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나 사업목적이 확정되기 전에 구매하여 장기간 설치 하지 않은 상태로 창고 등에 보관되고 있는 물품은 없는지 (부서별 물품창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68조(취득)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계법규 |
|-------|---|--|
| 물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당시 계약규격과 다른 규격이나 모델, 제조회사의 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합격처리한 물품이 있는지(모델 등이 다른 경우 취득금액 차이도 확인) ○ 납품검사를 실시하면서 구성품이 누락되었는데도 합격처리한 물품이 있는지 ○ 구매요구 시방서에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납품시 이를 누락한채 합격처리한 경우는 없는지 (예시 : UPS, 향온향습기, 환경장비 등) ○ 물품을 다량 집중 구매 후 각 운용관에게 수요량을 초과 하여 출납하여 사용치 못하고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 물품운용관은 고장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 보고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지? 물품관리관은 수리요청된 물품에 대하여 수리 조치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또 고장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 조직 변동 등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 또는 사용부서에 물품을 사용하게 할 경우 물품 출납명령을 거쳐 물품이 이동이 되었는지 ○ 반납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지 ○ 물품 사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 보고 없이 임의로 다른 모델의 물품을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노트북 등) ○ 사용 중인 물품을 물품관리공무원의 승낙없이 사용 공무원이 임의로 반출시키거나 대부한 사실은 없는가? ○ 수리대상 물품을 물품관리관에 보고 없이 수리업체에 교부한 것은 없는지 ○ 물품관리관이 다른 시설에 소관 물품을 보관하게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물품 관리관),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69조(보관의 원칙), 제70조(출납명령), 제71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

 **재산관리분야 주요 지적사례**

1. 공유재산 매각(지명경쟁입찰) 부적정
2.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가격산정 부적정
3.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소급 부적정
5. 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수행 소홀
6.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부적정(타 기관)
7. 공유재산 교환 부적정(타 기관)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물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은 일치한지? 특히 카메라, 망원경, 노트북, 의약품, 도서, 미술품등 외부로의 이동이 쉬운 물품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쉬운 물품이 손망실 또는 무단으로 불출된 것은 없는지 ○ 손망실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 보고되었는지 ○ 손망실 물품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변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변상처리 하였는지 ○ 시료, 시약, 약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구입량과 사용량 및 잔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특정약품 다량보유, 유효기간 경과여부) ○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함에 있어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였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
| 재물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요원 임명 시 물품관리에 관계된 공무원을 임명하지는 않았는지 ○ 재물조사 목록표상에 기재한 실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재물조사결과표와 부족품 및 불용품 목록표 등을 전산 출력하여 재물조사 반장은 물품관리관에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분석결과를 보고 하였는지 ○ 실사 결과 과부족품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
| 정수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고시 제7호('01.10.4.)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 의거 해당 물품에 대해 정수를 운영하고 있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 물품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공간, 업무변동, 인력 미확보, 학과 미개설, 연구과제 미설정, 소모품 비용 과다, 중요 부품 미확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신품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없는지 ○ 사용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물품은 없는지 ○ 사용가능품을 불편상의 이유로 유사품을 다시 구입하고 기존 물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 행정업무집행상 요구된 규격보다 낮은 규격의 물품을 취득하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물품은 없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 관리 계획), 제59조(재고관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공유재산 매각(지명경쟁입찰) 부적정

-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모두에게 지명 경쟁 입찰사실을 통지하여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중 일부에게만 지명경쟁 입찰사실을 통지하여 사실 상 수익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

2.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가격산정 부적정

-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하는데도,
- 경찰청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면서 양쪽 교환재산의 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토지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신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교환을 추진하여, 감정평가액 미포함은 물론 건축물 신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건축물을 경찰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킴

3. 공유재산 수익계약 매각 부적정

-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수익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수익계약 매각이 가능한데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수익계약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민원발생을 이유로 수익 계약 매각하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수익계약 매각 대상으로 판단하여 수익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 소급 부적정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된 단체 등이 일정기간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를 하다가 뒤늦게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데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변상금 부과를 부당하게 면제함

5. 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 수행 소홀

- 공유재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장(訴狀) 등 소송관계서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답변서 제출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송 수행자 지정, 대리인(변호사) 지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도록 함.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6.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부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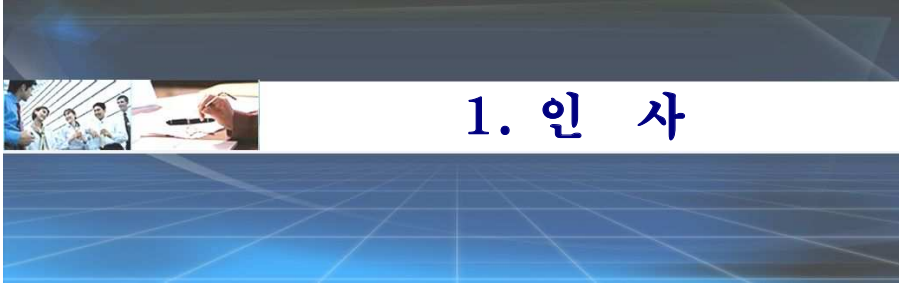
- 행정재산은 출자의 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며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의 경우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용도 폐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 폐지하여 이를 현물 출자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 △△△공사와 공동으로 △△지구 택지개발사업(총사업비 1조 9,923억 원)을 추진하면서, 30%의 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5,977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사 순자산액의 10배인 5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자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 폐지하여 현물 출자

7. 공유재산 교환 부적정(○○도)

-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데에도, 공용·공공용 활용계획도 없는 ○○○○○의 ○○○○○○ 관사 등 3건의 재산을 교환 취득 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2 장 일반 행정



인사감사제도 운영개요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 징계령
-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공무원 임용시험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업무처리 절차

● 감사범위

임용, 시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수, 징계, 신분보장, 복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감사절차 및 처분기준

【감사절차】

- 감사일정 통보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 정기감사는 시행 50일전까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 ※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감사개시 5일전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시감사는 감사개시 전일까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
- 감사의 실시
 - 증거서류 징구
 - 감사관은 감사 실시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요구
 - 서류 및 자료는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
 - 확인서 징구
 -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문답서 작성
 -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업무 처리의 배경과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질문서 발부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 중 처분 요구를 하기 전에 피 감사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음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요구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지사에게 보고하고 처분요구서 발송

【처분기준】

○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 처분양정 | 위법·부당의 정도 |
|-------|---|
| 기관 경고 | ○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당해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해 기관의 장에게 경고 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기관 주의 |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 전체 차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위법·부당성이 치유된 사항 |
| 시 정 | ○ 취소 또는 철회로 조속한 원상회복이 요구되는 사항 - 문제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개 선 | ○ 자체 인사제도 또는 인사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당해기관 자체 인사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신분상 조치보다는 인사운영상 개선을 요구함이 더 효과적인 경우 |
| 통 보 | ○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인사운영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 처분양정 | 위법·부당의 정도 |
|------|--|
| 징 계 | ○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중대하고 명백한 인사법규 위반이나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 훈 계 |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경우 -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정부의 인사정책 또는 제도개선 내용의 이행에 극히 소극적인 경우 |
| 주 의 | ○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법규 해석상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

세부 착안 사항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공 통 사 항 | ○ 인사개혁사항의 이행실태 - 개방형직위제, 직위공모제, 인사교류제,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인사랑), 성과급제 등 ○ 전회 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실태 -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정리 및 변경 ○ 인사운영에 관한 소속공무원 여론 청취 |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평정규칙 등 |

| 세 부 사 업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정·현원 운 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관별·직급별 정·현원 운영실태 - 초과현원의 운영 및 별도정원 관리의 적정성 - 본부(청)에서 소속기관 현원을 이체하여 운영여부 |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공무원 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채용시험의 적정성 - 시험공고 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채용후보자명부 순위 작성의 적정성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및 연장의 적정성 ○ 채용시험 합격결정의 적정성 (가산점 적용, 동점자 처리 및 면접방법) ○ 신체검사 합격결정의 적합성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의 적정성 여부 - 경력경쟁임용시험요건(1호~11호)별 시험방법의 준수여부 - 경력경쟁임용시험 당시 공채임용대기자 유무 - 공채직렬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시험으로 실시 여부 - 특채시 자격 및 응시연령의 적정여부 ○ 경력경쟁임용시험시험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의 경력·자격 등 요건의 적정성 - 응시자격의 예외승인 여부 -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건·자격기준 적용의 적정 여부 등 ○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채용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준수 여부 ○ 타기관 공무원 전입시 동의여부 | 법 제27조, 제36조, 임용령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9조의3,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3 신체검사규정 제4조 |

| 세 부 사 업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공무원 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적정 여부 -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 예정 직위에 한하여 임용 ○ 시보임용 - 시보임용기간 및 정규공무원 임용의 적정성 · 시보임용전의 교육훈련기간 단축 여부 · 지방공무원으로 특채된 국가공무원의 시보 임용 및 면제의 적정성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감봉처분기간의 시보임용기간 제외 여부 ○ 장애인 채용의 적정성 - 채용비율 준수여부 등 ○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의 적정성 | 법 제27조, 임용령 제18조, 법 제28조, 임용령 제24조 및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48조 |
| 승 진 임 용 | <p>가.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위원 지정의 타당성 ○ 실효성 있는 승진심사 실시 여부 - 임용(제청)권자에 의한 승진예정자 별도 결정 여부 - 구체적·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질심사 여부 ○ 승진심사기준 적용의 적정성 - 기준의 일관성·형평성 여부 - 승진결정이 명부순위와의 현저한 불균형 또는 소속기관간 승진인원의 현저한 불균형 - 특정요소에 대한 비중의 불공정한 적용여부 | 법 제7조, 제38조, 제39조 임용령 제5조의2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승 진 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 ○ 승진소요 최저연수 합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도직의 유사경력, 별정직 경력의 환산 등 ○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활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 특별승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요건, 절차 및 방법 등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시기·방법의 타당성 ○ 분할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 적정여부 ○ 새로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직전 승진심사 여부 ○ 강임된 공무원 관리의 적정성 | 법 제39조의3 임용령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2, 제38조의4, 제41조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 |
| | <p>나. 근속승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승진기간 산정의 적정성 ○ 근속승진 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 근속 승진자 정원관리의 적정성 | 제35조의4 |
| | <p>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 선발·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대상 및 요건의 적정성 ○ 선발절차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 | 임용령 제33조의2 |
| | <p>라. 근무성적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시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평정, 수시평정 ○ 4급이상 공무원의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의 적정성 | 임용령 제35조의3 임용령 제31조의2,3 평정규칙 제3조, 제7조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승 진 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 ○ 근무성적평정 균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평정점간 간격 및 인원수 균등 여부 ○ 근무성적 예외평정의 시기·방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직위해제·파견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적정성 등 ○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지정의 적정성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소위원회) 운영 ○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감점 적용 여부 ○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실적심사제도 운영의 적정성 | 평정규칙 제8조, 제9조,제11조의 2 연구직·지도직 규정 제15조 |
| | <p>마. 경력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기준일 적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정기준일이 아닌 후보자명부 등재일을 기준으로 평정여부 ○ 경력평정대상기간 계산 및 경력환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구분(갑·을·병·정) 및 환산을 적정 여부 -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인정 여부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의 제외 여부 ○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상 의무수행·외국기관 임시 고용에 따른 휴직기간을 휴직당시 직급의 재직경력으로 보아 평정 여부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경력평정방법 적정성 ○ 특정직 및 별정직 경력의 상당계급 평정 여부 ○ 경력평정 가산점 적용대상 및 산출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위 근무경력 등 ○ 경력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여부 | 평정규칙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승진 임용 | <p>바. 교육훈련의 인사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이수 여부 ○ 국내·외 기관 위탁교육 이수자와 보직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이수 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 여부 <p>사. 가정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가정 평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평정 대상 자격증 여부와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만 평정여부 ○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정평정 여부 ○ 실적가점 부여시 기준과 요건 등을 사전에 공개 여부 | <p>임용령 제10조의 2,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p> <p>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2</p> |
| 보직 관리 | <p>가. 보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직관리기준의 적정성 및 실질적인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시행 여부 - 보직경로에 의한 단계별 보직 여부 -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임용 여부 -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사례 ○ 분야별 보직관리제 이행실태 ○ 전문직위(국제분야, 핵심분야) 운영실태 <p>나. 전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전보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의 안정성 저해 여부 ○ 전보 사전승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 감사담당공무원·특채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이행 여부 ○ 직류별로 채용된 5급 공무원의 전보제한 이행 여부 | <p>법 제30조의5 임용령 제7조의3, 제10조의3,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p> <p>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p>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보직 관리 | <p>다. 파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파견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견운영 여부 ○ 파견사유 및 기간(연장)의 적정성 여부 ○ 파견대상자 선발의 적정성 여부 (파견요청 사유와 관련되는 적정 공무원 파견 여부) ○ 결원보충이 필요한 1년 이상의 파견시 도와 협의 여부 (행자부 승인) ○ 파견기간 만료 전 수시 교체파견 여부 ○ 과도한 별도정원 운영여부 및 파견사유 소멸 후에도 결원 보충을 위해 파견유지 여부 <p>마. 전 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요건, 전직시험, 전직제한 등 <p>바. 휴직·복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사유별 요건 및 기간의 적정성 ○ 동일 질병에 대한 반복 휴직의 적정성 ○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신고 및 복직 발령의 타당성 ○ 당연복직자의 복직지연 여부(신고일에 복직) | <p>임용령 제41조, 제42조</p> <p>임용령 제29조, 제30조</p> <p>법 제63조, 제65조</p> <p>임용령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57조의2</p> |
| 신분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여부 ○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직위해제 된 자의 대기기간 (3월 이내)중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등의 요구 또는 복직발령 이행 여부 ○ 비위관련자를 직무수행능력 부족사유로 직위해제 여부 ○ 직제개폐에 따른 과원으로 직권면직시 면직대상자 결정의 적정성 ○ 파면·해임 및 면직처분의 취소결정에 따른 신분 복구 조치의 적정성 | <p>법 제63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5조의3.</p> <p>임용령 제58조, 제59조</p>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인사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직위 총원시기의 적정성 ○ 개방형직위 선발과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 적극적인 모집활동 여부 -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의 적절성 - 임명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지원노력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채용광고 등(광고 생략시 인사위 의결) - 인사위 의결 여부(채용시, 재계약시 5년 범위내) ○ 근무실적평가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개방형직위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관련지침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 연구 지도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직관리기준의 설정 및 전보제한 기간(2년) 준수 여부 ○ 전보기간 내 전보시 사전승인제도 이행 여부 ○ 연구 및 지도직 임용에 대한 임용권 행사의 적정성 ○ 경력경쟁임용·전직 시험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소지 여부 등) 적용의 적정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반영비율 적용 ○ 근무성적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의 적정성 ○ 승진임용 제정절차의 적정성 ○ 전직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전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승인여부 ○ 전직시험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전직시험 면제의 적정성 ○ 전직제한기간 적용의 적정성 ○ 연구직공무원의 유사경력 합산의 적정성 | 법 제30조의 5 임용령 제16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연구·지도직 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14조, 제13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시험령 제3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연구 지도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임용제한의 적정성 ○ 연구실적 심사 및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운영여부 ○ 연구직 공무원의 승급심사 시행여부 | |
| 징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가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한 경우 3월 이내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 징계업무처리 태만으로 징계시효기간 3년(2102. 3.21 이전 징계사유는 2년 적용,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년) 경과 여부 ○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의 진행 중지 이행 여부 ○ 징계위원회 관할의 적정성 (고의 분리 여부)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의 적정성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의 엄중문책 여부 ○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감경 여부 ○ 징계감경 공적적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사용 여부 등 ○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여부 ○ 징계의결 집행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여부 ○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 적정 여부 | 법 제13조, 제73조의2 법 제73조, 징계령 제2조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 봉급 및 수당 | <p>가. 봉급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임된 봉급이 강임 전 보다 적은 경우 강임 전의 봉급지급 여부 ○ 초임호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자의 호봉획정의 적정성 - 경력중복 시 호봉합산의 적정성 - 특별승급, 승급제한 등의 사유시 호봉획정의 적정성 - '89. 12. 31.이전 경력의 간주경력 적용 여부 | 보수규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봉급 및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의 재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자에 대한 호봉 재 확정의 적정성 - 유사경력 등 경력 합산시 호봉 재 확정의 적정성 ○ 유사경력 인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렬별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무한 임용전 민간경력의 유사 경력인정 적정성 ○ 승진시 호봉확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급별 최저호봉 및 최고호봉에서 승진시 잔여기간 가산 적정성 여부 ○ 승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인 자에 대한 승급제한 여부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승급제한 여부(징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징계처분자중 훈·포장 등 포상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 단축 여부 ○ 승급기간 특례자의 호봉 산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수행 휴직자, 외국유학 휴직자 등 ○ 호봉정정시 정산의 적정성 ○ 결근·휴직·직위해제기간의 봉급 감액 여부 ○ 감봉·정직처분자에 대한 보수감액 여부 ○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하한액 적용 여부 ○ 승진·강임시 연봉책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제 대상자 → 연봉제 대상자 승진의 경우 (5급 → 4급) - 연봉제 대상자간 승진의 경우(예 : 4급 이상→1급 까지) ○ 징계처분, 결근, 휴직기간, 직위해제시 연봉 감액 적정성 | 보수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 세 부 사업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령 |
|---------|---|--|
| 봉급 및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수당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말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지급 여부 - 기말수당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의 적정성 ○ 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지급 여부 - 징계 또는 질병휴직자에 대한 감액지급 여부 ○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선택의 적정 여부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여부 · 지급순위 조정기준 및 지급제외 기준 설정의 적정 여부 · 지급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사 실시 여부 - 제도운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영상 소속직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실시 여부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 및 직원대상 교육 실시 여부 · 지급 등급의 공개 등 기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자녀 변동시 사실 신고 여부 - 지급액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자에 대한 감액조치 여부 ○ 초과근무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산정의 적정 여부 - 초과근무수당액의 일괄 균등지급행위 여부 - 관리업무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 민원업무수당 및 전산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간 2중 지급 여부 ○ 징계처분자, 직위해제자, 휴직자의 수당 적정 지급 여부 ○ 신규임용자, 면직자 등의 수당 적정지급 여부 | 수당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1조의 3 제15조, 제19조 수당규정 별표 3 별표11 |

인사분야 주요 지적사례

1. 계약직 채용 부적정
2.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및 운영 부적정
3. 공무원 파견 부적정
4. 승진관련 정현원 관리 부적정
5. 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보직 부여 부적정
6. 농민상담소장 직렬 불부합 인사발령
7. 자원봉사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실적가점 및 시간외 수당 부당 취득
8. 승진 임용 순위 부당 운영
9. 4급 공무원 성과연봉 책정 부적정
10. 신규임용 공무원 전출제한 미준수
11. 휴직자 관리 부적정
12.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타 기관)
13. 명예퇴직한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타 기관)
14.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타기관)
15. 자격증 가점 부여 부적정(타기관)
16. 승진임용범위 배수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운영 (타기관)
17. 6급 근속승진 부적정 (타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계약직 채용 부적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직 채용시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 조건에 관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국제교류 및 영어 통역을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 다급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서 공고에는 국내대학 학사학위의 경우 영어영문학과, 영어 학과로 정하였으나, 한문교육과(부전공 영어교육학) 전공자를 선발하였으며 프리랜서 경력을 경력심의회회의 심의 없이 100% 인정하는 등 채용요건 미달자를 합격처리.

또한, 2010. x. xx. 시장 보좌 및 수행(비서인력) 직위로 공고를 생략하여 채용한 자를 ○○○○○에 배치하여 비서직이 아닌 ○○○○○의 분장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2011. x. xx. 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임용하여 계약직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다수의 응시기회 박탈.

2.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및 운영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5급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정원이며, 기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타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구 없이 정원만을 책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 그런데도 2007. x. x.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2개과를 증설하였고 5급 정원은 3명을 증원하고, 증원한 인원을 ○○○○○에 대한 파견하였고, 20xx. x. xx.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 시 1개과를 증설하는데도 ○○시 행정기구에 속하지 않은 ○○○○재단에 파견한다고 명시하고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여, 기구의 수보다 2명 많은 5급 정원을 파견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기구 운영 질서를 어지럽힘.

3. 공무원 파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은 「상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속 직원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 휴직제를 활용하여야 하고, 또한, 5급 결원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연간퇴직률과 증원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원 보충을 받을 수 없는 파견은 현원으로 관리 되어야 하므로 결원이나 예상결원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 ○○시에서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에 20xx. x. xx. 행정0급 ○○○을 20xx. x. xx.까지 파견한 결과 영리목적 민간기업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기간 만큼의 봉급 00,000천 원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파견자의 결원직위를 보충할 목적으로, 파견 직위를 명예퇴직, 조직신설, 질병휴직, 공석과 같이 승진 요인으로 용인시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승진 의결한 사실.

4. 승진관련 정현원 관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1항에 따르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경우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 파견자인 ○○○급 ○○○의 경우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현원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xx. xx. x.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시 0급은 승진가능 인원을 4명(명예퇴직1, 승진연계2, 파견1)으로 심의의결 요구하고, 0급은 상위직급 결원이 3명 인데도 4명을 승진 심의하여 승진토록 하여, 0급의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도록 운영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히 한 사실

5. 별정직공무원 임용 및 보직 부여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에 따르면 “특수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에서는 비서실장을 6급(행정+세무1)에서 별정 6급으로 시의회를 통해 의결·개정하고, 지방별정6급 ○○○를 정무비서로 채용하여 당초 목적대로 비서실장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제에도 없는 시민사회협력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 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

10. 신규 임용 공무원 전출 제한 미준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근무예정 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행정과에서는 전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급 ○○○ 등 9명에 대하여 개인 고충 등의 사유로 타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사실

11. 휴직자 관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 0급 ○○○에 대하여 2010.xx.xx부터 20xx.xx.xx까지 ○○○○대학교 영어연수 프로그램으로 유학휴직을 명한 후 관리를 하지 않아, 20xx. xx. xx. ○○○○대학교 영어연수 프로그램이 끝나 휴직사유가 소멸 되었음에도 85일이 경과한 20xx. x. xx.이 되어서야 신고하고, 20xx. x. xx 에야 복직 처리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2. 근무평정 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4(근무평정위원회)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정 위원회가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 '10년 및 '11년 6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시 근무평정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 하는 등 근무평정위원회 기능을 무력화 하고, 동기간 중 5급이상 공무원 평정시 근무평정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지 않고 부군수가 단독으로 근무 성적을 평정

13. 명예퇴직한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부)

-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비례적인 액수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당해인의 공무담임권과 보수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그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기 위하여 일정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 퇴직”이 아닌 일반적인 “의원면직”처리를 함이 타당하나,
- ○○부에서는 기능8급 위생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명예퇴직 발령을 한 후, 4일 후에 별정직 8급 상당(위생원)으로 재임용하여 직위변경 없이 직종만 변경하여 동일직위에 계속 근무케 하는 등 명예퇴직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탈법적인 인사운영.

14.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도)

- 「○○○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한 자에 한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나,
- ○○○도에서는 국장(3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면서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였으며, 과장(4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면서 결원직위의 수가 1명인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4명) 범위에 들지 않는 21번 ○○○을 과장급 직무대리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승진 임용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직무대리자들을 우선승진시킴으로써 당초 승진 배수 안에 들지 않은 자가 승진.

15. 자격증 가점 부여 부적정 (○○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지·보관하고, 인사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시에서는 자격증 가점을 부여하면서 농촌지도사(6급 상당) ○○○의 경우 실제 소지한 자격증은 농기계정비기능사로서 가점 부여 대상 자격증이 아닌데도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자격증 가점 0.5점을 부여하는 등 총 5명의 자격증 소지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자격증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

16. 승진임용범위 배수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운영 (○○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과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1/2 이상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XX. X. XX. 자체 규칙인 「○○○○시 ○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당시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29명을 모두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지 않고, 1배수에 해당하는 8명만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17. 6급 근속승진 부적정 (○○구)(감사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근속 승진하기 위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고,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임용령 제33조 9항 및 제33조의2의 제3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퇴직 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임용령 제3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1. 인 사

-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1. X. XX. 지방사회복지7급 ○○○ 등 13명을 근속승진자로 임용하였는데, 지방사회복지7급 ○○○은 2002. X. XX. 지방사회복지7급으로 승진 할 당시 지방사회복지 8급 재직기간이 2년 2개월로 승진 최저년수에 미달하였으나, 별정직 7급으로 7년 6개월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여 7급 승진 시 반영된 별정직 7급 근무기간을 다시 포함시켜서는 안됨에도 다시 포함시켜 6급 근속승진 소요연수인 12년보다 3년 4일이 부족한데도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 그런데도 ○○군에서는 2011. X. XX. 지방시설7급 ○○○ 등 3명을 근속승진자로 선정하면서, 지방시설7급 ○○○은 2009. X. XX.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아, 근속승진 소요연수인 12년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근속승진대상자로 선정.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2 장 일반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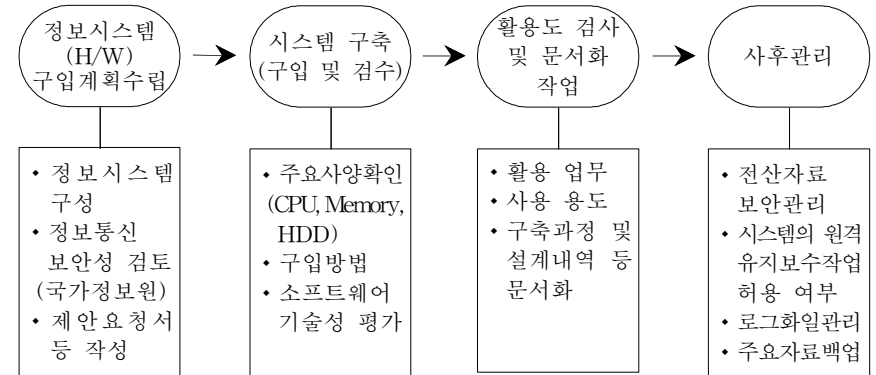
2.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12.2.26.이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20조(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조(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3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스템별 운용규정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정보화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구현에 적합한 조직구성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여부 | 전자정부법 |
| 정보화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 지역정보화촉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 활용 준수 여부 | 전자정부법제5조,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전자정부법 |
| 정보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구축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 기초가격 및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 계약법령 준수 여부 ○ 사업관리의 적정성 여부 ○ 검사 및 인수의 적정성 여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시스템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규정(행정자치부령)의 프로그램 중복 개발 여부 ○ 용역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개발범위 대비 비용산정 방법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용역개발 기술자의 투입 ○ 프로그램 용역개발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도 ▶ 과업지시서 업무범위 완성도 ▶ 시스템의 통합성(Program, H/W, S/W, N/W 등) | 전자정부법 시스템별 운용규정 |
| 정보시스템 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여부 ○ 감리비 산정 적정 여부 ○ 사업 유형별 적정 감리 이행 여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 정보시스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여부 ○ 투입비용 대비 시스템 이용 효과 ○ 전산처리의 오류 여부 ○ 전산처리자료의 불법사용 여부 | 전자정부법, 시스템별 운용규정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파일 구축에 따른 사전 통보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구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 업무처리 시 G4C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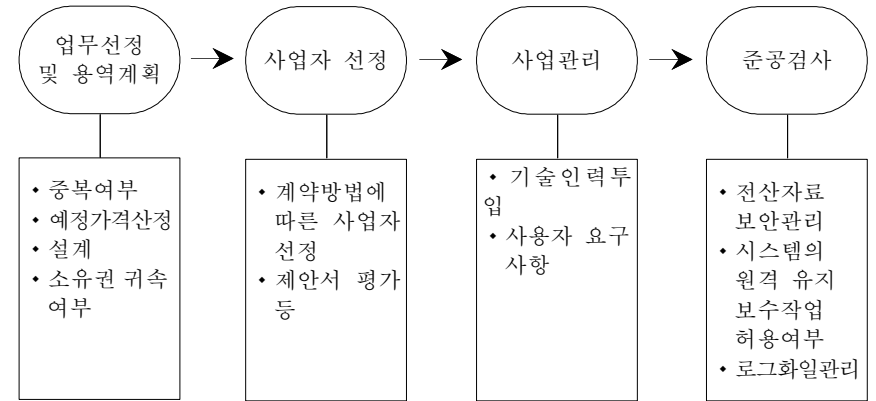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업무재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 도입 시 조직 및 업무절차에 대한 재설계 여부 ○ 업무재설계에 따른 법령 및 제도정비 여부 | 전자정부법 |
|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개발 시 행정코드, 사무처리의 표준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도입 시 성능 및 이용기술의 표준 준수 여부 | 전자정부법, 행정표준코드집, 행망용컴퓨터규격 |
|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안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보 통신망 구축 여부 ○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예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시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여론수렴 병행 실시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였는지 여부 ○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여부 | 전자정부법 |

상용 S/W 도입 ·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12.2.26.이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97조(제품선정), 제95조(검증신청)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스템별 운용규정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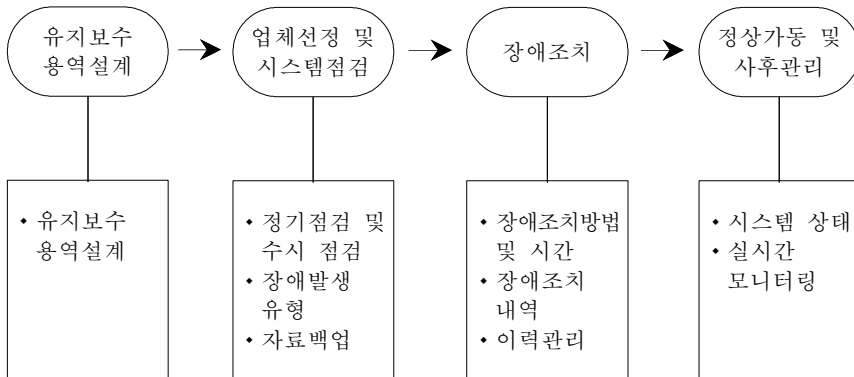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상용 S/W 도입 ·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의 적정성 여부 ○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여부 ○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여부 ○ 시스템간 호환 및 상호 정상가동 여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 정보보호제품 도입 ·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절차 이행 여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12.2.26.이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예산편성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유지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용역계획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대상 및 비용 산정 ○ 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장애발생 유형 파악 및 자료백업 실시 ▶ 장애조치 시간 및 방법 ▶ 장애조치내역 이력관리 ○ 정상작동 및 사후관리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유지보수 계약절차, 계약사항 준수여부 ○ 불필요한 유지보수 추진 여부 | 계약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예산편성기본지침 |
| 정보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관리의 적정성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적정성 여부 |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 전자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로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및 활용여부 ○ 법령에 적합한 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 여부 | 전자정부법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파일 구축에 따른 사전 통보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구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여부 ▶ 업무처리시 G4C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 |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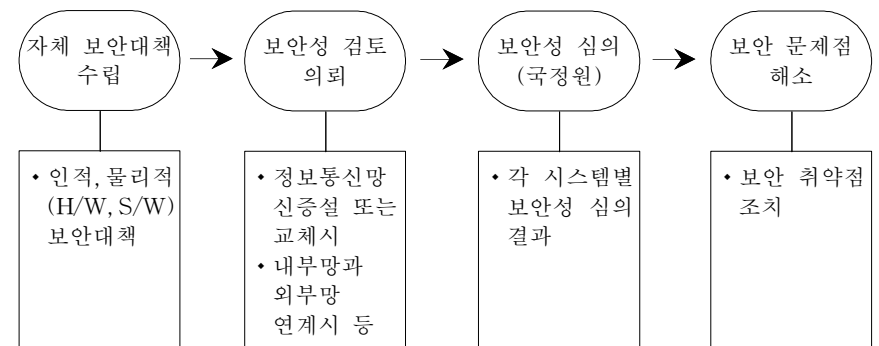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안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여부 ○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여부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
| 전자적 민원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민원창구 구축·운영 여부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4C, 시군구민원행정, 자체 홈페이지 접수민원 등 ○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여부 |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구축의 적정성 여부 ○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의 제공 여부 ○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여부 ○ 홈페이지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여부 ○ 홈페이지 불건전 자료 방치 여부 ○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 |
| 문서감축의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업무감축집행계획 수립·시행 여부 ○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 감축실적을 인터넷으로 공표하는지 여부 | 전자정부법 |
|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여부 ○ 투입비용 대비 시스템 이용 효과 ○ 전산처리의 오류 여부 ○ 전산처리자료의 불법사용 여부 | 시스템별 운영규정 |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요강
-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 RFID 보안관리 지침(국가정보원)
-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
-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경기도 지리정보 보안규정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절차



 정보·통신분야 주요 지적사례

1. 방법모니터링 용역 수의계약 등 부적정
2.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3.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산출 부적정
4. 홈페이지 분할 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처리
6. 도시계획정보(UPIS) DB구축 용역 추진 부적정
7.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8. 교통정보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보수사업 추진 부적정(타 기관)
9. 바로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감독 소홀(타 기관)
10. TM(원격관리)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타 기관)
11. 축전지 구입 검수 및 관리 소홀(타 기관)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개인정보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운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방침 홈페이지 게재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 개인정보 노출, 무단조회, 불법 이용 여부 등 | 개인정보보호법 |
| 정보통신 보안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실 보안관리의 적정성 여부 ○ 정보통신 보호구역 설정관리 여부 ○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 인증 제품 ○ 해킹 및 바이러스 보호 대책 여부 ○ 백업체계구축 운영 여부 ○ 주기적 위험분석 및 관리 여부 ○ 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 여부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신증설 또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시 - 내부정보통신망을 외부망에 연결시 등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방법모니터링 용역 수의계약 등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 방법용CCTV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경우 자격요건에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도 2010년부터 2011년에 ○○○방법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인데도, 특정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임의로 해석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다수업체에게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였으나,
-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업체는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체일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가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체임을 알고 임의로 과업지시서에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제3의 업체를 특정업체로부터 추천받아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사실상 특정업체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 일반입찰로 사업을 추진한 ‘□□ 방법용CCTV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의 1인당 단가액을 적용할 경우 2010년도에는 114,642천 원, 2011년도에는 176,812천 원, 총 291,454천 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2.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산정) 및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19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를 참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데이터베이스구축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기초공수에 스캔 및 보정 작업요소 그룹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일반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시에서는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의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임의로 기준 단가보다 높은 스캔기능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총 128,300천 원 상당을 과다 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3.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산출 부적정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에서 기존의 코드라인수 방식을 폐지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하면 제6조 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은 2010년 5월 1일 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1년 △△△방식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면서 Service 정보 제공 및 연계 프로그램개발비는 규정에 의한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개발비를 산정하고도, 다른 종류의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옮기는 프로그램개발비는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으로 계상하여 21,329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유선방송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미흡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플랫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전용회선 구축 등의 문제로 시스템 미활용.

4. 홈페이지 분할 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또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발주 노력)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2년 ○○○○대회 홈페이지 구축’ 과 ‘제58회 ○○○○대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업지시서 상 확연히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구축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 발주해야 하는데도, 사업을 분리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동일한 업체인 ○○○○(주)와 2건의 사업을 각각 계약함.

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처리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그런데도 ○○시 ○○구청 ○○과에서는 2010. 2. 19. ○○○의 불법증축한 건물을 적발한 뒤 2010. 10. 17.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담당자 ○○○는 2010. 10. 18.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645,419원을 ○○과장까지 결재하여 부과한 후, 불법건축주의 시정하겠다는 구두약속만으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0. 8. 18. 10:09:28에 결의등록 삭제와 2010. 8. 18. 10:09:59에 부과등록을 삭제를 한 다음, 2개월이 지난 2010. 10. 26. 이행강제금 3,645,419원을 다시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가 2012년에 적발됨.

6. 도시계획정보(UPIS) DB구축 용역 추진 부적정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사업은 도시계획업무의 기초가 되는 도면·대장·조서 등을 DB화하는 사업으로써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비가 5억 원 이상(H/W, S/W 단순구입비 제외)일 경우에는 DB구축 사업과는 별개로 감리를 시행해 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2012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으로 공고한 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업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억 원 이상의 DB구축 용역 추진 시 반드시 별도로 발주해야 할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소홀하였음.

7.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 및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사망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에서는 화장장에서 사망한 ○○시 ○○구 ○○동 정△△ 등 98명이 사망한지 수 일이 지난 후 본인의 명의로 ‘기타 목적(은행 제출용, 차량 명의변경 등)’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 받아 고발 조치함.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8. 교통정보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보수사업 추진 부적절(○○광역시)

- 교통정보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기간(2011.4.11~2012.2.29)중인 2011.11.14.에 고장 난 도형 식 교통전광판 12개소에 대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 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통신(주)와 『도형식 교통정보 전광판 보수 사업』를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사업비 51백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 2012년 교통정보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설계 시 유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전광판 36개소 중 2개소는 2011년 6월 노후 전광판 교체 공사 시 전면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하자완료일 (2012.6.22)까지는 유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 과업에 포함시켜 소요 용역비 1,244천원을 과다 설계

9. 바로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감독 소홀(○○광역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계약 상대방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주)○○○정보통신은 2순위로 계약을 포기한 △△△△(주)와 하도급 계약서를 2011.2.28.에 작성하고 △△△△(주) 소속 직원 인○○○을 유지 보수 전문인력으로 2012.1.31까지 시청내 상주시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10. TM(원격관리)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광역시)

- 2009. 6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 개발한 TM자료 공유전용시스템에 연계 보완하여 송수유량 TM자료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송수유량의 HMI S/W 및 DB서버 S/W 수정 등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된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면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개발규모에 의한 프로그램개발비 산정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를 산정하였으나 개발예정인 기능을 기술하지 않아 기능접수에 대한 산정근거가 없으며, 개발비산정은 개발원가와 직접경비, 이윤만을 합산 계상하여야 하나 계상되지 않아야 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제경비를 추가하여 사업비 2,816천원을 과다 산정.

11. 축전지 구입 검수 및 관리 소홀(○○광역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음.
- ○○광역시에서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정류기 교체 및 노후화에 따른 축전지를 구입하였으나, 2011년도 축전지 284셀 구입(66,700천원) 입찰공고문 사양서에는 A社 전지 규격이 제시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서에는 A社 전지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검사를 소홀히 하여 계약서상의 제품과 상이한 B社 전지제품이 납품되었는데도 알지 못한 채 검수.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2 장 일반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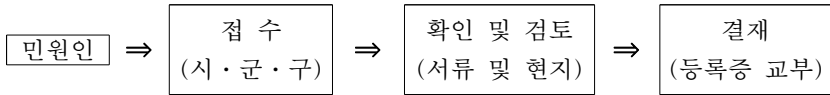
3. 문화 · 관광 · 광고물

유통관련업 등록 및 취소

관계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4조, 제67조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0조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8조의2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4조, 제27조~제28조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0조 등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3일

취 약 요 인

-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방, 가요방 등 유사명칭 사용 여부
- 주류판매, 제공, 보관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등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의 청소년실 설치 유무 및 출입시간 준수 여부
- 행정처분 경감 및 적정 여부
- 게임장의 상품권 관리실태 및 사행성 조장 여부 등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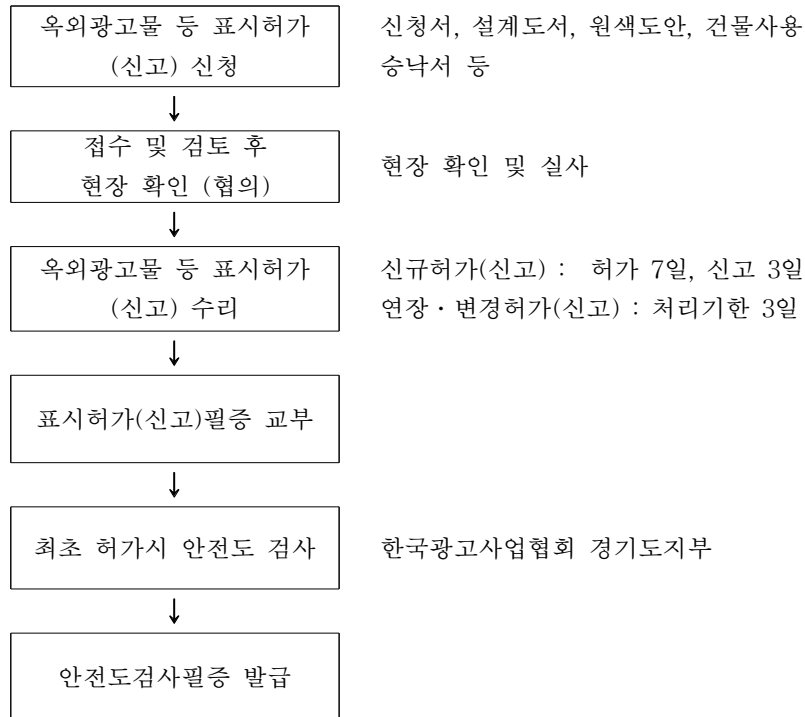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유통관련업 등록 | <p>○ 등록처리 조건의 부합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여부 - 영업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폐쇄 및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허가처리한 경우 <p>○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청소년출입 가능업소” 표지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지판 부착 여부 - 노래연습장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등 같은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등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1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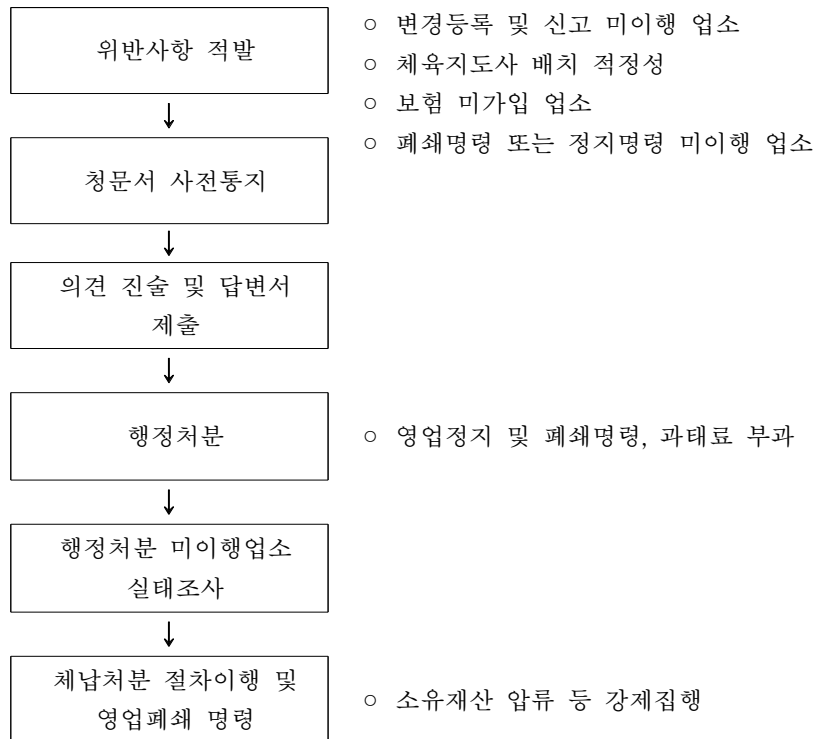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및 신고 업무처리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출장복명 및 사실확인 없이 허가처리 하는 사례 - 구비요건이 미흡한 경우 처리 여부 - 현장확인 결과 표시방법 위반사항 처리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도검사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허가시 안전도검사 실시여부와 안전도 불합격 광고물 처리여부 ○ 허가 및 신고사항의 갱신 및 기간연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및 신고사항 갱신 및 기간연장 독려여부 및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불법옥외광고물로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및 광고물 허가 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 |
| 옥외 광고업자 교육 및 행정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여부 ○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

신고 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3조, 제40조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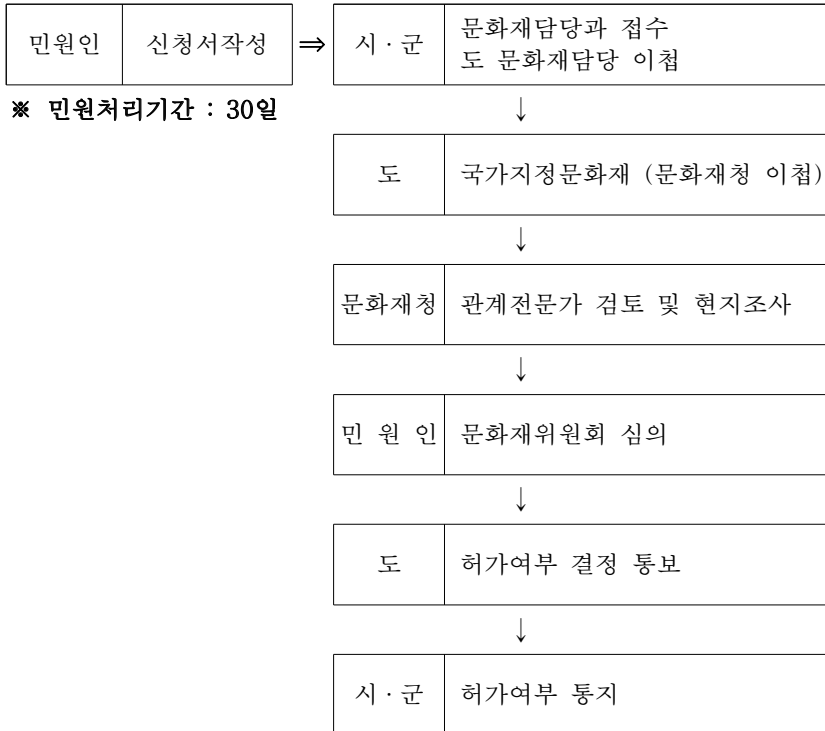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미이행 업소 처분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업소 처분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 또는 기피업소 처분 ○ 무단 이전 및 변경신고 누락 여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33조, 제38조 등 |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55조, 제74조 등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38조, 제39조 등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문화재 현상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500m, 도지정문화재 300m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해당부서의 협의 및 검토 없이 건축 및 건설공사 인·허가를 내주는 행위 ○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공사 중 유구, 유물 등 문화재 발견 시 신고여부 및 현상변경 조치 여부 ○ 문화재 복원공사 중 진입로가 없거나 추가운반비의 절약 등을 이유로 문화재의 일부 훼손 여부 ○ 관계전문가가 현지 출장없이 신청된 서류만 검토하여 문화재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건축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받았으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 공사 중 유구, 유물 등 문화재 발견 시 신고여부 및 현상변경절차의 이행 여부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5조 등 |
| 지표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및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의 진척을 위하여 지표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또는 그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어도 최종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지표조사 실시 여부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등 |

문화·관광 주요 지적사례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관리업무 소홀
3. 보조금 정산 소홀
4. 기부금품 접수(절차) 부적정
5. 시사 편찬사업 상임위원 등 위촉(채용) 부적정
6. 문화복지회관 위탁(절차) 등 부적정
7. ○○○촌 조성사업 관련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부적정
8.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가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2개 이상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며,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1차 2회(2010. 6월, 2010. 9월) 위반행위를 병합처분(영업정지 15일)하지 않고 2회에 걸쳐 각각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는 등 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달리하여 처분하였으며,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행위로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2010. 2월)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주류 판매 행위(2차)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 기준과 달리 부적하게 영업정지 10일 처분.

2.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관리업무 소홀

-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지침 및 우수선수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선수단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우수한 선수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수영입에 따른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고, 우수선수는 계약기간 종료 시 까지 ○○시의 동의 없는 이적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에서는 2009. 1. 1.부터 2011.12.31.까지 재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천 원을 지급하고 ○○○ 종목의 우수선수로 영입된 ○○○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10. 5월 퇴직하여 계약기간 잔여기간에 대한 영입비 ○○,○○○천 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관리업무 소홀.

3. 보조금 정산 소홀

-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 등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 ○○시에서는 2010~2011년도에 보조사업으로 개최한 ○○대회 등 4개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당초 보조금 신청서에 명시된 자부담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자부담(대회 참가비) 집행잔액 ○○,○○○천 원에 대하여 총사업비 집행액 부담 비율에 따라 별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제출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잔액 ○○,○○○천 원을 반납조치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소홀.

4. 기부금품 접수(절차) 부적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으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에도
- ○○시에서는 2010~2011년도 보조사업으로 개최한 ○○문화제의 보조사업자가 관내 단체 등로부터 접수한 후원금 ○,○○○천 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후원금을 보조사업비에 포함하여 일괄 집행하는 부적정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후원금 ○,○○○천 원을 보조금 사업수익으로 간주하여 세외수입 처리하는 등 기부금품 접수 등 업무 처리 소홀

5. 시사 편찬사업 상임위원 등 위촉(채용) 부적정

- 「○○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제8조 등에 의하면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 수집 조사 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시사편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 위촉(상임위원 2명, 보조원 미위촉)한 상임위원 중 1명이 사직하자 관련 조례에서 정한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확정하여 요청한 비상근 연구위원과 상근직 사무원 채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위 비상근 연구위원은 채용된 지 불과 4개월 후에 사직하였으며,

사무원은 시사편찬을 위한 조사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사편찬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소홀

6. 문화복지회관 위탁(절차) 등 부적정

-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에 의하면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함에도
- ○○시에서는 문화복지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 시설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조례에서 정한 수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 시설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과 문화복지회관과 ○○○ 시설을 일괄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 소홀

7. ○○○○촌 조성사업 관련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은 농가경제통계 작성 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에서는 ○○○○촌 조성사업 관련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169천㎡가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영농손실액 보상금액 산정시 2010. 2월 보상액 협의성립 당시의 통계청에서 발표(2009. 4월)한 2008년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통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농가 및 어가경제통계 자료(2008. 3월 발표)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총 ○○,○○○천 원의 영농손실액을 과소지급.

8.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그런데도 ○○시 ○○○과에서는 ○○시 ○○구 ○○동에 거주하는 광고주 ○○○이 2010. 1. 31. ○○시 ○○동 ○번지 상에 설치한 가로형간판 등 2012.11월 현재까지 표시기간이 경과된 262건(허가 184, 신고 78)에 대하여 표시·설치한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2 장 일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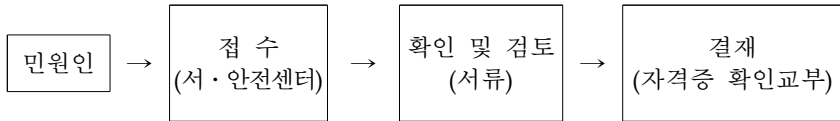
4. 소 방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처리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시행령 별표9)

업 무 처 리 절 차



※ 민원처리기간 : 즉시

세 부 착 안 사 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선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완공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대상을 확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취약한 대상은 어떤 것인지 여부 (개인건물, 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건물, 규모가 작은 건물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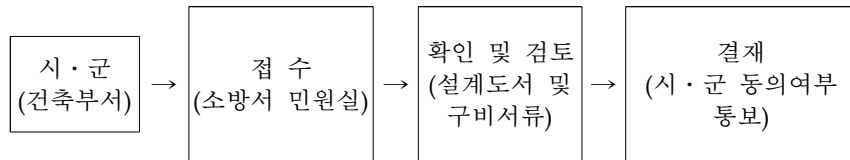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선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완공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하였는지 여부 유보신청에 따른 적절한 연기를 하여 주었는지 또는 유보 기간 적정 여부 1급, 2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종별에 따른 적절한 자격자가 선임신고 여부 선임 유보 후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고발 등 사법조치 이행 여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증, 강습 접수증, 수수료 등 확인 |
|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선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수리 되었는지 확인 신고 또는 유보의 근거의 명확 여부 미선임 대상을 고발 없이 방치 여부 신고태만 대상의 과태료 부과 여부 과태료 부과 시 부당강면 여부 미선임 또는 신고태만 대상을 사후조치 이행 여부(행정 지도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시행령 별표9) |

건축허가 동의 · 시공 업무처리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15조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5일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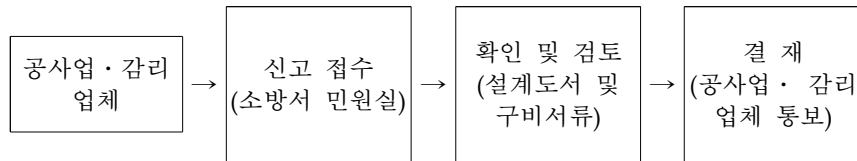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적정 여부 확인 ○ 동의 요구시 불임서류(설계도서, 시방서, 면허업체 등)의 적정 여부 ○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최근 개정법령 반영 등) ○ 건축물의 층별, 면적별, 용도별 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 ○ 소방시설기준의 특례적용의 적정 여부 | <p>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p> <p>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p> |
| 건축허가 시공 업무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착공신고 시 불임서류의 적정 여부 ○ 사전시공은 없었는지(의심대상 현장 확인 등) ○ 하자보수 대상 및 하자보수 기간, 이행증권의 소화여부 확인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

소방시설 완공 · 감리 업무처리

관계 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6조 내지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3일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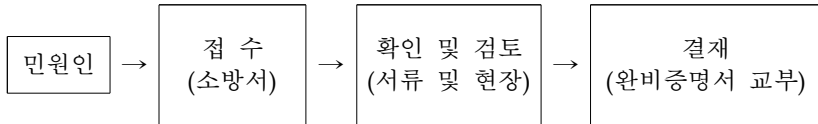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소방시설 완공 · 감리업무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완공 대상물의 불임서류(설계도서, 감리일지 등)의 적정 여부 ○ 소방감리자 지정신고 준수 및 신고서류의 적정 여부 ○ 상주감리의 경우 현장 상주여부 및 감리일지 작성 확인 | <p>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p> <p>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6조, 제18조</p> |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확인대상 허위감리결과 여부 확인(판매, 숙박, 다중이용시설)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교부에 따른 감리결과 보고서의 적정 여부 ○ 건축물의 층별, 면적별, 용도별 변경사항은 없는지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관리 및 통계관리 확인 | <p>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p> <p>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p> |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신고 업무처리

관계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3일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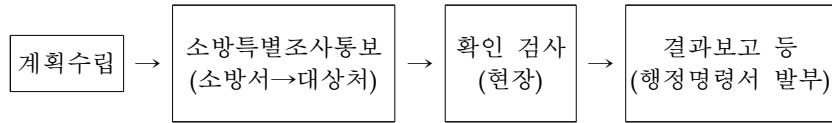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안전시설 등 시설완비증명 발급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신고 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 안전시설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적정 신고여부 확인 ○ 면적별, 층별, 용도별 안전시설 설계도서의 적정 여부 ○ 미비 안전시설의 육인 후 완비증명 발급여부 현장 확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업무 (방염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확인 시 방염물품 이외의 것 사용육인 여부 (합판 등 가연재 사용 등) ○ 방염성능검사 물품(목재)의 방염절차 이행 및 시험절차의 적정 또는 생략여부 ○ 고의 지연처리 및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타 업소와의 형평성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 20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소방특별조사 업무처리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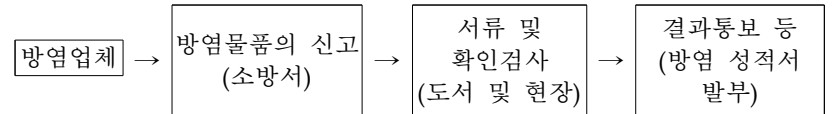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소방특별조사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특별조사서 작성(조사항목) 적정여부 확인 시정보완명령서 발부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 여부(기간, 내용 등)확인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적정 여부 보완명령을 발부하여야 할 미비 소방시설의 목인 여부 피난·방화시설의 훼손 여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 업무처리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10일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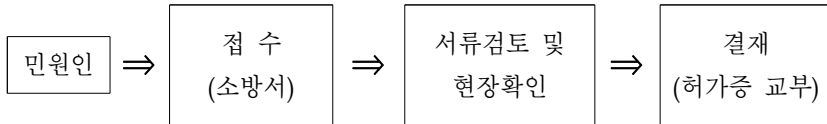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방염 후 처리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물품(면적, 방염도로 사용량 등) 적정 여부 확인 방염물품 면적초과 과태료 미부과 여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적정 여부 방염대상 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의 준수와 합격증 발급 적정 여부 방염물품 미비사항 목인 여부 방염물품 실험업체 등록의 적격 여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별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 계 법 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제8조, 제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제9조,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18조, 제63조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5일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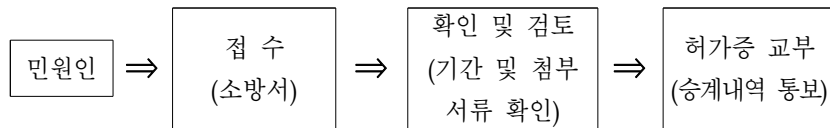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위험물 설치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지역의 설치 여부 ○ 제조소별, 시설별 부적합 사항 허가 여부 ○ 이동탱크 허가시 상치(주차) 장소 확보 여부 ○ 설치허가의 첨부서류와 도면의 적정 여부 ○ 변경허가의 적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취급수량을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허가한 사실 여부 - 허가용도외의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 여부 ○ 예방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변경) 허가시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 여부 - 설치(변경) 허가시 예방규정을 기한 내에 제출 여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
| 위험물 완공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도면과 현장 설치사항 일치 여부 ○ 시설 부적합 사항이 완공된 사항 여부 ○ 현장 확인 없이 완공처리 여부 ○ 총수압 검사 및 탱크안전성능 시험검사의 (성적서 확인) 적정 여부 ○ 수수료 징수 적정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 제21조 |

위험물제조서 등 관련업무

관 계 법 령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53조 ~ 제59조, 제76조, 제77조

업무처리 절차



※ 민원처리기간 : 즉시 및 5일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지위승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승계의 수리 적정 여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 - 양도·양수서 첨부 여부 - 신고기관 경과자 첨부 여부 (과태료 미 부과) 방치 여부 ○ 관련기관 미 통보 및 면허세 미납자에 허가증 교부 여부 ○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허가증 교부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시행령 규칙 제22조 |
| 용도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 신고업소 방치 여부 ○ 용도폐지에 적합한 조치 이행 여부 (배관절단 및 모래사장 등 현장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시행규칙 23조 |
| 위험물 안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선임대장 유지관리 여부 ○ 소방경사시 안전관리자 근무여부 확인 여부 ○ 자격 미달자 선임업소 방치 여부 ○ 미 선임업소 방치 여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이행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제13조 시행규칙 제53조~제59조 |

소방분야 주요 지적사례

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2.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완공 허가 부적정
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부적정
4. 법령 위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5. 화재조사관련 출동보고서 및 질문기록서 작성 소홀(타 기관)
6.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타 기관)
7. 건축허가(신축) 등의 동의 부적정(타 기관)
8.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 ○○시 소재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주가 임의로 고시원 내부에 5EA의 림을 불법으로 구획하여 사용.

2.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완공 허가 부적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옥외저장소의 경우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대해서는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 00소방서는“00산업 포함 6개소”에서는 섭씨 0도 이하인 MEK(섭씨 -9도), EA(섭씨 -13도), 아세톤(섭씨 -18도), 프라이머(섭씨 -9℃)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업무처리.

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부적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따르면 소방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 000주식회사 관계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기술인력 000을 기술인력으로 선임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30일이 지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업무처리.

4. 법령 위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시 ○○구 소재 ○○PC방은 2010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보완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데 2012년 현재까지 수시교육 대상에서 누락하여 교육 미실시.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5. 화재조사관련 출동보고서 및 질문기록서 작성 소홀(○○광역시)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06호, 2006.12.27.)」 제48조(화재조사 서류의 서식) 및 제49조(조사서류 작성)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48조의 서식에 의한 화재조사 서류 중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질문기록서, 화재현장 출동 보고서를 각각 현장감 있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소방서에서는 2008년도 화재발생 대상 중 화재번호 2008-00의 15개소에 대하여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질문기록서 등 화재현장 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조사 관련 업무 소홀.

6.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 소홀(○○광역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27호, 2007.12.4. 제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신축 건축물(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 ○○소방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구 ○○동 518-3번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80일이 지난 '08. 3. 27.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 건축물외 2개소에 대하여는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 처리 소홀.

7. 건축허가(신축) 등의 동의 부적정(○○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및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 등)에 따라 비상조명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 연결송수관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소방서 예방과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상조명등 과대적용 및 연결송수관설비를 누락하여 건축허가 동의 통보함.

| 연번 | 대상 | 위치 | 건축규모 | 허가동의일 | 부적정 내용 | 비고 |
|----|------|-----------|-----------------|------------|---------------|------------------------|
| 1 | ○○건물 | △△동 00-3 | 12/2층 2,680㎡ | 2011.00.05 | 비상조명등 과대적용 | 지하1층 133㎡ 지하2층 245㎡ |
| 2 | ○○건물 | △△동 00-21 | 5/2층 832㎡ | 2011.04.00 | 연결송수관설비 누락 | |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소방서 예방과에서는 ◎◎구 ●●동 00-00호 ○○○건물 등 6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선임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방화관리자를 소방서에 신고하여 소방관계법을 위반함.

| 연번 | 대상 | 주소 | 사용승인일 | 신고기한 | 신고일 | 비고 |
|----|-------|------------|-------------|-------------|-------------|----|
| 1 | ○○○건물 | △△동 000-19 | 2010.04.29. | 2010.06.13. | 2011.04.07. | 신축 |
| 2 | ○○○건물 | △△동 000-74 | 2010.08.27. | 2010.10.11. | 2010.10.19. | 신축 |
| 3 | ○○○건물 | △△동 000-50 | 2010.10.08. | 2010.11.22. | 2011.04.17. | 신축 |
| 4 | ○○○건물 | △△동 000-42 | 2010.10.12. | 2010.11.26. | 2011.04.06. | 신축 |
| 5 | ○○○건물 | △△동 000-18 | 2010.12.17. | 2011.01.31. | 2011.04.07. | 신축 |
| 6 | ○○○건물 | △△동 000-2 | 2010.12.21. | 2011.02.04. | 2011.04.06. | 신축 |

8.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신축, 증축 등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3 장 보건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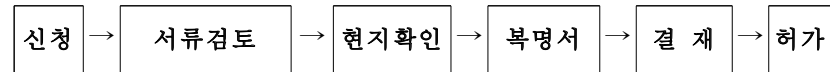
1. 보건·위생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



| | | | | | |
|----------|--|---------------------------------------|------------------------------|-------------------|----------|
| 민원 창구 | · 신원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확인원 · 학교정화구역 확인 · 위생교육필증 · 지하수 수질검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종별 시설기준 확인 | · 시설점검 표와 조사자 의견 기재 | · 복명서 내용 확인 | 위생 관리 |
|----------|--|---------------------------------------|------------------------------|-------------------|----------|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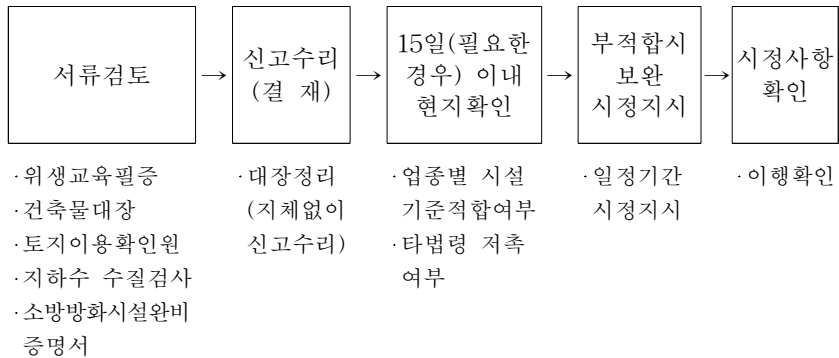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식품위생 업소 영업 허가 | <p>○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적정성</p> <p>1. 학교보건법 및 학원관련법령 저촉여부 적정 검토 여부 - 상대구역(200m), 절대구역(50m) 저촉여부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여부(교육청 회시문 확인) <<사례1>> 과거 허가된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촉여부 미확인 <<사례2>>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설학원 운영에 대해 미확인</p> <p>2.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완비증명서 제출 여부 - 소방완비 허가면적과 영업허가 면적과의 상이 여부 <<사례>> 소방관련법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을 임시폐쇄하고 검사될 한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 사례 (완비증명서상의 허가면적 확인 및 검사필한 일자가 이유 없이 수개월 이상 경과하였는지 등)</p> <p>3.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객실이 객석면적의 1/2초과 여부 - 객실내부가 주 객장에서 흰이 보이는지 여부 - 객실이 통로 또는 복도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 <<사례>> 영업허가 신청시에는 벽으로 위장하여 막아놓고 허가 후 사용하는 사례 (허가된 평면도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p> <p>4. 영업허가 제한 규정 저촉여부 - 영업허가 취소된 후 6개월·1년 이내(청소년 고용)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의 식품접객업 허가 여부 - 영업허가 취소 후 2년·3년(청소년 고용)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업종 허가 여부</p> | <p>식품위생법 제37조 학교보건법 제6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p> <p>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p> <p>식품위생법 제36조</p> |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38조(영업의 제한)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시설기준), 제40조(영업의 신고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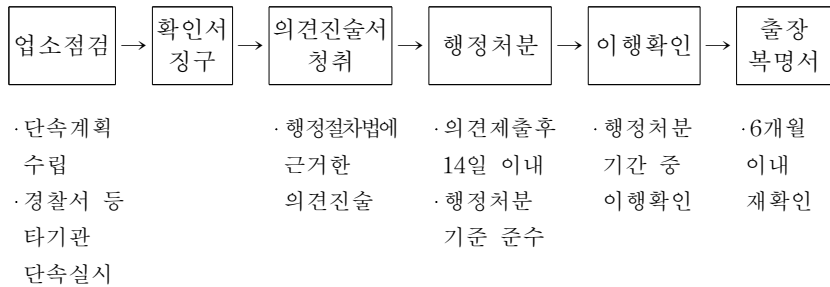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식품위생 업소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수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완비증명서 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의 경우 소방검사 실시 여부 - 소방완비 허가면적과 영업신고 면적과의 상이 여부 2. 사전 영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신고 받은 사항 확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조사 결과 기준위반사항 적정 조치 여부 <<사례>> 신고중 교부 후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 3. 업종별 영업범위를 벗어난 변태 영업 목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의 식사료 및 휴게음식점의 다류 미취급 여부 <<사례>> 단란주점 영업허가 규제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편법 영업신고 후 단란영업사례(시설조사시 음식 조리시설, 취급품목 등 확인 적정 여부에 대해 시설조사표 확인) | 식품위생법 제37조 학교보건법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 식품위생 업소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업허가(신고) 제한 규정 저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지 6개월·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신고처리 여부 -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처분 받은 지 2년·3년 이내의 자에게 동일업종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5. 내부 확인가능 문서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임대차 계약서 등 | 식품위생법 제3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제74조(시설개수명령)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76조(품목제조정지)
-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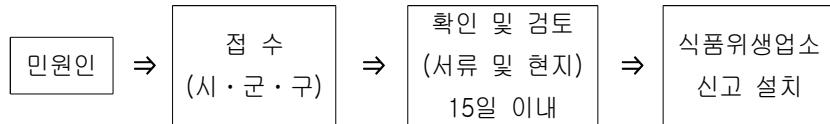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식품·공중 위생업소 행정 처분 | <p>○ 행정처분기준 적용 적정성 확인</p> <p>1. 행정처분 경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임의 경감 여부 <<사례>> 문제의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법기관의 기소·선고유예를 근거로 미처분 또는 경감(업소내의 식품위생법+폭력행위관련법을 위반행위에 대해 폭력 관련 무형의 사실을 가지고 처분면제)</p> <p>2. 의견제출 기한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행정처분 미 조치 <<사례>> 의견 미제출 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장기 방치한 결과 타 업종 전환으로 처분면탈</p> <p>3. 타 기관(경찰 등) 적발업소 통보시 행정처분 적정 여부 - 해당 경찰서의 통보대장, 위생부서 관리대장, 사전 유선통보대장 등을 비교하여 누락사항 확인 - 행정처분 대상에 누락된 업소를 확인 처분(경감처분 현황 제출을 기피함으로 경찰의 관리대장을 입수하여 의심되는 업소 확인) - 경찰 등 적발기관 통보이전 거짓 폐업 여부</p> <p>4. 1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 가중처분 기준 이행 적정성 <<사례>> 최초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차수 적용치 않고 2차 처분 일을 기준으로 차수 적용하여 과다 처분한 사례</p> <p>5.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하여야 할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를 행정편의에 의해 영업주에게 일괄 부과</p> <p>6.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적정성 - 의견제출 당사자 적정성(위임장 지참), 충분한 의견 제출 기한 미부여 등 <<사례>> 1차 시정명령사항 의견제출 생략(2차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권익제한 사항임)</p> <p>7. 행정처분업소 이행여부 확인 적정성 - 영업정지 등 게시문 미 부착 여부 - 시설개수명령 등 이행사항 형식적 확인</p> | <p>식품위생법 제89조</p> <p>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p> <p>행정절차법 제26조</p> |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등) 지도·감독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식품안전관리지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업무처리 절차



취 약 요 인

-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관리 미흡
-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수리시 소방법령 검토 미흡
-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 관리대응 미흡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위생관리 점검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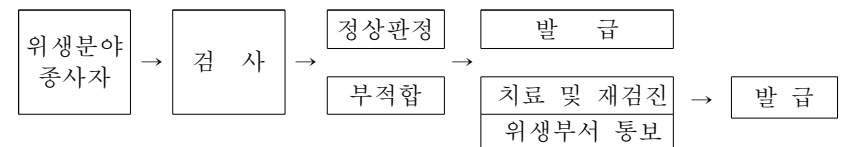
위생분야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관 계 법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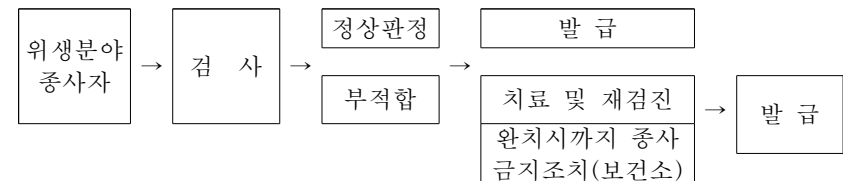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제50조(영업에 종사 못하는 질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업무처리 절차

- 정기건강진단 : 1회/년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성병건강진단 : 1회/1주 ~ 6월 (매독, HIV, 기타성병)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감염 발생 예방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분야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적정 여부 - 성병 건강진단 이상자의 완치시까지 일시적 영업에 종사치 못하도록 하는 적정 조치여부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감염자 위생부서 통보 여부 <p>《사례》 성병 건강진단 이상자에 대해 전화상으로만 지도하고 실제 종사여부는 확인치 않음으로 인해 성병감염자가 업소에 계속 종사</p> | 식품위생법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보건·위생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관리 소홀
2.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홀
3. 풍속영업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경찰서 미통보
4. 의료기관 진단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소홀
5. 생산실적 미보고 식품제조·가공업소 과태료 미부과
6. 건강기능식품 신고업소 출입·검사 미이행
7. 건강진단 미필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
8. 사법기관 처분을 사유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9.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소홀
10. 모범음식점 추진업무 및 지정 부적정
11.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생관리 소홀
12. 감염병예방 소독의무 미이행시설 관리 소홀(○○도)
13. 목욕장업소 수질관리 소홀(○○광역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실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조리에 사용하는 일반음식점 등 관내 관리대상 허가(신고) 식품위생업소 570개소(58.3%)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최종 수질검사일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이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여부 조차도 미파악.

2. 유통식품 수거검사 소홀

-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 수거검사 시 식품공전상 기준·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하되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별관리대상식품(과자류, 김치류, 절임식품류, 즉석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위주로 수거검사를 의뢰하고, 수검검사 시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식품판매점에서의 일괄 수거를 통한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를 탈피 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년간 총 396건의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의뢰하였으나 위해식품 유통 취약지역인 재래시장에 대한 수거검사 의뢰 건수는 4건으로 3년간 총 수거건수 대비 1.0%에 불과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지역 수거검사 또한 극히 저조한 반면 전체 수거검사 의뢰 건수 대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대형식품 판매업소 일괄 수거검사 의뢰 건수가 78.5%로서 위해 우려가 낮은 완제품 위주로 유통식품을 행정편의 위주로 수거검사 의뢰.

3. 풍속영업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경찰서 미통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허가관청은 당해 업종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휴·폐업 등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시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 유흥주점 신규허가 54건, 단란주점 신규허가 11건, 명의변경 휴폐업 522건, 행정처분 11건 총 598건의 인·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사항 등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유흥업소의 효율적 규제관리를 위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효력을 일실

4. 의료기관 진단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소홀

-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1~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총 43개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물론 다수의 진단방사선 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피폭선량 측정 실시여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소홀.

5.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및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라 품목별로 정해진 검사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주기 내에 실시하고 이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008년 이후 영업중인 식품제조·가공업 51개소에 대하여 2008년부터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및 기록서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없고, 업소 5개소 표본조사 실시 결과 5개소 모두 검사주기(6개월 이내)를 초과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관리를 소홀

6. 건강기능식품 신고업소 출입·검사 미이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시에는 영업시설의 배치도, 교육필증, 보관 시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신고일로 6개월 이내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동 ○○○-○번지 소재 「○○○○」(대표자 : ○○○)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수리를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출입·검사를 일체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신고를 수리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장판매업 및 방문·통신판매업) 총○○개소에 대하여 점검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현지 업소 출입·검사 미이행.

7. 건강진단 미필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식품위생법」 제26조(건강진단)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별표」(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은 100천 원,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200천 원(건강진단 미필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을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012년 3월에 실시한 위생업소 일제점검 과정에서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영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3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적발하였으나, 행정처분(과태료처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각각 100천 원씩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해당 영업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8. 사법기관 처분을 사유로 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

- 경찰 등 타 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법사항을 통보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법원(검찰) 등의 판결(처분)과 관계 없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적발되어 행정조치 의뢰 되었으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0천 원(구 약식) 처분이 확정 되었으나, 행정처분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업주로부터 법원에 제소 중이니 판결 시 까지 기다려 달라는 영업주의 의견만 수렴하여 제출일로부터 1년 경과한 확정판결 이후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9.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제69조(집단급식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의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시설기준을 갖추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보육담당부서, 교육청, 공장관리부서 등에 매년 정기적인 자료협조를 받아 집단급식소 대상시설을 파악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1회 급식인원 ○○○어린이집 등 4개소는 8개월~9년 1개월여 동안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10. 모범음식점 추진업무 및 지정 부적정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우수업소·모범음식점의 지정 등)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는 해당업소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7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관계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또는 매년 6월 재심사 절차 시 위원회에 부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시설조사를 실시하여 (주)○○○○○ 등 2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불법 확장 및 영업장 임의 확장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 요구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

11.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생관리 소홀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 소유·관리자는 실내공기위생관리기준(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보고 및 출입 검사)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총 273개시설(사무용건축물 5, 복합건축물 262개소 등)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요령 안내 및 출입·검사 등을 일체 실시하지 않는 등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위생관리 소홀.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2. 감염병예방 소독의무 미 이행시설 관리 소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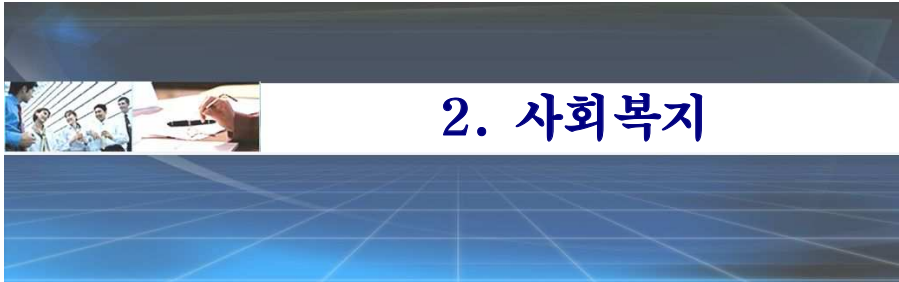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청소·소독과 공동주택·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병원 등 다수인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은 소독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시설의 종류별 소독횟수 준수)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2007년도 210개소, 2008년도 192개소가 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402,000천 원의 과태료 미처분

13. 목욕장업소 수질관리 소홀(○○광역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에 따르면 목욕장 욕조 수는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시 시장·군수는 개선을 명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목욕장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1차 기준부적합 판정업소에 대해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고 1차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유선 통보하여 재 수질검사를 받게 하는 등 관내 목욕장업소 수질관리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3 장 보건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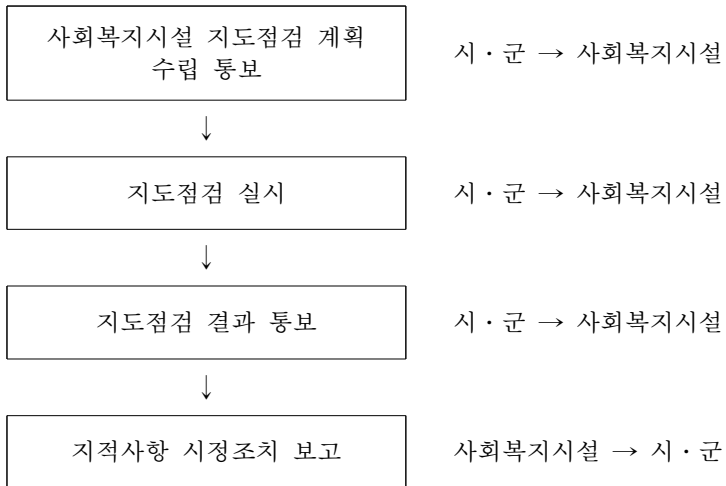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아동복지법 제30조(조사 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문서로 지도하였는지 와 이행결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지도·감독결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사회복지사업개별법령 |
| 예산의 집행 및 관리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법인) ○ 법인 및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법인) ○ 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가 적절한지 여부 ○ 보조사업 완료 및 종료에 따라 시·군에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납 및 회수여부 ○ 세입 및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항목에 맞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였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2. 사회복지

제3장 보건복지환경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 시설운영비 지출시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지와 거래처가 농촌 및 카드미가맹업체일 경우 온라인 입금(5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시설종사자에 대한 임금지급 시 퇴직적립금 계좌적립 여부 및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p>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p> <p>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p> |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실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 수령즉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계좌입금 제외)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단체 및 개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후원금을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였는지 여부 ○ 지정 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한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후원금을 지출할 수 없는 시설장 등 임직원의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후원금 모금 금융계좌를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이 부여된 시설장명으로 하였는지 여부 | <p>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p> |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p>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p> |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대상 선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 시설에 대한 종합보험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매 반기마다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문제 있을시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및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장부의 비치 및 작성관리의 적정성 여부 | <p>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p> <p>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p> <p>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p> <p>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p> <p>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p> |
| 재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및 물품 관련 각종 대장작성 비치 여부 ○ 시설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등 불용처분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기본재산 변동시 절차에 따라 법인정관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p>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p> <p>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4조</p> |

2. 사회복지

제3장 보건복지환경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의 타업무 겸직불가 및 상시근무 준수 여부 ○ 시설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9조)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초과자 제외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자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서류작성 비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 근로시설) ○ 시설의 성격 및 기준에 따른 시설장,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의무고용 인원의 적정 배치 및 배치자 기능별 자격의 적정여부 ○ 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정년제 권고에 따라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 정년 초과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있는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정년 초과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p>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p> <p>근로기준법 제24조, 제40조, 제47조, 제96조</p> <p>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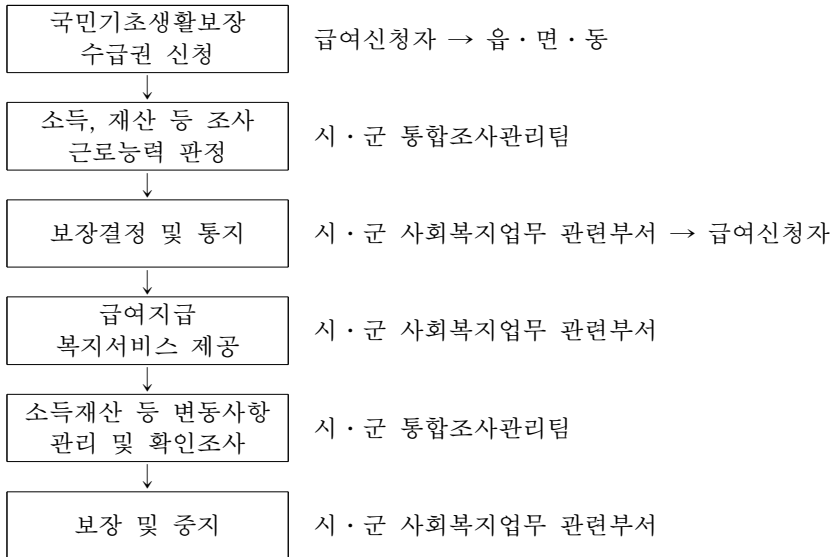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종사자 신규채용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고에 의한 시험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내의 각 시설을 법인대표이사의 가족들이 운영(족벌운영)함에 따른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 호봉인정대상경력(유사경력)이 있는 종사자의 호봉 산정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경력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 시설 종사자들의 정기호봉 승급일을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2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설 종사자 보수책정을 위한 호봉은 최고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p>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p>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실시 | ○ 급여신청 건에 대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즉시 조사하였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 |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14일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 | |
| |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 및 재산상황, 부양능력 등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데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 |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 임의 판정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 | ○ 현역군인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
| | ○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 | ○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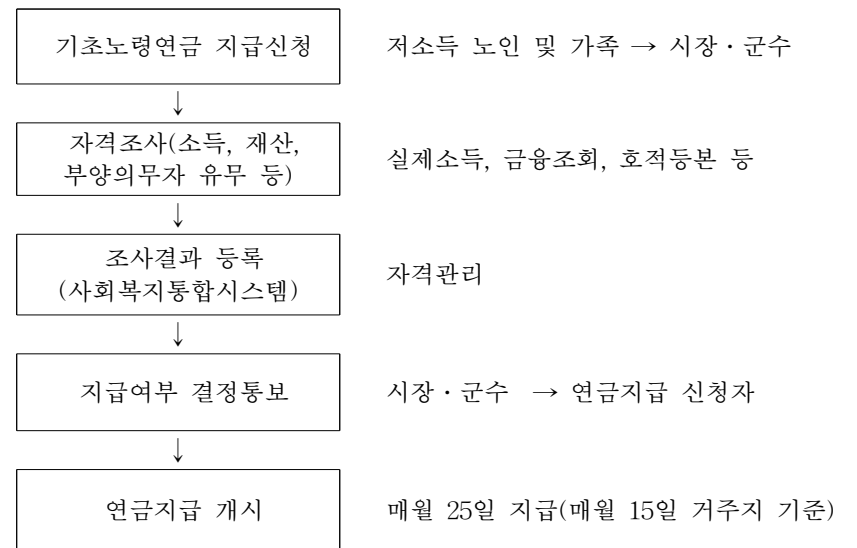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사망하여 급여의 지급요건이 소멸하였는데도 사망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재산소득으로 보아 급여에서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p> |
| 연간조사 및 생활보장위원회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조회결과 조사 및 조치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변동 또는 보장 중지자의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여부 - 재산만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조사 및 반영 여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조사계획 등을 심의하였는지 여부(매년 1월 중) |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제46조</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p> |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계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제5조(연금액), 제8조(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시기)
-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연금의 신청), 제9조(수급자 현황관리)
-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경로연금 지급권자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지급신청에 따라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면밀히 조사 하였는지 여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특별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사유 명기하여 통지) 여부 | <p>기초노령연금법 제6조</p> <p>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p> |
| 경로연금 지급 및 수급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연령기준에 맞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월~3월 : 90,000원(부부 144,000원) - 2011년 4월~2012.3월 : 91,200원 (부부 145,900원) ※ 부부감액 : (노인단독 연금지급액×80%)×2 ○ 연령 도래자 및 신규선정 등으로 수급권자임에도 장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누락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전임자에 대한 연금을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p>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p> |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경로연금 지급 및 수급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자료는 해당 전임지에 경로연금수급사항을 누락 없이 통보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자임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 발생 ○ 사망자임에도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출국신고로 인하여 말소되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p>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p> |

사회복지 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소홀
2.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관리 소홀
3.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사후관리 소홀
4.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소홀
6.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7. 자립준비적립금 미적립 등 부적정(○○도)
8.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료 부당 수령(○○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후원금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는 직원회식비
등으로 1,175천 원을 부적정 하게 집행하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된 생활관 2개소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정관변경 인가 신청 및 재산취득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소홀.

2.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관리 소홀

-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은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를 통보하여 소정기일 내에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시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를 안내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재진단 안내를 하여 장애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지급 비대상자에게 240천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3.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사후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매 반기별로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여 신청 당시 목적대로 생업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여생업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및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전출, 폐업 등으로 융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시정요구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융자금 사후관리 소홀.

4.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고, 경쟁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0000재단이 사업공고에서 입찰금액의 10%와 15%를 후원금으로 내는 업체를 '적격심사 및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부당한 조건을 붙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였고, 시공업체로부터 부당 징구한 90,000천원을 법인의 종사원 급여 및 제세공과금,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지도·감독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소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
- ○○시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최근 5년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총 16,328천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결과 초래.

6.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의 6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3개월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으로부터 예산, 결산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을 제출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하지 않는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7. 자립준비적립금 미적립 등 부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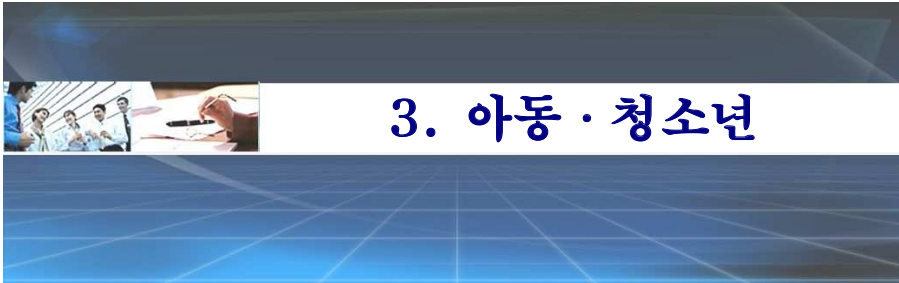
-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인 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금 중 일부는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창업 시 초기자금, 사업종료(퇴직) 후 자립준비 등 자활의 목적에 활용하도록 규정.
- 자활근로사업을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면서 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매월 수익금관리·운용사항을 보고받고 있음에도 사업단의 수익금적립 잔액을 자활기금으로 세입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재활용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자립준비적립금 26,357천 원을 적립하지 않은 결과 동 사업단에 참여하였다가 퇴직한 ○○○외 20명에 대한 자립준비적립금 14,770천 원 미지급 하는 등 관리 소홀.

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료 부당수령(○○도)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원이 서비스 인정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시 0000센터(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활동보조원 4명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 000등 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여 모두 2,160천원의 이용료를 부당 수령하였으나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3 장 보건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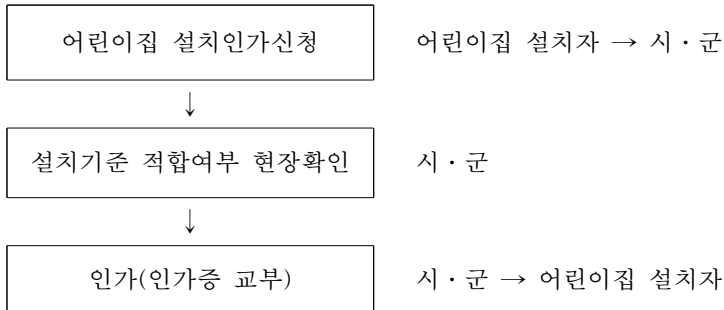


어린이집 시설 인가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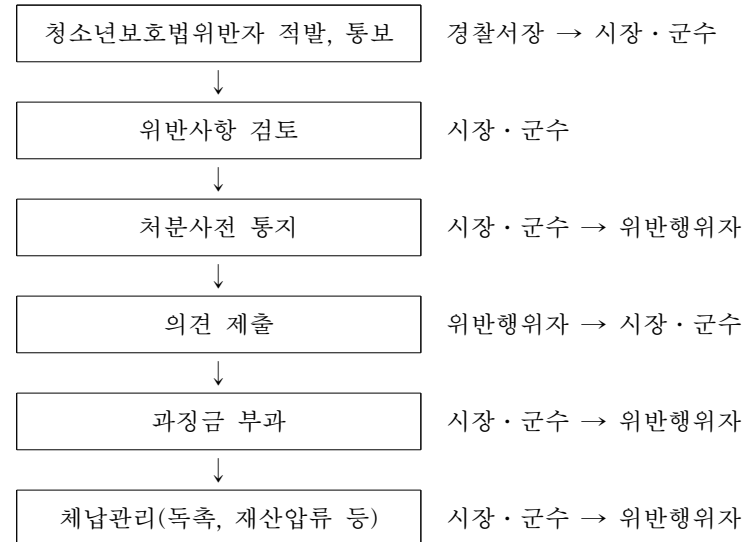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은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으로 하였는지 여부 ○ 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 시설별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법인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
|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이 1인당 4.29㎡ 이상 확보되었는지 여부 ○ 보육실이 바닥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위치는 1층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욕욕실은 난방이 되어있고, 바닥은 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으며, 온수장치는 화상방지용으로 온도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 되었거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가 장착되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제44조(신고), 제49조(과징금)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업무처리절차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수는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명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명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명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의 영아 15인당 1명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소지자 · 취학아동 20인당 1명 · 장애아 3인당 1명으로 하되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 1명 -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 1명 -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 1명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 |
|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의한 장부비치 여부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시설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경우 9인승 이상 자동차이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 보육료지급의 적정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별 소득조사의 적정여부 ○ 농어민자녀 보육료 등 타 기관의 보육료 지급과 중복지급 여부 |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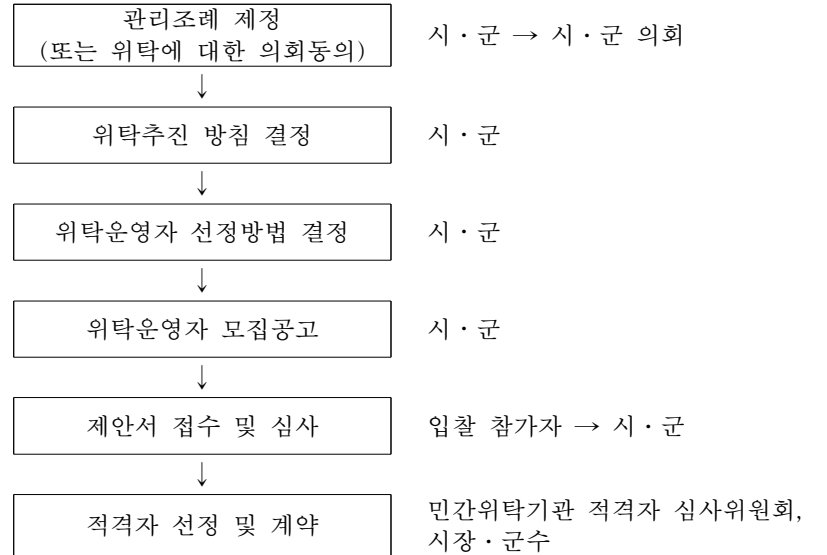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주류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부과처분 전 위반자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주류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법」 매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 ○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조치 할 때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분할 납부 간격은 3월, 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각 시·군별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과징금 감경기준” 내용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감경대상 과징금을 객관성 있게 심사한 후 감경하였는지 여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시·군 자체 감경 기준 |
| 과징금 체납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였는지 여부 ○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23조 |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대 주민홍보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지 여부 ○ 신고포상금을 세출예산에 확보하였는지 여부 | 청소년보호법 제44조 |

청소년관련 시설 민간위탁의 적정여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업무처리 절차



 **아동·청소년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소홀
2.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 청구
3.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4. 청소년 업무처리 부적정
5.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부적정 (타 기관)
6.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의 목적 외 사용 (타 기관)

세부 착안 사항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지 여부 - 관련 조례에 위탁근거 규정 또는 의회의 동의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의 적정 여부 - 참가자 자격을 청소년단체로 했는지 여부 - 공고내용의 적정 여부 | 민간위탁조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 청소년시설의 민간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안서 접수 전에 확정했는지 여부 ○ 객관적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평가를 했는지 여부 ○ 불확실한 제안내용을 보완 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했는지 여부 ○ 평가결과 점수집계 및 위탁운영자 결정의 적정 여부 ○ 협약체결의 적정 여부 |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자부 예규) |
|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절차 이행 여부 ○ 위탁사업비 교부 및 정산절차 이행 여부 ○ 법령에 의한 자격자 채용 및 시설기준에 의한 적정 여부 | 보조금관리법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소홀

-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비용 및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하나의 위반행위에 다수의 처분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보조금 허위청구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고발처분을 실시해야 함에도 6개소에 대하여 시설장의 자격정지만을 처분하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정지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2. 장기간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당 청구

-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계속하여 재원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월별 출석일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 000어린이집에서는 2010. 6. 25.~ 9. 9.까지 76일간 해외에 체류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업00의 7~8월분 차등 보육료 229,2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3.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규정되어 있음.
- ○○시 0000과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로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조치(50만원) 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

4. 청소년 업무 처리 부적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획과 일치하게 공사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시 주차장을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야영장 부지에 수영장을 설치하였는데도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징금 2,000천 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최대 1년 8월이 지났는데도, 독촉장도 발부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소년 업무 소홀.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5.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부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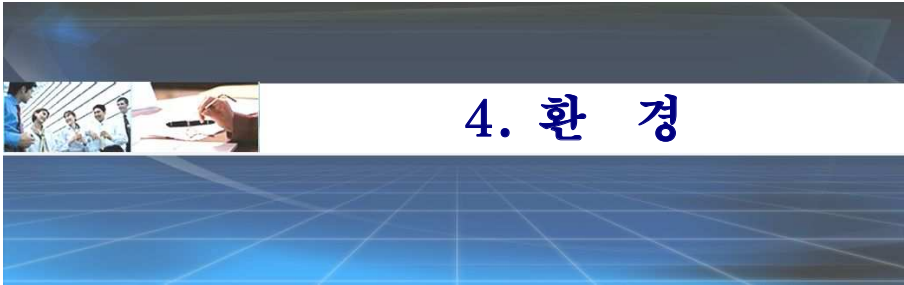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규정.
- ○○시에서는 시설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

6.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의 목적 외 사용(○○광역시)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잉여금은 종사자의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상향지급, 교재 구입, 시설환경개선 등 교육운영 직접경비에 사용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잉여금을 교육운영 직접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대출금의 원금상환에 부담(목적 외) 사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등 지도·감독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3 장 보건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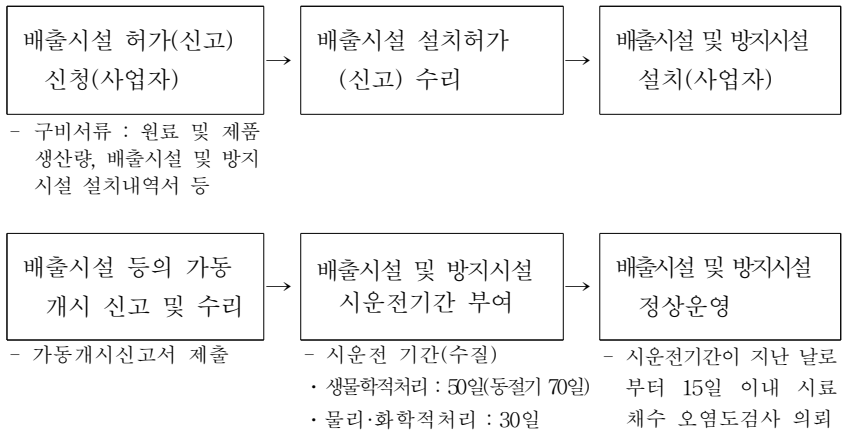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허가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내지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35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내지 제38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내지 제48조

업무처리 절차



취약요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허가제한 사항 검토 소홀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법정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건축물 대장 등)
- 방지지설 용량이 부족한데도 보완 없이 그대로 허가(신고)수리
-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

감사 착안 사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사업장 허가(신고) 여부
-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 요구 여부
- 배출시설설치허가 사업장의 방지지설 용량의 적정 여부
-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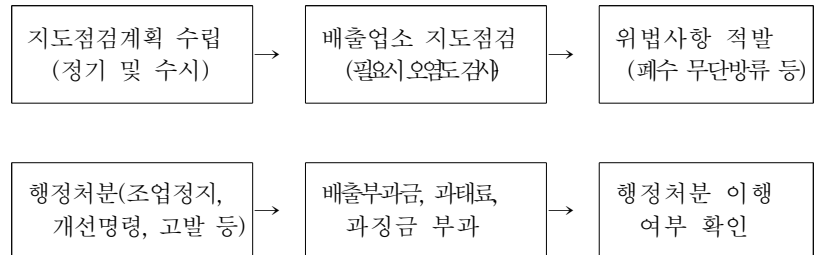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허가(신고) 하였는지 여부 - 제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4호)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환경유역환경청고시제2008-5호)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중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0-18호)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내지 제8항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7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36조,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내지 제50조, 제51조, 제131조, 제134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6조, 제58조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60조, 제61조, 제61조, 제65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업무처리 절차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지12호 서식 참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도 허가(신고)하였는지 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했는지 여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가동개시신고 후 시운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점검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법에 저촉되는 데도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신고)수리 했는지 여부 | <p>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6조</p> <p>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p> <p>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p> <p>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7조</p> |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참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도 보완 없이 그대로 허가(수리) 하였는지 여부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서 상에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이 잘못되었는데도 보완 없이 그대로 허가(신고) 수리했는지 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했는지 여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법에 저촉되는 데도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p> <p>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p> <p>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p> |

취 약 요 인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
-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규정보다 감경처리
-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부적합한데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 배출부과금 산정계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과다 부과
-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감사 착안 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여부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 여부
-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 적정 지정 여부
- 배출부과금 산정계수 적용 적정 여부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적정 여부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배출업소 지도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규정에 의하여 관리등급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지도점검에 따른 지도점검기록부, 행정처분 대장, 개인별 일일업무일지, 확인서관리대장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채취한 시료를 비밀번호 부여하여 오염도 검사 기관에 의뢰하였는지 여부 ○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 위반업소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횟수 별, 오염물질 초과율별로 적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 ○ 청문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폐쇄명령, 허가취소)을 하면서 적정하게 청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점검 : 확인일로 부터 2일 이내 - 타 기관 이첩 :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수사기관 합동점검 : 확인일로 부터 5일내 ○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정지 1개월 : 2회 이상 - 조업정지 1~6개월 : 3회 이상 - 조업정지 6개월 이상 : 4회 이상 -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8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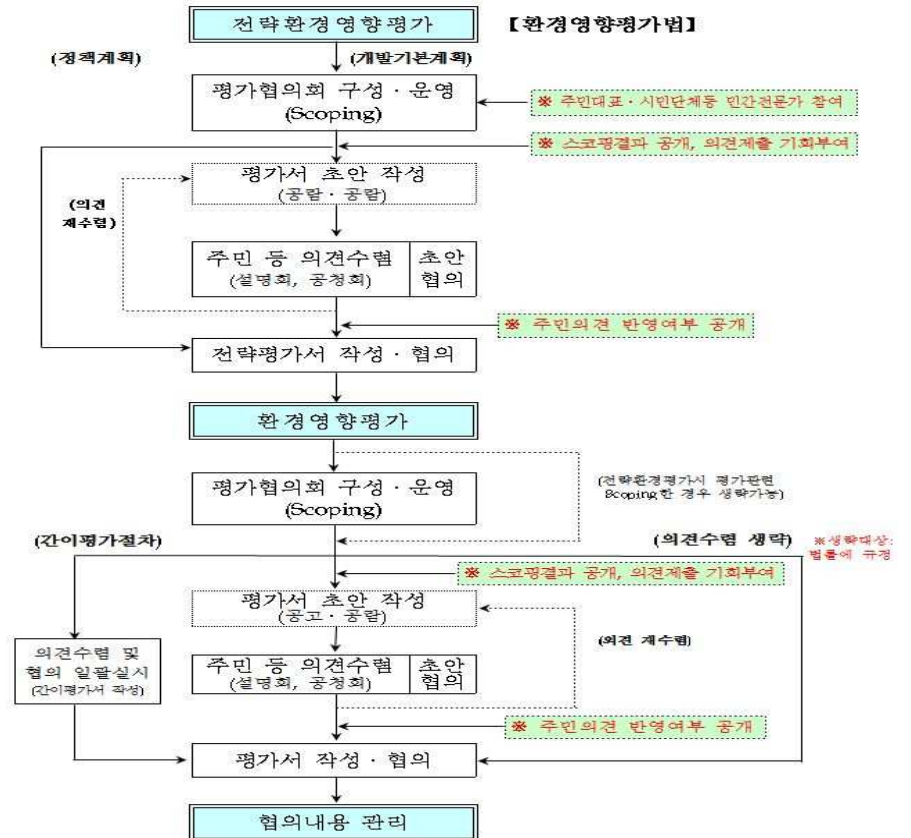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 : 사업장 관리등급이 청색인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대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부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율별, 초과횟수별을 적정한 계수를 사용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지 여부 ○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상의 조업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는지 여부 ○ 체납자에 대하여 증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
| 과징금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처분대상이 아닌데도 조업정지에 같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처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발전시설, 초·중·고등학교 배출시설 · 제조업,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 조업중지시 폭발·화재위험성이 있는 배출시설 등 ○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여부 ○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

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52조

업무처리 절차



유독물영업자 등록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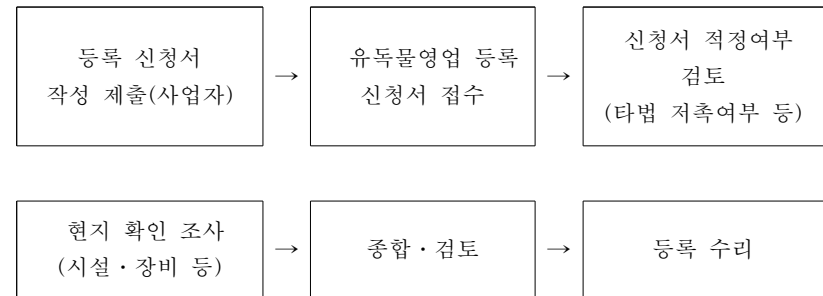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별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 제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시개발 관련 계획 등 17개분야 - 환경영향평가 : 도시의 개발사업 등 17개분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각 개발사업, 관련계획 등이 적정한 시기에 협의를 이행했는지 여부 ○ 재협의 대상 규모인데도 재협의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및 행정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개발행위허가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는지 여부 ○ 환경성검토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 기관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 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개발을 하였는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내지 52조 |

관계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52조, 제63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업무처리 절차



환경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입지제한지역 내 배출시설 수리 부적정
2. 주민지원사업비/주민지원기금 집행 부적정
3. 하수도사용료 부과 부적정
4.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5.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미실시
6.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7. 토양오염검사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8.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소홀
9.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관리소홀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미부과
11.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내용 미이행(타 기관)
12. 소각재 처리 및 보관기준 미준수(타 기관)
13.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처분 부적정(타 기관)
14. 환경기본계획 미수립(타 기관)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유독물영업자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데도 보완 없이 등록 수리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첨부서류 ○ 취급시설기준에 부적합한데도 등록 수리하였는지 여부 ○ 신청 사업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 ○ 건축법에 저촉되는데도 등록 수리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건축법)의 용도분류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재(판매업 해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유독물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 유독물관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유독물관리자로 선임 수리하였는지 여부 ○ 유독물관리자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 제63조 |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관리 등급에 따라 지도점검 횟수 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과징금 처분대상이 아닌데도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했는지 여부 ○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정지 1개월 : 2회 이상 - 조업정지 1~6개월 : 3회 이상 - 조업정지 6개월 이상 : 4회 이상 -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입지제한지역 내 배출시설 수리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규정에 따라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할 수 없음에도,

○○시에서는 ○○면 ○○리 소재 ○○○○에서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등)을 배출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실무종합심의를 하여 입지 허용하거나, ○○면 ○○리 소재 (주)○○○○의 경우 전량위탁처리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착각하여 입지 허용.

-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1호, 2005.2.2.)」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제3조(제한대상시설) 규정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내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에서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인 ○○면 ○○리 소재 ○○○○에서 제출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시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폐놀을 전량위탁처리 함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팔당호 상류로 유입되는 ○○천 수계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입지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

2. 주민지원사업비/주민지원기금 집행 부적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일반지원사업 중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할 때에는 읍·면에서 직접 구매하여 일반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배부하여야 하는데도,

○○군 ○○면사무소에서는 '07년 보행관리기, 비료살포기 구입 등 10건(구입금액 139,786천 원), '08년 트랙터 등 6건(구입금액 68,074천 원)에 대한 보조금을 마을회에 교부하여 마을회에서 직접 구입토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소득증대 사업 등이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경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산충당금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시에서는 2012년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여행 시 동행한 공무원과 시의원 각 2명에 대한 국외여비 916만 원을 시 및 시의회의 국외여비가 아닌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함.

3. 하수도사용료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 및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시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1,208개소에 대해 감사기간 중 약 60,061천원(추정)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하수도법」 제16조(사용료 등)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이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시에서는 2012. 6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 공고를 하였음에도 하수배출시설 132개소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약 152백만 원 미부과.

4.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건축인허가 시 「수도법」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착공 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에서는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수도법」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 없이 건축인허가를 해 주고 있어 7건 301백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착공 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에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협의 의견을 누락하고, 건축물의 면적 등을 따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대상여부 결정하는 등 관련조례를 소홀히 하여 13개소, 104백만 원을 부과 누락.

- 「수도법」 제71조,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에서는 건축인허가 부서의 실무종합심의 요청 시 상수도부서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의 건축물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임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4건 129백만원을 미부과.

- 「하수도법」 제61조, 「○○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수(납부)는 건축 준공허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런데도, ○○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납부시기의 단위단가가 아닌 건축허가 당시의 단위단가를 잘 못 적용하여 ○○면 ○○리 소재 ○○공단 등 3건에 대하여 117,848천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다 부과.

- 「하수도법」 제61조, 「○○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오수발생량에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2007. 9. 28. 개정·시행된 「하수도법」에 2008. 10. 13. ○○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원인자부담금 제도에 맞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여 공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례 개정 이후에도 발생 예정인 오수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구 조례에 따라 고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결정금액으로 부과.

5.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미실시

-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771호, '07. 12. 26.)」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가동개시 공고일로부터 매 5년 마다 악취를 포함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위하여 기술진단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기술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등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만 예산에 계상(60,000천 원)하고, 악취기술진단비용(29,363천 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기술진단 미실시.

6.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과징금 처분)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조업정지)을 하였을 경우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 발전소, 학교, 집단에너지 시설, 제조업에 한하여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시에서는 비금속광물광업으로 신고를 득하여 조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는 ○○시 ○○면 ○○리 201 소재 (주)○○○○의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3조(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위법사항이 통보 됐을 경우 2 ~ 5일 내에 행정처분(청문절차 기간 등 제외)하여야 하나,

○○시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무허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11. 12. 28.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12. 1. 12.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주었으므로 동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중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2. 2. 27. 위반업소에 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를 수리 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928호('10.12.17))」 제1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의 경우 최소 2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에서는 '10. 9. 9. ○○다이케이팅에 대한 점검 시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을 적발하고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사용중지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동 업체가 '11. 8. 12. 공공수역에 유류유출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지적 없이 유류유출 건으로만 고발조치하는 등 무허가 배출시설 162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분이후 이행여부를 미확인.

7. 토양오염검사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미부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토양오염 검사 주기 등) 및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로 바뀌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와 탱크 누출여부 검사를 기한¹⁾ 내에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 토양오염검사,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설치 후 15년이 지난

받아야 하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관내 ○○면 ○○리 237-3 소재 ○○주유소 등 5개 사업장에서 누출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면 ○○리 441 소재 ○○○○ 등 7개 사업장에서는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소홀.

8.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소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운수장비 정비 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예측서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시 ○○면 ○○리 235외 5필지 소재 ○○공업사 외 8개소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없이 시설을 사용 중 인데도 미조치.

9.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관리소홀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규정에 따라 최초 검사는 소각시설 사용 개시일로 부터 3년 , 2회 이후부터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매 3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때에는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은 '08. 6. 30.까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제65조에 규정에 따라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하여야 하는 데도,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구 ○○동 61-4번지 소재 ○○○○ 등 4개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소홀.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미부과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층 바닥의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중 제조업 등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산출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업이 아닌 세탁업 등으로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동 소재 ○○○○ 등 3개소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약 1,580만원을 미부과.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1.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내용 미이행 (○○광역시)

- 「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농·어촌지역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 또는 변경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군에서는 관내 62m³/일 × 1 규모의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였으나, '10. 1 ~ '10. 6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46m³×1과 12m³/일×1로 분리하여 처리용량을 58m³/일로 변경하면서 ○○지방환경청장과 변경 미협의.

12. 소각재 처리 및 보관기준 미준수(○○광역시)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 등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으로 발생하는 소각재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성분 분석결과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의 20톤/일 용량의 생활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일평균 138kg)에 대하여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을 하지 않은 채 관내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매립.

13.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처분 부적정 (○○광역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정지가 그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처분할 수 있는데도,
- ○○○에서는 관내 ○○동 ○○주공 상가내 ○○○호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인 (주)△△△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시 이용자 등에 심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인 없이 막연하게 동 업체의 영업정지시 폐목재 위탁계약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여 영업정지 1월을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

14. 환경기본계획 미수립 (○○광역시)

- 「○○구 환경 기본 조례」 등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 예측, 단계별 환경 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등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구 환경 기본 조례」가 공포된 0000. 00. 00. 부터 현재까지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구 환경기본계획” 미수립.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4 장 지역경제·교통



1. 지역경제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관리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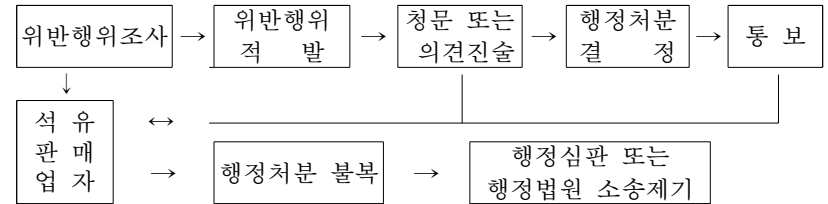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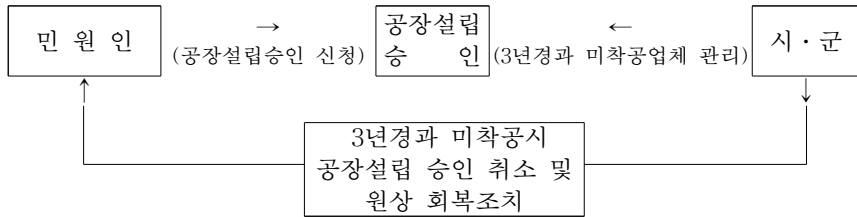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5, 제14조의4, 제51조의2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관계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8조, 제4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5조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세부 착안 사항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공장설립 승인업체의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승인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 현황실태 파악(분석) ○ 공장설립 승인 후 3년이 경과한 해당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토지의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이행 하였는지 ○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절차 이행 등 행정처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5, 제14조의4,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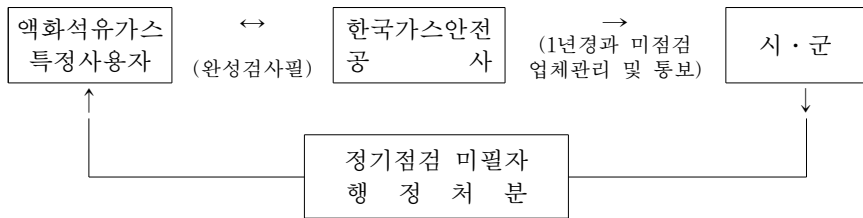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판매업소가 월별 거래상황 기록부를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여부 ○ 가짜석유를 보관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임의 경감한 행정행위가 있는지 여부 ○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노점이나 첨가물판매업자가 세녹스, 엘피파워 등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실태 및 적발에 따른 고발 등 이행여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8조,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5조 |

LPG 특정가스사용자 정기검사

관계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제27조, 제38조, 제5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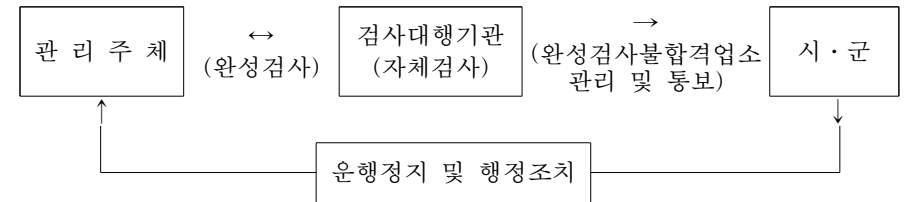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특정가스사업자 정기검사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검사를 미필 특정가스사업자 통보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실태 정기검사 미필 특정가스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과태료 처분 실태 과태료의 경감처분 적정 여부 | 법 제14조, 제27조 제38조, 제52조 |

승강기 관리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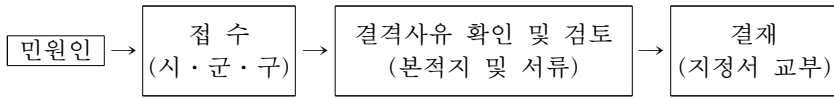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승강기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에 대한 검사촉구 및 운영정지 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실태 운영정지 승강기에 대한 관리실태 및 불법 운영 승강기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 계 법 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7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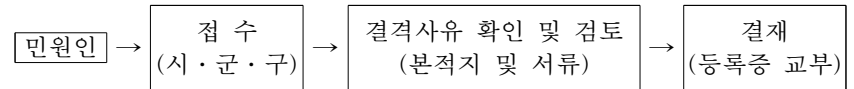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소매인 지정 시 한정치산자,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후 일정기간 경과여부 등의 결격사유를 본적지에 조회하였는지 여부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와 폐업신고서 접수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공고 이행 여부 ○ 미성년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담배소매인에게 담배사업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 통보 시 행정처분 실시 여부와 처분의 적정성 여부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의2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관 계 법 령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7조, 제4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6조, 제34조의2, 제38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제26조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 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직업소개소 등록 및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소 대표자와 상담원의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개인 및 법인별 시설 기준은 적합한지 여부 ○ 명의대여 및 선불금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고발하였는지 여부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은 적절한지 여부 ○ 보증보험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재가입 실태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실태와 적발 시 폐쇄조치 및 고발이행 여부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1조, 제39조 시행령 제21조, 제25조, 34조의2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제25조 |

지역경제 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
2.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소홀
3. 공장설립승인 등 사후관리 소홀
4.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5.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소홀
6.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사후관리 소홀
7.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소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가짜 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는 매월 15일까지 거래상황 기록부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지역경제과)는 ○○주유소의 위반행위가 2건이고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 5백만 원으로서,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고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는데도, 가중처분 없이 무거운 부과기준인 1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였고, 가중이 어렵다면 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법적근거도 없이 최근 1년 이내에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2천5백만 원을 처분함으로써 ○○주유소에 특혜를 주는 등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고, 또한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거래상황 기록부를 미 보고한 주유소 20개소 및 일반판매소 29개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사후관리 소홀.

2.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소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제52조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시

부적합으로 판명된 시설은 시설개선 후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시설개선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매분기별로 거래상황 기록부를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지역경제과)는 저장능력 25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15개소가 정기검사 부적합시설이고, 46개소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부과 등 시정조치 하지 아니하였고, LPG 거래상황 보고를 미 이행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 2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스안전관리 소홀.

3. 공장설립승인 등 사후관리 소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기업지원과)는 (주)○○○○에 ○○○○. ○. ○. 설립승인을 하였고,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아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주)○○○○ 등 25개소의 설립승인 취소를 하지 않는 등 공장설립의 사후관리 소홀.

4.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및 제18조(운행정지 명령 등)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1년)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려면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산업환경과)는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된 1개소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계속 불법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소홀

5.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소홀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서 미성년자 등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90일 이상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와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지역경제과)는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등 1명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90일 이상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28명 및 사망자 17명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미이행 하는 등 사후관리 소홀.

6.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사후관리 소홀

-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서 보조사업자는 당초 승인받은 내용 중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은 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 적정수행여부를 감독하여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지역경제과)는 '00년 ○○시장 홍보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시장 ○○○에 보조금을 교부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당초 승인받은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였어야 하나,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을 시장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시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결과를 보고받아 검토 할 때 위 사항을 지적하였어야 하나, 정산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7.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소홀

-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위탁협약」 제15조(지도감독)에 따라 ○○시는 근로자복지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근로자복지관이 ○○지방노동청(○○지청)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노사공동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의 위탁사무와 관련 없는

직업훈련교육 실시에 따른 수강료 ○백만 원을 복지관회계에 포함시키는 한편, 위탁사업비로 강사수당 ○○백만 원을 부당 지출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시립도서관 보조금, 보육시설 보조금, 보육료 수입 등 합계 ○○○백만 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채 무단 사용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원 ○○명을 채용한 결과, 인건비 ○○○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00 ~ '00년까지 총 9차례 외부인에게 당직근무를 시키는 한편,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여부에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는데도 ○○시는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4 장 지역경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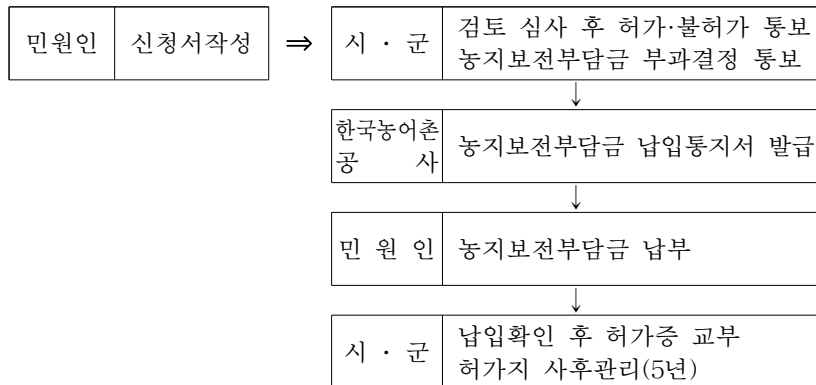
2. 농·림·축·수산

농지전용 허가 등

관계 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내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보전 부담금, 용도변경 승인, 원상회복 등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내지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신고범위, 복구계획·비용산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내지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등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10호, 2012. 7. 18.)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전용허가(신고) 대상 농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시·도지사 허가사항을 시장·군수가 허가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비농민이 농가주택, 축사 등의 신축을 목적으로 전용신고한 것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데도 농지원부를 작성해 주었는지 여부(쌀 직불금 수령여부)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 등을 영위하는 세대인지 -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으로 5년간 합산한 면적이 1세대당 660㎡을 초과하는지 - 농가주택 면적에 진입도로 면적 합산여부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허가제한사항을 무시한 허가나 신고처리한 후 허가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신고를 합산한 면적이 신고전용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34조, 제36조, 제37조 ● 농지법시행령 제44조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 대상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목적사업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 ○ 기간을 초과하여 타용도 사용허가 연장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 산정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36조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원상회복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2년 이상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 농지의 전용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 용도변경 한 것은 없는지 여부(특히 축사, 창고, 농수산물가공시설 등의 무단용도변경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 건축 후 비농업인이 거주하는지 ○ 농지전용허가(신고)와 관련된 별도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 허가·신고면적 초과전용 등 불법전용 사례는 없는지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타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사무실 창고 사용 ○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발, 대집행 조치 미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41조, 제4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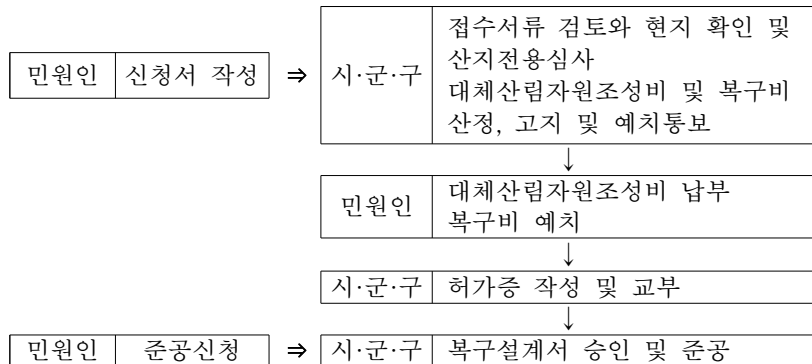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농지전용시 사실상의 농지, 농지개량시설 등을 누락시킨 것은 없는지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농지전용 허가증을 교부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전용이 완료된 후 5년이내에 용도변경 승인으로 당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이 부과대상으로 전환 되었음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 하였는지 여부 ○ 도시계획 입안 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건으로 협의되어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고시단가와 공시지가의 기준시점 적용이 부당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하였는지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이 적정한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38조 |

산지전용 허가·협의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산지전용허가) 내지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 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지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별표3, 별표4, 별표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내지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9-153호, '09.12.29.)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전용허가·협의 (신고) 대상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을 신고로 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시·도지사 허가사항을 시장·군수가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천연기념물 또는 노거수가 자생하는 산림인데도 전용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농가주택 건축목적으로 전용허가를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목적, 면적이 제한되는 용도로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을 위배하여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현지지형, 주변여건상 신청목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관계부서와 협의할 사항을 협의하지 않거나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면적보다 과다하게 허가 한 것은 없는지 여부 ○ 허가받은 후 장기간 사업 미착수,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훼손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위해방지시설 등 허가부대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4조, 제18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황 | 관계법규 |
|---------------------|--|--|
| 전용허가·협의 (신고) 대상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등을 납부 또는 예치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장기납부하지 않은 허가 대상지 취소 여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적정한지 여부 ○ 농가주택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별장, 고급주택 등으로 건축하고 있는데도 방치한 것은 없는지 여부 ○ 광물 채광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광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 산지전용심사에 따른 현지조사시 산지전용지역이 육안으로 해당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상 여부 판단이 가능한데도 확인조사 없이 입목축적보고서만 믿고 처리하였는지 여부 ○ 국고보조 산림사업 대상지를 5년 이내에 산지전용하면서 보조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 보전산지이며, 주택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 사슴사육장, 양어장, 버섯재배사, 관상수재배 시설 등 목적달성이 어려운데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계곡부분, 경사지내 등 무분별하게 허가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만 받고 사실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농업용시설 관리사를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 임업인만 가능한 시설을 농업인에게 허가하였는지 ○ 산지전용허가지내 5만㎡ 이상 골재를 채취하면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9조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황 | 관계법규 |
|------------------|---|--|
| 복구설계서 승인 및 준공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고, 허가기간 및 복구예치금 예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지 여부 ○ 산지전용기간이 1년이상이면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였는지 여부 ○ 산지전용기간 중 복구설계승인 조건에 맞지 않게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복구설계서가 신청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치하지 않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설계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승인 후 준공하였는지 여부 ○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훼손하거나 사업신청 내용과 다르게 전용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 |

농·림·축·수산분야 주요 지적사례

1. 소매점부지 조성 목적 농지전용협의 부당 처리
2. 처분의무부과 농지 등에 대한 농지전용 부적정
3.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적정
5. 불법 농지이용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
6. 입목벌채허가지 사후관리 등 태만
7. 단독주택부지 조성 목적 산지전용 등 부적정
8.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등 태만
9.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부당 처리
10.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등 부적정
1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12. 어업지도선 승선인원 초과 항해 등 안전관리 소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소매점부지 조성 목적 농지전용협의 부당 처리

- 「농지법」상 용도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1,000㎡ 미만까지만 가능.
- 그런데도, ○○시에서는 용도구역 행위제한 면적을 800㎡ 초과하여 소매점부지 조성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전용협의를 부당하게 처리 해줌으로써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

2. 처분의무부과 농지 등에 대한 농지전용 부적정

- 「농지법」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제대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통지(1년) 및 농지처분명령을 유예(3년)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그 처분 기간 동안 농지전용을 할 수 없음.
- 그런데도, ○○시에서는 농지처분의무통지된 농지 2필지 1,181㎡를 소매점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되도록 농지전용협의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3.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부적정

- 「농지법」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기 소유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처분의무기간 중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명령 조치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2필지 약1,035㎡에 대하여 농업경영으로 잘못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적정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그 감면비율 등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시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된 농지보전부담금 24,719천 원 전액을 부과 결정토록 하여야 하나, 부적정하게 100%를 감면.

5. 불법 농지이용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

-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불법 용도변경행위 등 위법 사실이 없도록 수시점검 등 더욱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버섯재배사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수년 전부터 물류창고 등 타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25건)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 만연.

6. 입목벌채허가지 사후관리 등 태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아베기 목적으로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 형질우량목 등은 존치하고, 고사목 및 생장 불량목 등을 제거 우량 대경재를 생산하여야 하며, 입목벌채허가 신청시 운재로 시설계획이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신고서를 첨부토록 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허가지 외로 소나무류를 반출하는 경우 생산확인표 등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조건이행 등 관련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형질우량목 제거 및 허가수량 외 벌채하여 반출(약○○○㎡) 하였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약○○○m) 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가 반출(약○○○㎡)되는 등 8개소의 허가지에서 불법사항이 계속되는데도 지도·점검 및 고발 등 미조치.

7. 단독주택부지 조성 목적 산지전용 등 부적정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용허가 신청 시 첨부되는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측정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자기소유 산지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청한 단독주택부지 조성 목적 산지전용(1건, 330㎡)을 그대로 처리하였고,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평균경사도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완 없이 그대로 처리.

8.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등 태만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별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시·군·자치구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이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시 신청지와 약70~80m 떨어진 곳에 '07.산지전용허가지(중중묘지 995㎡)와 인접하여 산지가 불법 훼손된 사실(약3,200㎡)이 있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그런데도, ○○시에서는 환산된 입목축적이 약148%에 이르는데도 신청 시 첨부된 입목축적조사서의 8.68%를 그대로 적용하여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는 등 허가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훼손된 산지를 그대로 산지전용허가 처리하는 등 불법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고발 등 사후관리 태만.

9.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부당 처리

- 「산지관리법」 부칙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계속하여 산지를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으로 불법전용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목적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현지확인 시 신청지내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도, 법률 시행일('10. 12월)을 기준으로 5년 동안 계속하여 농지 등으로 이용하지 않은 산지 6필지 약6,759㎡를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신고서를 부당하게 수리하였고,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지 중 일부가 불법 훼손되었으나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전용협의 처리.

10.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등 부적정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복구비 예치대상인 3건 중 2건은 복구비 10,518천 원을 예치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준공되었고, 나머지 1건은 잘못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할 29,870천 원이 아닌 10,103천 원이 예치되도록 하는 등 복구비 차액 1,611천 원을 포함하여 총 21,378천 원 미예치.

1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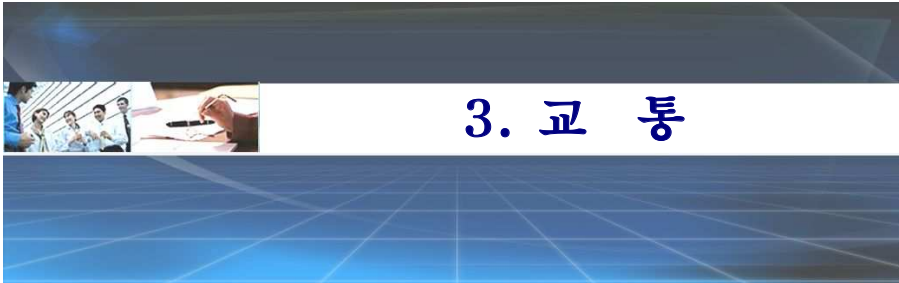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기간 내(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양도·교환, 대여 등을 할 수 없고, 휴·폐업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시에서는 사후관리실태 점검 결과 폐업자(1명) 및 대여 등을 한 사업자(2명)에 대하여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계획 등 미조치.

12. 어업지도선 승선인원 초과 항해 등 안전관리 소홀

- 어업지도선은 「어선법」 및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대 승선인원에 대하여 인명구조 및 재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켜야 하며, ○○시에서 수립한 “2010년 어업지도선 운영 및 관리계획”에도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기준 마련.
-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불우학생들을 위한 해상체험 등 총21회에 걸쳐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해하는 등 스스로 안전관리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4 장 지역경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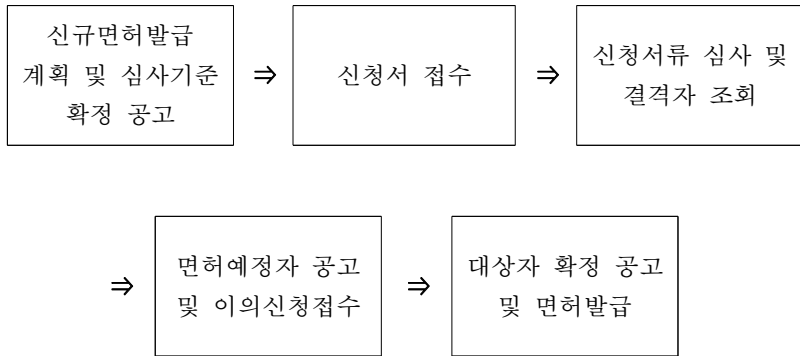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선정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 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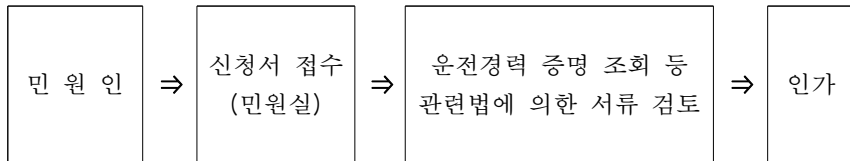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기본자격 적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 - 과거 11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부 -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 -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부 * 기타 지역거주 기간 등 세부 자격기준은 시·군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확인 ○ 표창 등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기준 적용의 적정 여부 ○ 운전경력발급기관의 현지출장 확인(배차일지, 근무일지, 급여대장 등)여부 ○ 운전경력 분야별로 신청사항 및 심사결과 일치 여부 ○ 운전경력, 장애인등급 등의 모든 경력 자료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양도·양수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업 무 처 리 절 차



세 부 착 안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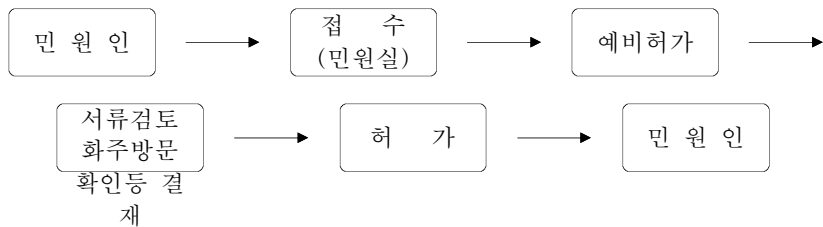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자가 면허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 양도하였는지 여부 ○ 해외이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 ○ 61세 이상인 자인지 여부 ○ 기타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의 적정성 여부 ○ 신청일 기산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소유자인지 여부 ○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지 여부 ○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지 여부 ○ 과거 3년간 운전면허 누산점수 180점 이하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화물자동차 신규(변경)허가 적정여부

관 계 법 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운송사업의 허가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허가신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공급기준의 고시)
- 해당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업무처리절차



세부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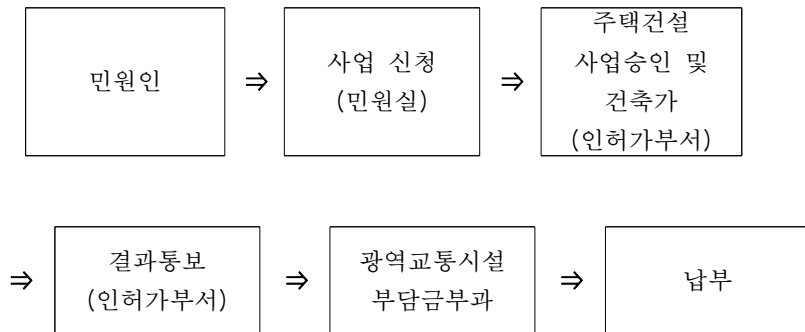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화물자동차 신규(증차) 변경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지 여부 ○ 국토해양부 공급기준(고시)의 적정여부 ○ 예비허가의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의 적정여부 - 공급기준의 적정여부 ○ 물량계약서 및 화주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정허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 차고치 설치 여부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 -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 당해 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허가여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국토해양부고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오)부과

관 계 법 령

-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권한의 위임)

업 무 처 리 절 차



세 부 착 안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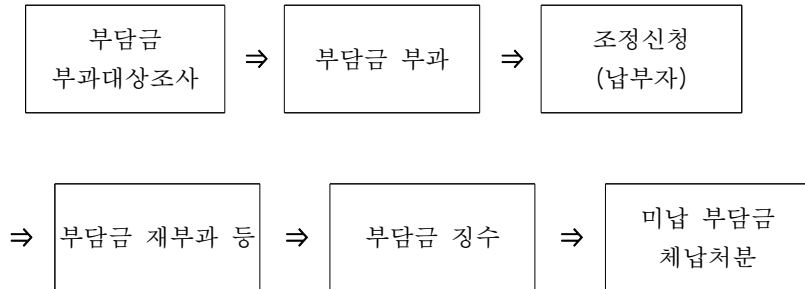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 및 허가가 있었음에도 부과대상 사업의 미인지로 부과에서 누락된 사업 존재 여부 ○ 사업승인 및 허가일로부터 법정기간(60일 이내)에 부과하지 못한 지연부과 여부 ○ 부담금 산정의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이 아닌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과여부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부과여부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과여부 - 세대수 및 세대별 공급면적 등을 감안한 부담금 산정 여부 ○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납부의 대상의 적정여부 - 가산금 산정의 적정여부 | <p>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p> <p>동법 제11조4</p> <p>동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p> <p>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p>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관 계 법 령

-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 면제)

업 무 처 리 절 차



세 부 착 안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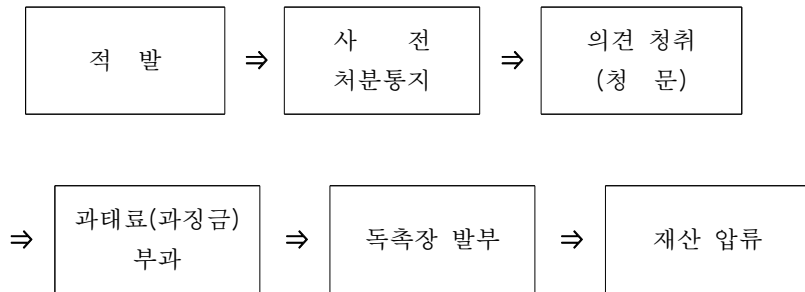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정부과 여부 - 부과대상인 시설물임에도 부당하게 면제 시설물로 인정하여 미부과의 존재여부 ○ 부담금 산정의 기간계산 적정여부 - 매년 7.31.의 기준일로 부과기간 1년내의 시설물에 대한 월, 일단위 계산여부 ○ 부담금 면제시설 적정적용 적정여부 - 시설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 및 차고의 부과여부 ○ 부담금 산정의 적정여부 - 교통유발계수의 적정 적용 여부 - 단위부담금의 적정 적용 여부 ○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적정여부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7조(종사자자격 취소), 제88조(과징금 처분), 제94조(과태료 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운송사업 허가취소), 제21조(과징금 처분), 제23조(종사자격 취소), 제70조(과태료 처분)

업 무 처 리 절 차



세 부 착 안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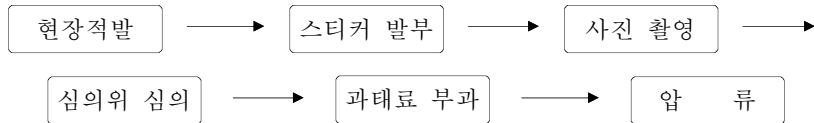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부당요금징수 과태료 부과 | ○ 영업과정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어 과태료(1년이내 동일행위 위반시 과중처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
| 미터기 미사용 과태료 부과 | ○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동일행위 위반시 과중처벌) 부과여부 |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
| 자격정지 미게시 영업 과태료 부과 | ○ 택시자격증을 미 게시하고 영업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5일, 과징금 10만 원 부과)을 하였는지 여부 |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 과징금 감경처분 | ○ 과징금 부과시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처분 여부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 불법주차 행정 처분 | ○ 밤샘주차 행위로 적발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과징금을 정당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 보험가입 여부 |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가 피해보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부당요금 징수 | ○ 부당요금 징수행위로 적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 사업위반자 행정 처분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 |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체납처분 | ○ 과태료 부과 후 납부독촉(독촉장 발부 등), 체납처분 절차 이행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7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제5항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주·정차 방법 및 시간제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주·정차방법 등), 제88조(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절차



세부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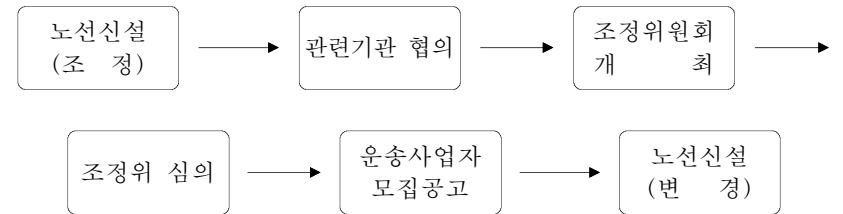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위반차량을 공무수행 사유로 부당하게 과태료를 면제한 사항이 있는지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미 부과한 것은 없는지 여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과태료를 임의로 부당하게 면제 처분한 것은 없는지 여부 재 이의신청 시 관할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판결의뢰를 하여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교통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 확보나 확충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3조,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88조 |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신설 및 조정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의 기준) 제3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업무처리절차



세부착안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신설 및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보조연계수단으로 면허 처분되었는지 여부 ○ 마을버스의 노선이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지정되어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 ○ 현재의 노선에서 필요에 따라 노선단축이나 연장 등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시에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고 있는지 여부 ○ 마을버스의 면허, 노선조정, 증차, 요금신고의 수리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 주민교통불편 민원제기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 실시 및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교통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부시 독촉장 발부 및 기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교통행정분야 주요 지적사례**

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 부적정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3.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부적정
4. 불법 주·정차 위반자의 과태료 면제기준운영 부적정
5.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미이행
6. 자동차대여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7. 부당한 행정응원을 통한 행정처분
8.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미통고 (타 기관)
9.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조치 소홀 (타 기관)
10.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소홀 (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처분 부적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배정분야별 신청자중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의 심사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무사고 운전경력 여부를 판단·확인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운전경력 증명서에 사고내역이 명시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사유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면허처분에 우선하여 심사·선정 하여야 하나,

- ○○시에서는 상기규정의 제4호 나호(“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사고”로 본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행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사건 처분 결과증명서 만으로 ○○○의 운전경력 산정시점을 사고 다음날인 1990. 5. 21. 아닌 최초 운전경력 시작일인 1983. 5. 26.부터 산정하여 26년 7월 16일의 운전경력으로 부당하게 인정하여 면허 처분.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하고,

같은 법 제11조의4 제1항에 의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사업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조체계 미 구축 및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 통보 등 협조문 시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승인·인가 부서에서 허가 통보 된 사업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승인·인가 부서의 전자문서 미 협의, 허가결과 미 통보한 사유로, 부과 담당자의 관련법규 연찬 부족 및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부담금 부과대상 임에도 “의견 없음”으로 오류 제출 등으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 ○○과 등에서 건축 허가한 ○○○ 등 10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184,404천원을 미부과.

3.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부적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하고 있음에도,
- ○○시에서는 화물자동차가 물품 적재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구조변경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자동차”로 판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하였으나, 이는 물품적재장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화물자동차 공급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허가.

4. 불법 주·정차 위반자의 과태료 면제기준 운영 부적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8조, 제141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서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 ○○○○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면제처분 사유 이외에 부득이 한 경우의 면제기준은 단속한 구청별로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을 검토·확정 및 시행하여 각 구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면제처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나,

- 각 구청의 ○○○○과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부득이한 경우의 면제 기준을 유형별로 ○○○청 8개, ○○○청 13개, ○○○청 10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면제처분 여부를 심사하여 면제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시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의 동일한 유형이 단속한 구청에 따라 과태료 면제처분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사실이 있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면제처분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

5.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미이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612호, 2009.07.01.시행)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는 운수업자가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수급자, 실제 주유·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불법(유사) 석유를 구매한 경기○○자 ○○○ ○○○ 등 82명의 운송사업자에게 불법(유사)석유의 인지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없이, 3회 이하의 불법(유사)석유를 구매하였다는 사유로 고의성이 없는 구매로 결정하고 2011.04.21. 경고 처분을 하여 부당 지급된 유가보조금 2,628,565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없이 방치.

운행정지 기간 중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였고, 부정수급자 15명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유가보조금 364,882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고,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환수조치 및 행정상 제재 조치(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6. 자동차대여사업자 지도·점검 소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3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43조, 제47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과징금 부과, 3차 사업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매년 사업자가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록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 (주)○○○렌트카 등 ○○개 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등록기준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운수 등 ○개 대여사업자의 사무실 임대기간이 ○년이 경과하였고, ○○운수 등 ○개 대여사업자는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확인 등 지도·감독 소홀.

7. 부당한 행정응원을 통한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은 법령 등의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및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응원은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특정 행정청의 고유기능만으로 본래의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행정청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 ○○시 ○○○○과는 관내에 등록된 화물운송 사업자중 2011.12.23.부터 2012.09.24.까지 (주)○○○○운송 등 5개 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통행구분 위반 등으로 2012.01.08.부터 2012.10.03까지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면서,

상기의 운송사업자는 ○○시에 등록된 운송사업자이고 차고지 또한 ○○시에 있어 ○○시 ○○○○과는 행정처분의 관할청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응원을 처분대상자에게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유로 ○○시 등 5개 기관에 등록증과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업무에 대하여 행정응원을 부당하게 요청.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8.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미통고(○○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20~30만 원의 범칙금 통고를 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100~150만 원을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에 불응한 18명에게 범칙금 미통고.

9.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조치 소홀(○○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2,757대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검사명령 미이행.

10.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소홀(○○광역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업종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 ○○동 유 마트 가설물 226제곱미터 외 1건은 부과하지 않았고, 실외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는 5.00인데도 1.80, 실내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 1.80인데도 1.20을 적용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1. 도시계획 · 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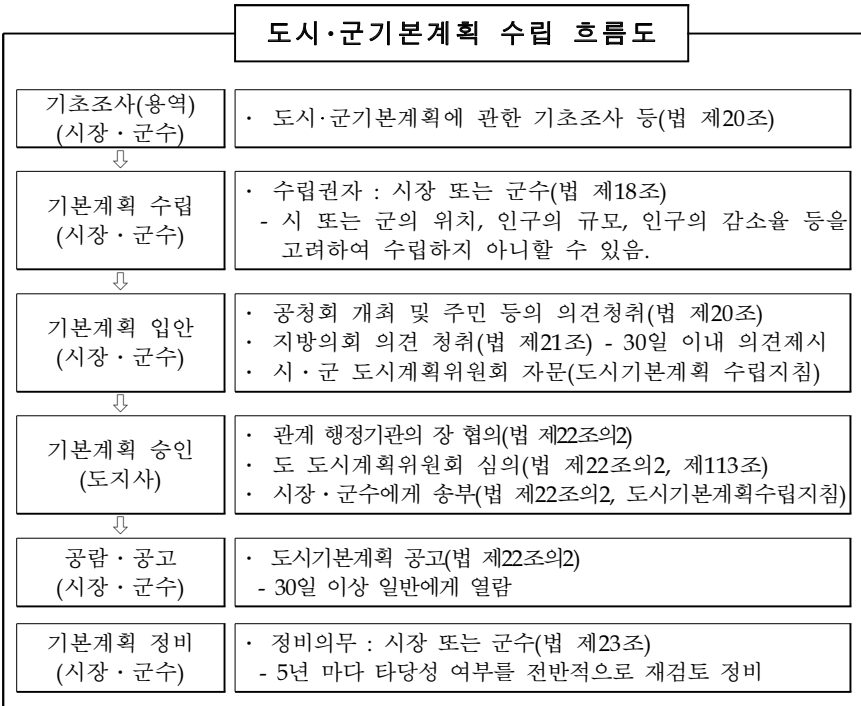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

세부 착안 사항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7조의2
-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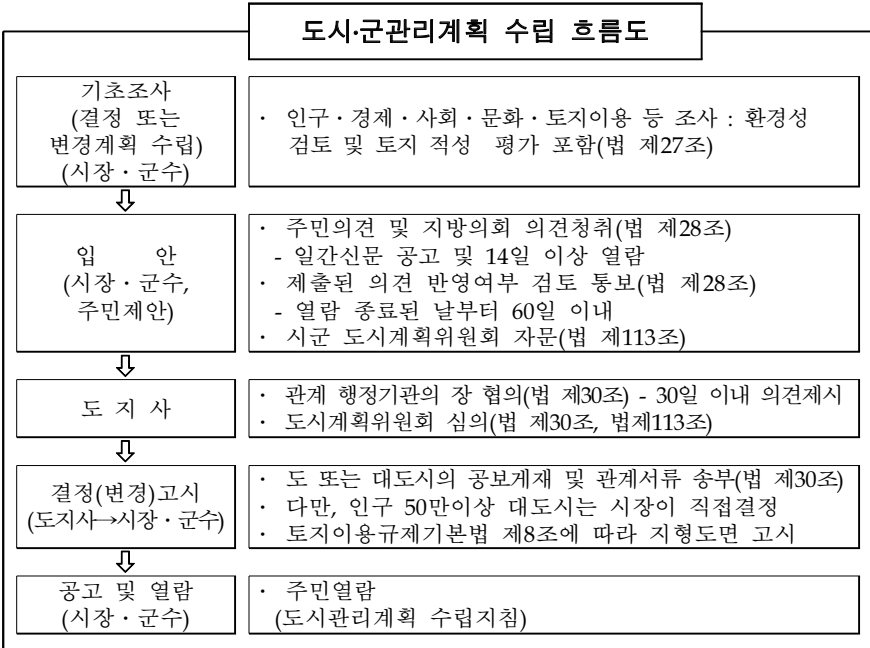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도시기본계획수립> ◦ 상위계획 미부합 ◦ 부풀리기식 인구 산정으로 토지효율성 및 신뢰성 저하 | ◦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기본계획 수립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 수용 및 하위계획수립 고려 여부 ◦ 미래지표 설정의 적정성(과도한 지표설정) - 부문별 내용 누락 및 기초조사 실시여부 -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계획 적정 여부 ◦ 잦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 20년 기준 5년마다 재정비 ◦ 권한남용 행위 ◦ 위임사무를 벗어난 처리 여부 - 승인기관이 혼합된 안건인 경우 상급기관 변경승인 없이 변경 여부 ◦ 무분별한 개발 계획 ◦ 비도시지역의 과도한 개발용지 공급 - 기본계획수립 전까지 과도한 공급이 되지 않도록 시군자체 수급물량 조정 여부 ◦ 용역비 낭비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7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결정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0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 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이 결여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 여건변동이 없는데도 재정비 등 빈번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신력 실추 ○ 여건에 맞지 않는 빈번한 계획변경 ○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입안 ○ 특혜성 도시·군관리계획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18조~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2조~제5조)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의 적정 여부 ○ 특정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 도시개발지표 달성이 곤란한 계획결정 ○ 상위계획과 상이하게 결정 ○ 세분화 할 수 없는 지구를 조례로 세분 - 경관·미관·특정용도 제한지구에 한정 ○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구역 임의조정 - G.B, 시가화조정구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30조~제3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시행 관련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결정 제한시설 결정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시설결정 및 폐지 공익성이 고려 되지 않게 결정 상위계획과 상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35조~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추진하는 사례 (비도시지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종말처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추가 의무시설 비도시지역 공원녹지를 「도시공원법」에 맞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추진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율 미준수 결정 주 간선도로에 주차장 진, 출입구 설치 유원지 최소규모 준수 여부 (1만㎡ 이상) 용도지역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설치 지역여건 고려 없이 시설결정 여부 특정인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각종 개별법령에 맞지 않게 시설결정 사업자 수익성위주의 시설 세부결정 공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설 변경결정 시설녹지를 차도로 이용하는 사례 도시·군기본계획과 상이하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4. 지구단위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과 부합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5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42조의2~제5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사업지구의 방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택지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로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해제지역,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센티브 여부의 적정성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진흥 지구 지정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여부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 건설시 규모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관련법규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후 5년 이내 구역·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실효된 지역을 환원하지 않은 용도지역 일정 규모 미만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여부 관리지역내 소규모 산발적으로 기반시설 계획 없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유형에 맞는 계획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특정, 복합형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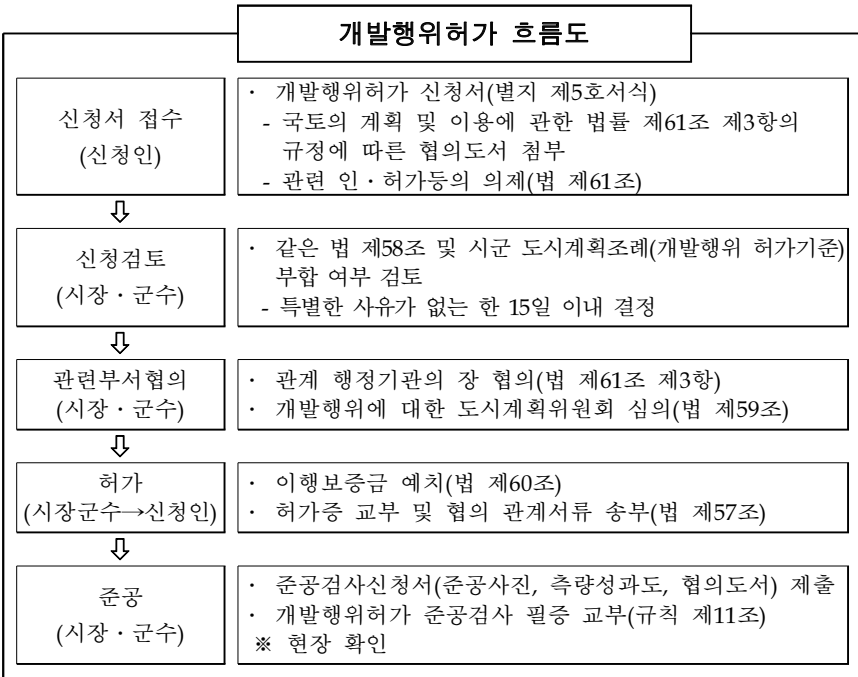
개발행위 허가

세부 착안 사항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1조~제61조
-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업무처리 절차



| 세부 사무 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 규 |
|--|---|---|
| 1. 개발행위허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에 상충되는 행위허가 ○ 기반시설 부족 등 부당한 행위허가 ○ 개발행위제한 규정과 다르게 허가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규정 적정 활용 여부 ○ 법령위반이 없어도 부당한 행위허가 여부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 고려 여부 ○ 도시지역 외 지역내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의 시설물을 허가 없이 처리 - 건축법 신고대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 (골목광고탑, 골프연습장 철탑 등) ○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1조~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조~제11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처리 ○ 형식적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행위허가 ○ 기반시설 부족 및 녹지지역 내 과도한 행위허가 ○ 대규모 개발행위 심의 절차 무시 ○ 도시지역 외 지역내 숙박·음식점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한 허가 여부 - 허가 제한규정 적정 적용 여부 ○ 허가내용과 상이한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행위허가로 처리 ○ 기반시설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 자연녹지지역내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 GB, 시가화조정구역 등 다른 용도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여부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여부 ○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된 도시지역외 지역내에서 숙박 및 음식점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도시계획조례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2.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별 허가 제한시설의 허가 주거지역내 위락 숙박시설 허가 공작물에 대한 행위허가 2개이상 용도 지역내 건축허가 기타 타 법률에 정한 제한규정 적용 여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지역내 행위제한시설 허가 여부 - 아파트,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제한 일반주거지역내 공연장, 관람장 등 소음 발생시설의 허가 여부 - 위락, 숙박시설의 주거지역과 차단 여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 이행 여부 보전녹지지역내 다중, 다가구주택 건축 여부 농림지역내 농지, 산림, 초지법 적용 여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타법 제한사항 적용 여부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물(고물상, 세차장 등)의 허용 용도지역외 허가 여부 법령 등 규정개정에 따른 기존 부적합 건물의 증개축 여부 1필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접한 경우 용도지역 적용의 적정 여부(330㎡ 이하 기준) 건축물이 미관, 고도, 방화지구와 다른 용도지역에 접한 경우 각각 규정적용여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접한 경우 각각 규정적용 여부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제한시설 허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시설 허가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84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제94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2)</p>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3.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별 완화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지역내, 준주거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여부 조례의 제정 없이 「농지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p> <p>도시계획조례</p> |
| 4.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 사업주 편의로 사업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 수립 여부 -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수립 - 1단계(3년 이내 시행) · 2단계(3년 이후 시행)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적정성 및 하자 여부 주민의견 반영없이 실시계획 인가여부 사업주의 수익성만 고려된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여부 도시계획결정내용과 상이하게 사업 시행인가 여부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00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95조~제103조)</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4조~제17조)</p> |

도시계획 · GB분야 주요 지적사례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5. 도시·군계획 위원회 ◦ 심의절차 없이 사업추진 ◦ 소관에 맞지 않은 도시·군계획 심의 | ◦ 타 법에 의제사항의 심의이행 여부 ◦ 「택축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지구지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시 심의이행 여부 ◦ 지구단위계획시 2개의 심의 이행여부 -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기준 준수여부) - 용도지역 · 기반시설은 별도 도시계획 심의 ◦ 개발규모 및 인·허가권자에 따라 심의 - 중앙행정기관이 인허가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중도위 심의 - 사·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라도 사·도가 인허가할 경우 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제113조~제1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5조~제6조, 제110조~제1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1.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2.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업무 태만
3. 재정비 촉진지구내 협의처리 부적정
4. 개발제한구역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적정
5. ○○첨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저촉된 허가 부적정
6. 지구단위계획(주택법 의제) 처리 부적정
7.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협의 부적정
8.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사업 추진 부적정
9.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10.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추진협의 부적정
11. 자연녹지지역내 불법개발행위 단속 소홀
1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소홀
13.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미조치
1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상황 허위 보고 등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르면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은 후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등을 포함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과 관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부적정하게 공사를 착수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사업 추진.

2. 개발행위허가지 관리업무 태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신청자가 개발행위허가 기간 등이 경과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통보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시 ○○면 ○○리 00번지 등 00필지(A=00,000㎡) 총 00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구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이 모두 경과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허가지 관리업무 태만.

3. 재정비 촉진지구내 협의 처리 부적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 ○○시 ○○동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지) 건축(신축)허가를 협의 처리하면서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아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게 협의하는 등 결과적으로 부적정하게 건축(신축)허가가 처리되도록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지구지정 관리업무 태만.

4. 개발제한구역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시 ○○배수지 위에 생활체육시설(00,000㎡, 테니스장 00면, 족구장 00면) 설치계획에 대하여 ○○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서도 동호회 회원과 이용 시민들의 시설 조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계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공사 추진.

5. ○○첨단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저촉된 허가 부적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허가권자는 관련규정 저촉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서에 협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 ○○동 00번지 일원에 제조장 건립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주 진·출입로 (L=000m, 폭 00m) 계획부지가 ○○첨단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었고 실시계획에 따르면 완충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등 본 도로는 폐쇄되었는데도,
- 주 진·출입로 이용계획에 대하여 도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산업단지 주관부서인 ○○사업소(○○과)와는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첨단지방산업단지내 완충녹지 설치 시 폐쇄될 도로를 이용하도록 부적정하게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함에 따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민원발생 원인 제공.

6. 지구단위계획(주택법 의제) 처리 부적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의제 처리가 됨으로 의제협의 시는 협의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 ○○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를와 관련 주변지역의 슬럼화 예상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과 건축물 배치와 층고 하향 조정 및 어린이 공원 위치 변경 등 반영 요구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권자인 ○○과 협의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작성하여 상정하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부적정.

7.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협의 부적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주택법 의제)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 교통영향평가 결과 의결내용에서 “아파트 주 출입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임대아파트) 출입구와 축을 일치시킬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주 출입구를 일치시켜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사의 ○○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심의결과에서 향후 결정될 것으로 미리 예측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보고에서는 반영하였다고 기재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부적정하게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8.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사업 추진 부적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이미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7조(택지개발지구의 관리)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구지정을 확정 하였는데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 등 공사를 강행하여 개발계획 이전 투입된 공사비와 향후 보상비 상승 요인에 따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 초래.

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빈번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시 ○○동 ○○번지 일원 ○○지구 등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승인을 득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변경 결정하면서, 최초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등을 고려하여 허용행위 등을 결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물 높이 완화 및 허용가능 행위를 완화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10.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추진협의 부적정

- 국토해양부에서는 남북교역 화물 및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중가가 예상되는 수도권 북부지역 자체물동량 처리를 위해 수도권 북부 물류기지 건설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시와 후보지에 대하여 협의하여 ○○읍 ○○리 일원으로 결정하였고,**
2025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25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시에도 위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 물류기지 담당부서에서는 심각한 교통난 초래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국가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같은 ○○시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 추진.

11. 자연녹지지역내 불법개발행위 단속 소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상기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허가된 지역 [(운동시설(골프연습장)]과 인접한 ○○동 산 00번지 약 0,000㎡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되어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서 영업용으로 무단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

1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소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부 00건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일부 00건만 부과하였으며, 2008년 발생 불법행위 중 원상복구 미완료 00건에 대하여는 2010년 이후 별도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되지 아니한 000백만원은 체납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한 00건(000백만원)은 예고기한이 경과되고 원상복구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 단속 소홀.

13.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취소 후 원상복구 미조치

-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 하목 다) 규정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읍 ○○리에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쇄석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행위허가한 건에 대하여 2010년 ○월 ○일 행위허가를 취소 처분하였으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장비를 가동하고 생산된 골재를 반출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행강제금 5천만 원에 대한 부과유예를 결정하여 업체에게 5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 제공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 초래.

1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상황 허위 보고 등

- 「개특법」 및 「불법행위 단속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불법행위 적발 시 별지 제2호 서식인 년도별 불법행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상황을 매월 도에 보고 하면서 적발건수를 원상복구 완료건수 위주로 보고하여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연말이 다가올 경우 당해 연도에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 원상복구 미조치 사항이 ○○○건이 남아 있음에도 ○건만 미조치로 보고함에 따라 추가적인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규 적발된 것처럼 불법행위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는 등 과년도 불법행위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관리 및 불법행위 조치 소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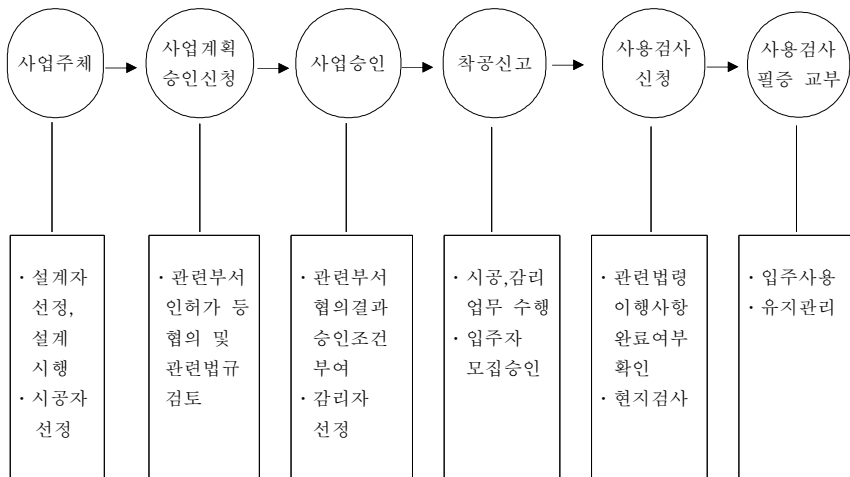
2. 주택·건축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관계 법령

- 주택법 제16조, 제29조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4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1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업무처리 절차



취약 요인

- 주택 입지여건 및 관련규정 등 확인·검토없이 승인 처리
- 당초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완료 확인없이 사용검사 처리

감사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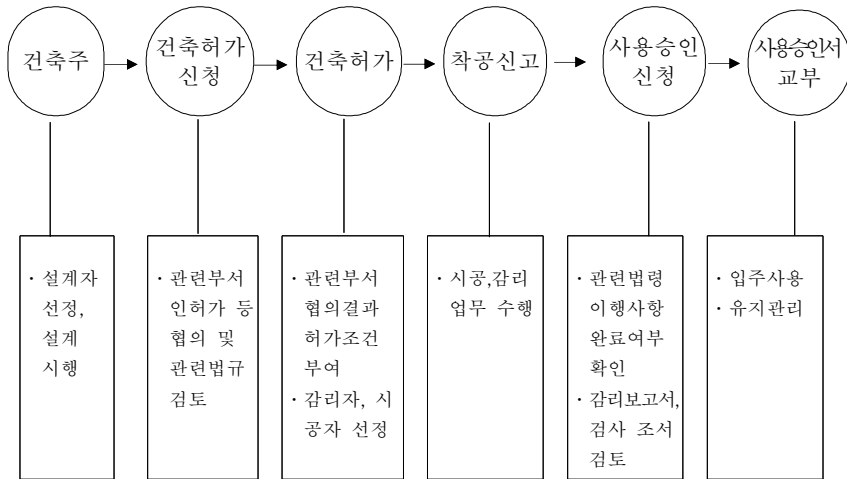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택건설 입지 적정 여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적정여부
 - ※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주택내 계단·복도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안전성 등
- 감리자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 적정 여부
- 입주자 모집승인의 적정 여부
 -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건축공정 확인 여부 등
- 사업승인 조건 등 이행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 여부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17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제16조

업무처리 절차



취약 요인

- 건축사 현지 확인 및 설계도서 작성·검토 소홀
- 선 착공 및 허위착공 신고
- 공사감리 불성실로 부실사항 및 위반사항 발생
- 불법사항 묵인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전 입주 사용

감사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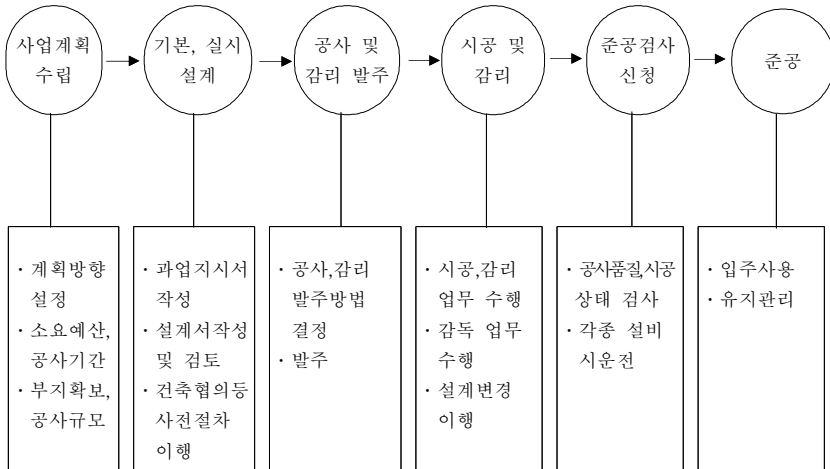
- 대지의 용도구분상 건축물 행위허가 가능 여부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불성실
 - ※ 기존 불법사항 누락 조사, 대지경계선 침범, 건폐율·용적율 위반 등
- 미착공 상태에서 착공신고 및 허가취소 시점까지 착공신고 미이행
- 감리업무 불성실로 위반사항 발생
 - ※ 설계변경허가 미 이행, 무자격자 시공, 사용승인 전 입주 등
- 위반사항 묵인 사용승인 처리
 - ※ 무단 증축, 조경 부족설치 및 미이행, 지하층을 지상으로 노출 시공 (층고의 1/2이상 노출 시공), 주차장 부족 설치 및 설치규격 위반 등,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 및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 등

공공건축물 공사계획 및 시공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 절차



취약 요인

- 예산확보 등 사전계획 없이 공사 추진
- 설계 시 현지조사 및 도서작성 불성실
- 공사감리·감독 불성실로 부실공사
- 불량시공 또는 부족 시공사항 목인 후 준공 처리

감사 착안 사항

-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실시 여부
-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및 소요재원의 확보 대책
-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 공사발주 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 설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 과업지시서와의 적정여부, 공사기간 산정, 동일공종의 중복계상, 수량·단가산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 공사시공 및 감리수행의 적정 여부
 - ※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사기간 연장, 하도급 계약사항, 안전·품질관리, 기성금 지급 등
- 준공검사 처리의 적정성
 - ※ 부족 또는 불량시공 여부, 공사비 지급의 적정성, 준공도서 작성 등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1.건축위원회 심의운영 | <p>【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위원회 부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행위 ○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필요한 조건 부여로 사업자 및 입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 2.주택건설 사업승인 | <p>【주택건설사업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등 주택건설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20세대이상, 대지조성 10,000㎡ - 1세대당주택규모 : 단독주택 330㎡, 공동주택 297㎡ ○ 토지소유권확보 및 간선시설설치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서가 관계법에 적정한지 여부 ○ 불필요한 서류보완 및 반려 등으로 처리기간을 지연 여부 ○ 불필요하게 장기간 검토하는 등 협의부서 처리 적정 이행 여부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사전 협의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등 24개 관계법 의제 ○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비 변경·대지분 변경 등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주예정자 (4/5)의 동의 이행 여부 |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3.주택건설 기준 | <p>【주택건설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승인으로 주민불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으로 기준에 적합여부 ○ 공동주택으로부터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위험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여부 ○ 공동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 시설과 복합으로 건립시 출입구가 별도 분리되는 등 시설기준 적정 여부 ○ 세대간 경계벽, 승강기, 계단, 복도, 난간,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 설비 등이 적정한지 여부 ○ 진입도로 폭 적정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300~500세대 미만 : 8M 이상 - 500~1천세대 미만 : 12M 이상 - 1천~2천세대 미만 : 15M 이상 - 2천세대 이상 : 20M 이상 | 주택건설기준 제9조 주택건설기준 제12조 주택건설기준 제13조~제24조 주택건설기준 제25조 주택건설기준 제26조~제44조 |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법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인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정시설, 폐기물보관시설, 급배수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이 적정한지 여부 | 주택건설기준 제46조~제56조 |
| 4.공동주택 감리 등 | <p>【감리를 잘 못하여 부실공사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별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 배치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미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자 - 300세대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자재 및 품질시험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감리업무수행 적정 이행여부 ○ 감리교체는 당초 지정된 감리원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자로 교체 여부 | 주택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5.사용검사 등 | <p>【사업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사용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 사용검사를 처리기간 내 처리 여부 ○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된 사항을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 이행 여부 ○ 당초 사업승인조건 이행 및 입주자 예비 사용검사 이행 여부 ○ 하자보증금(공사비의 3/100)예치 여부 | 주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
| 6.건축사 행정처분 | <p>【건축사 행정처분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는지 여부 ○ 시정명령 후 공사 중지 등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허가권자에게 위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는지 여부 ○ 위반건축물 관련자 조치를 함에 있어 건축주만 고발조치하고 건축사는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는지 여부 ○ 행정처분 기준보다 가볍게 처분하거나 미처분한 사례는 없는지 여부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된 사유로 처분이 경감된 사안에 대하여 실제 시정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장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금지 여부 확인 | 건축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별표1]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별표1] |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6. 건축사 행정처분 | ○ 건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적기에 보고하고, 행정처분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 |
| 7. 건축민원 | 【민원사무처리 규정위반】 ○ 민원사무처리부 처리내용 검토 - 처리기한 경과 여부 - 보완내용 및 반려사유 - 취하민원 재 접수처리 경위 | 민원사무처리규정 |
| 8. 건축허가 | 【건축기준 대지여건 등과 허가규모를 초과한 위법허가】 ○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사항 검토 -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및 용적을 제한 - 2이상 용도지역에서의 조지 ○ 대지조성 시 형질변경 조건 확인 - 형질변경의 목적 및 규모 - 대지조성공사 및 대지현황 - 환경영향평가 등 부대조건 ○ 건축 허가·승인권 제한 사항 - 21층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의 시군 임의 처리(도 사전 승인권) - 도 승인 없이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구역내 공동 주택, 3층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2중 근린생활업무·숙박·위락의 시군 임의처리 | 건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 9. 건축제한 | 【지자체장의 재량권 일탈 건축규제(불허가)】 ○ 건축허가제한 대상·절차 검토 -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관리상, 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로서 - 2년이내(최대 1년 연장)위치, 면적, 용도 등을 정하여 공고 - 위락·숙박시설은 주가·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 부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 건축법 제18조 |
| 10. 소규모 건축 신고 | 【신고범위를 벗어난 신고처리, 공무원 현장감사에 의한 비리의 개연성】 ○ 신고대상(규모 및 용도 확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축, 개축, 재축 - 대수선행위 - 국토법상 제2중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연면적 100㎡이하 -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100㎡ 주택(단독 300㎡), 200㎡ 창고,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 -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단독주택은 330㎡) 건물의 높이를 3M이하로 증축 - 표준설계로서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 - 국토법상 공업지역과 2중 지구단위계획(산업형)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 공장 |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1. 사용 승인 | 【설계변경 없이 임의 건축 및 사용승인】 ○ 변경허가 및 신고규모 확인 - 바닥면적의 합계 85㎡를 초과하는 증축·개축은 허가, 기타의 경우 신고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50㎡이하 - 연면적 합계의 1/10이하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 높이 1M, 전체높이 1/10이하 - 변경위치가 1M이하 ※층수, 동수 변경은 제외됨 | 건축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
| 12. 조경 관리 | 【조경기준 위반, 200㎡이상 대지】 ○ 조경의무 제외 대상 조건 확인 - 읍·자은녹지지역내 건축물 -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산업단지안의 공장 - 축사,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미만의 물류시설 (주거, 상업지역 제외)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것 - 국토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2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안의 건축물 옥상 - 조경시 면적인정기준 검토 - 옥상조경면적의 2/3만 인정 - 법상면적 50/100 이하만 인정 |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 |
| 13. 건축 협의 | 【관계법령상 제한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임의 건축허가】 - 국토법 제52, 56~62, 76~8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 농지법 제34조, 제36조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해군기지법 제6조 - 군용항공기법 제16조, 제20조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 항공법 제82조, 제93조 - 학교건조법 제6조 - 산림법 제18조, 제62조, 제70조, 제90조 - 도로법 제40조, 제50조, 사도법 제4조 - 주차장법 제19조, 수도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제18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

주택·건축분야 주요 지적사례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적정
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부적정
3. 건축허가 부적정
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5. 도시계획(용도지역) 협의업무 소홀
6. 도로지정 업무 소홀
7. 건축허가 부적정
8. 피난·방화구조 기준 검토 소홀
9.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축)허가 부적정
10.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
11. 건축허가시 용적율 완화적용 부적정(타 기관)
12.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부적정(타 기관)
13. 착공신고 부적정(타 기관)
14. 점·사용허가 업무 부당(타 기관)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4.위법건축물 지도·단속 | <p>【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후 시정기간 내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한 후 부과하여야 함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신고), 견폐율·용적율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5회만 부과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폐율·용적율의 초과,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 내용(사용승인 전 사용, 조경 의무 면적 위반, 높이·일조권 등의 높이제한, 기타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15조의2 |
| 15.건축법 위반 관계자 처분 | <p>【행정처분 미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대상 및 이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5조 제3항(위법시공)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공사 감리자 - 건축법 제27조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현장조사·검사확인 의무 건축사) -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건축물 철거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축법 제79조 제5항(위반건축물 표지설치 거부)을 위반한 자 | 건축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20조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내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 전체(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편입되어 철거된 ○○동 ○○○번지 ○○○ 외 5건에 대하여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3호 라목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허용기준인 330㎡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행위허가.

2.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부적정

-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건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본주택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하는데도,
- ○○과에서는 ○○건설(주)에서 신청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 때 수리한 설계내용(욕실 천정재: 합성수지 천정판)과 다르게 실내재료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욕실

천정재: 합성수지 천정판 → 비닐벽지) 신청하여 서로 상이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3. 건축허가 부적정

-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과에서는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건물 배치도에 동간 이격거리가 각각 40미터와 6미터로 설계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인 70.8미터와 59.6미터에 각각 30.8미터와 53.6미터가 부족하게 이격되어 건축법에서 정한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

4.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 「건축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며, 「○○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과에서는 ○○동 ○○번지 ○○석유(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용도의 건축(증축)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폐율 20%보다 2.23% 초과한 22.23%로 설계되어 있는 등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대지면적 전체를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로 산정하여 건폐율이 초과된 건축물을 건축(중축)허가 하였고, 이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한 위법건축물을 사용승인 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5. 도시계획(용도지역) 협의업무 소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14호 [별표14] 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분류 중 교육연구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과에서는 ○○면 ○○리 ○○○번지 (주)○○○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용도의 건축허가를 위한 실무종합심의 때 신청지역(보전녹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및 허용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실무종합심의 의견을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으로 저촉사항 없음”으로 통보함으로써 보전녹지지역에 허용할 수 없는 교육연구시설(교육원)을 건축 허가하도록 도시계획(용도지역) 협의 업무 소홀.

6. 도로지정 업무 소홀

-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이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도로관리 대상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과에서는 '07년 21건, '08년 19건 등 총 40건을 건축허가(신고) 하면서, 법정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고도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채 건축물 사용승인 때 토지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건축허가(신고)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분할측량) 등 불편 초래.

7. 건축허가 부적정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一團)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 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대지의 조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 ○○구청 ○○과에서는 건축주 ○○○이 2010. 7. 4. ○○구 ○○동 ○○번지 상에 도시형생활주택 20세대를 건축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2010. 8. 6. 건축허가 하고, 같은 건축주가 2011. 2. 8. ○○구 ○○동 ○○○번지 상에 도시형생활주택 19세대 건축허가 신청한 건은 ○○동 ○○번지 상 건축허가 처분한 건과 일단(一團)의

주택단지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상(39세대)이므로 건축허가 처분을 반려하였어야 하는데도 2011. 2. 25.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며,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 지정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사용승인 후 임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건축주에게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

8. 피난·방화구조 기준 검토 소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 유효너비는 공동주택에 있어 중복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아닌 경우 1.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과에서는 ○○동 ○○번지 (주)○○○개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복도의 유효너비가 1.0미터로 설계되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설계검토 소홀.

9.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축)허가 부적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주택의 신축은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데도,

- ○○과에서는 ○○동 ○○○번지 △△△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이축허가 하면서 관계법령·판례, 공익사업의 보상관계 등 건축주의 이축허가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동 ○○○번지 외 1필지의 주택소유자(보상금 수령자)가 아닌 보상금 지급일에 이축권을 양도받아 신청자격이 없는 △△△에게 부적정하게 이축허가.

10.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 ○○시 ○○구청 ○○과에서는 ○○시 ○○구 ○○동 산 ○○번지에 소재하는 ○○○의 임시창고 등 138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36건)에 50백만 원, 2011년(102건)에 10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미부과 하고, ○○구청 ○○과에서는 ○○시 ○○구 ○○동 ○○번지 ○○○의 다가구주택 등 65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0년(35건)에 120백만 원, 2011년(30건)에 1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미부과.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1. 건축허가 시 용적율 완화적용 부적정(○○시)

-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구에서는 ○○동 ○○번지 지상 10층(연면적 4,960.22㎡) 업무시설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연면적이 5천㎡ 이하로서 용적율 완화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공개공지 153.9㎡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46.98% 완화하여 부적정하게 건축허가.

12.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부적정(○○시)

-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과에서는 ○○건설(주)가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단지 안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미터 이상 이격하지 않았고, 미 개설된 단지 밖의 20미터 도로에 대하여 예측소음을 실시한 소음저감 방안을 사업승인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13. 착공신고 부적정(○○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²⁾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과에서는 어린이집(147.9㎡)을 증축코자 신청한 건축물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건축주가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 검토 없이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착공신고를 해줌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

14. 점·사용허가 업무 부당(○○시)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합계가 300㎡ 이하인 경우에만 여관을 지을 수 있고, 환경부 질의회신(공원13640-395, 199. 4. 15)에

2)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2. 주택·건축

의하면 동일인 소유의 연접토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에만 여관을 지을 수 있는데도,

- ○○과에서는 ○○○이 허가신청한 여관 2동의 건축연면적이 291.66㎡와 298.86㎡로 이를 합산하면 건축연면적이 590.52㎡가 되어 허가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건축허가.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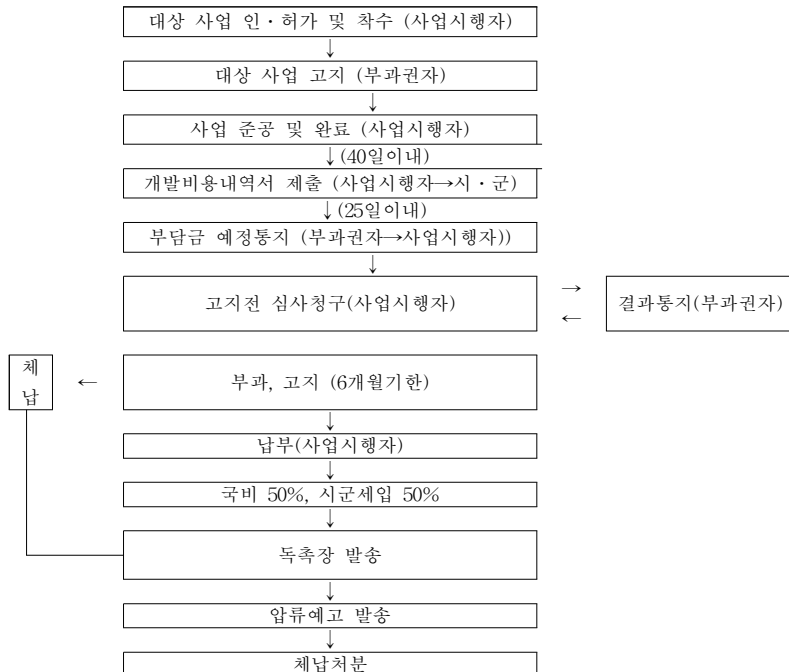
3. 지적·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계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20조의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사 착안 사항 | 관계 법규 |
|--|--|--|
| 1. 개발부담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사업의 누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 공장부지, 농지 또는 산지전용허가 부지 등(택지개발 등 10종류 30여개사업) - 대상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지역(1,650㎡ 이상), 도시(990㎡ 이상) ○ 종료시점 가격산정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여부 ○ 부과종료 시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담금 결정·부과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영 제4조제1항에 의한 별표1 동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 |
| 2. 개발부담금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후 25일 이내에 예정통보 여부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지연시 과태료 부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이내(50만원), 15일 이내(100만원) - 25일 이내(150만원), 25일 초과(200만원) ○ 인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의무자에게 대상 사업 고지 여부 ○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 징수 여부 |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법 제16조제1항 |
| 3. 개발비용 내역서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적정 산정 여부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내역서 제출 여부 | 동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 4. 체납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여부 ○ 가산금 부과는 적정한지 여부 | 동법 제19조 동법 제19조 |
| ※ '99.12.31.까지 인가받은 사업 중 '98.9.19. 이후 준공사업은 면제 ※ '98.6.18.부터 '99.9.19. 이후 준공사업은 면제 ※ '00.1.1. 이후 인가받은 사업은 부담률 25% 적용 ※ '06.1.1.부터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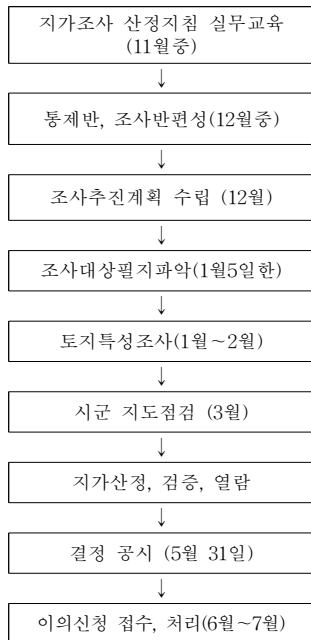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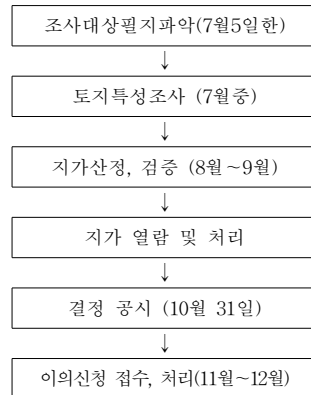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2조
-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업무처리 절차

[1. 1 기준]



[7. 1기준]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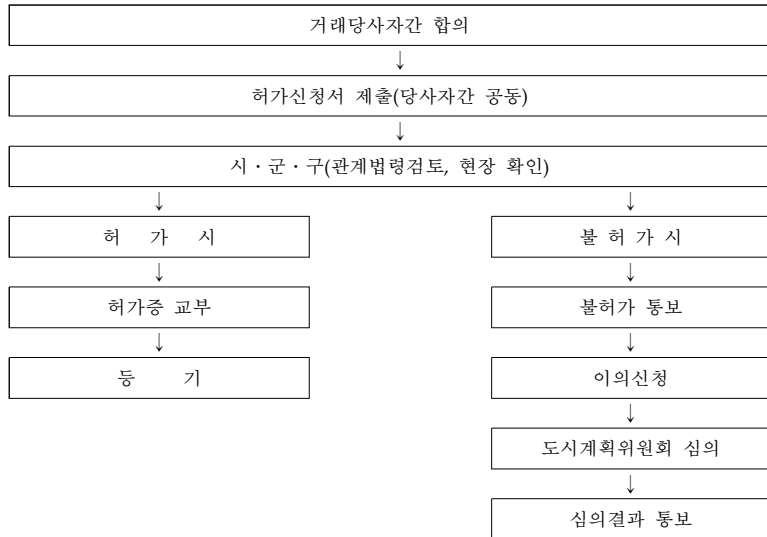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1. 토지 특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특성조사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대조하여 이용 상황 확인 예) 건물이 있는데도 농지 등으로 조사 여부 분할, 합병, 지번, 등전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시분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동현황과 수시분 조사량을 대비하여 누락 여부 확인 ※도에 지가조사대상 필지 보고분 참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5조 |
| 2. 검증·의견 제출·이의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지가가 산정지와 다른 내역을 발체하여 정당한 신청에 의하지 않고 결정했는지 여부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
| 3. 표준지 선정 및 특수토지 지가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특수토지(골프장, 염전, 유원지)로 이용되는 토지 표준지 배치여부 및 일단지 지가결정 여부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
| 4. 개별공시지가 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대상 토지가 아님에도 정정하였는지 여부 정정 신청분(당해연도)만 정정하고 전년도등 연속하여 정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시군 부평위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 공시했는지 여부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정정사실 통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세무서, 세무부서, 시도지사경유 건교부 | 법 제13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
| ※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는 전체필지에 대하여 검증 실시 ※ 검증도우미 프로그램으로 확인(표준지 대비 용도지역 상이 현황, 표준지 대비 토지이용 상황 상이 현황, 표준지 대비 토지특성 상이 현황, 표준지 공시지와 개별공시지가 격차 현황 등) | | |

토지거래계약허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제141조, 제1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9조
- 국토해양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업무처리절차



세부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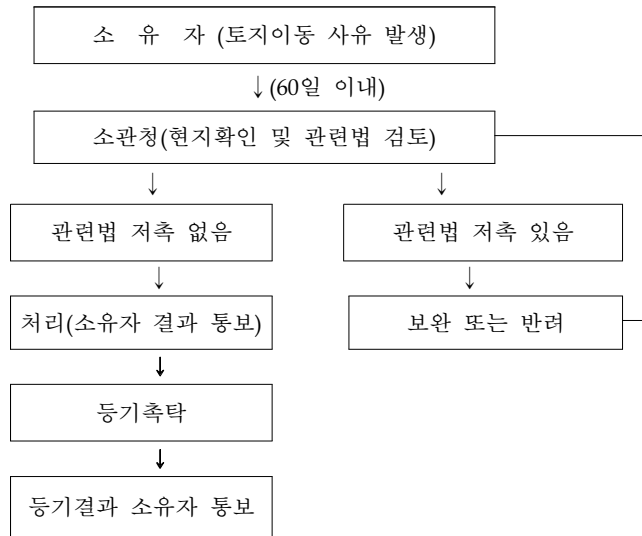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 토지거래허가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 기준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 농업인(신규) :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거주 및 해당 시군 거주 - 농업인(기존) : 시군을 달리할 경우 통작거리 20km 이내 - 임업인 :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거주 및 연결 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토지거래허가 제한 면적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 180㎡ 이하 - 상업지역 : 200㎡ 이하 - 공업지역 : 66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 : 90㎡ 이하 - 도시지역외 : 250㎡(농지 500㎡, 임야 1천㎡) ※ 비농업인이 농지를 신규 취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지 1,000㎡ 이상 가능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 330㎡ 이상 가능 (농지취득증명 발급 기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허가 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검인처리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제141조, 제144조 |
| 2. 이용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목적 위반(전매 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 3. 23. 이전 : 과태료 500만원 이하 (관할 세무서 통보) ※ 과태료는 시군 조례로 정함 - '06. 3. 23.부터 :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1회 이상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했는지 여부 | 법 제124조, 제124조의2, 제141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23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53조, 제354조,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8조, 제379조,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404조, 제405조, 제406조, 제407조, 제408조, 제40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27조, 제428조, 제429조, 제430조, 제431조, 제432조,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7조, 제448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8조, 제469조,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480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6조,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17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525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제529조, 제530조,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4조,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제538조, 제539조, 제540조, 제541조, 제542조, 제543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7조, 제548조, 제549조, 제550조, 제551조, 제552조, 제553조,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0조, 제561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8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제577조, 제578조, 제579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3조, 제584조, 제585조, 제586조, 제587조, 제588조, 제589조, 제590조, 제591조, 제592조, 제593조, 제594조, 제595조, 제596조, 제597조, 제598조, 제599조, 제600조,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제605조, 제606조, 제607조, 제608조, 제609조, 제610조, 제611조, 제612조, 제613조, 제614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618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제627조, 제628조, 제629조, 제630조, 제631조,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제638조, 제639조, 제640조, 제641조, 제642조, 제643조, 제644조, 제64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4조, 제655조,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제659조, 제660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 제664조, 제665조, 제666조,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673조, 제674조, 제675조, 제676조, 제677조, 제678조, 제679조, 제680조,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6조, 제687조, 제688조, 제689조, 제690조, 제691조, 제692조, 제693조, 제694조, 제695조, 제696조, 제697조, 제698조, 제699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제703조,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09조, 제710조, 제711조, 제712조, 제713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725조, 제726조, 제727조, 제728조, 제729조, 제730조,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739조, 제740조, 제741조, 제742조, 제743조, 제744조,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5조, 제826조, 제827조, 제828조,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7조, 제838조, 제839조,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7조, 제848조, 제849조, 제850조, 제851조, 제852조, 제853조, 제854조, 제855조, 제856조, 제857조, 제858조, 제859조, 제860조, 제861조, 제862조, 제863조, 제864조, 제865조, 제866조, 제867조, 제868조, 제869조, 제870조, 제871조, 제872조, 제873조, 제874조, 제875조, 제876조, 제877조, 제878조,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 제882조, 제883조, 제884조, 제885조, 제886조, 제887조, 제888조, 제889조, 제890조, 제891조, 제892조, 제893조, 제894조, 제895조, 제896조, 제897조, 제898조, 제899조, 제900조, 제901조, 제902조, 제903조, 제904조, 제905조, 제906조, 제907조, 제908조, 제909조, 제910조, 제911조, 제912조,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924조, 제925조, 제926조, 제927조,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1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941조, 제942조, 제943조, 제944조, 제945조, 제946조, 제947조, 제948조, 제949조, 제950조, 제951조, 제952조, 제953조, 제954조, 제955조, 제956조,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960조, 제961조, 제962조, 제963조, 제964조, 제965조, 제966조, 제967조, 제968조, 제969조, 제970조, 제971조, 제972조, 제973조,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977조, 제978조, 제979조, 제980조, 제981조, 제982조, 제983조, 제984조, 제985조, 제986조, 제987조, 제988조, 제989조, 제990조, 제991조, 제992조, 제993조, 제994조, 제995조, 제996조, 제997조, 제998조, 제999조, 제1000조 |
| 3. 행정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 없이 방치 했는지 여부 ○ 적정하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여부 ○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토지거래허가 신청하였는데도 적정한 조치 없이 허가하였는지 여부 | 법 제144조 |

토지이동(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

관 계 법 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신청),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신청),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 국토해양부 「지적업무 처리 규정」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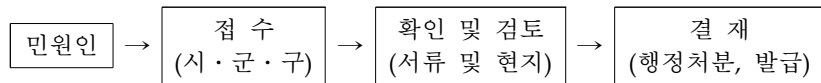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1. 등록전환 | ○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당시 면적결정의 적정 여부 - 산출면적이 아닌 임야대장 면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 |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82조 |
| 2. 분할 | ○ 관계법령 저촉 여부 ○ 최소면적 분할일 경우 적정 여부 | 시행령 제65조, 규칙83조 시행령 제42조, |
| 3. 합병 | ○ 합병처리의 적정 여부 - 근저당 등 동일하지 않은 사항 합병처리 확인 ○ 불가대상을 합병처리 후 오기정정 여부 - 토지이동결의서 확인 | 법 제80조 시행령 제66조 " |
| 4. 지목변경 | ○ 인허가 사항의 목적과 같이 처리했는지 여부 ○ 지목설정의 적정 여부 | 법 제81조 시행령 제61조, 규칙84조 |
| 5. 등록사항 정정 | ○ 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측량업자)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통보분 결의서에 의거 대장정리 여부 - 측량수행자로부터 통보분 제출받아 확인 ○ 오기 정정처리 적정 여부 - 전산처리대장으로 확인(결의서 작성 여부 등) ○ 등록사항 회복의 적정 여부 - 결의서 작성 없이 전산상으로 만 회복하였는지 | 법 제84조 시행령 제82조 규칙 제93조, 제94조 |

기준점관리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 계 법 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조사 등), 시행령 제3조(과징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격증 대여 등), 제16조(인장등록),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업무처리 절차



세부 착안 사항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1. 기준점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점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 훼손 망실분 등은 원인자에게 부담하여 복구하고 있는지 등 ○ 지적 삼각보조점 및 지적도 근점 성과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였는지 여부 | 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제10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

| 세부사무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2. 지적측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및 검사대상을 시군 자체에서 토지이동정리 처리 여부 ○ 측량접수후 처리기간 및 검사기간 준수 여부 - 측량기간 : 동지역 5일, - 검사기간 : 동지역 4일. | 법 제86조 시행령 제83제 시행규칙 제25조 |
| 3. 소유권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필통지서 정리 후 관련부서 통보여부 - 세무부서 과세자료 통보 후 재 회수 ○ 등기필 불부합 사항 적정 처리 여부 - 관할 등기소에 반송(불부합 일치토록) ○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축탁 여부 - 지연 또는 방지하고 있는지 | 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
| 4. 부동산 실명법 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자에 대한 부과 누락 여부 - 세무과 취득세 판결문으로 확인(명의신탁 사항)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물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으로 한 부과율을 합한 비율에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 (개정공포 : '02. 3. 30.)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 5. 부동산 중개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업자 이중등록 또는 결격사유 여부 - 중개업자 사망여부(주민등록 조회) ○ 업무보증보험을 기간내 가입하였는지 여부 ○ 인장변경을 적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처리 하였는지 또는 방치 여부 ○ 금지행위 준수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30조 법 제16조 법 제38조, 제39조, 법 제33조 |

지적·부동산분야 주요 지적사례

1.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 부적정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소홀
3. 토지이동(분할 등)정리 부적정
4. 토지(임야)분할 부적정
5.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처리 소홀
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결정·부과 누락
7.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부적정
8. 개발부담금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
9.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미부과
10. 건축허가 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 부적정
11.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소홀
12.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 업무처리 소홀
13.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부적정
14.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부적정
15. 부동산 증여계약서 검인 부적정
16.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조사·산정 소홀(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 부적정

- 「지적법³⁾」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관리) 및 「지적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관리)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면 00리 산38-2번지 토지 등 5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과정에 면적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오류사항을 통보 받고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1월 내지 17월이 지난 뒤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소홀.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소홀

- 「지적법」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지적사무 처리 규정」 제35조(지적측량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측량성과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에 지적공사에서 신규로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518점 중 468점이 사업지구 내측에 설치되어 사업시행으로 326점이 망실되고 142점이 망실될 예정으로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 시행에 따른 폐지 됨.

있고, 도근점을 견고하지 않은 지반에 플라스틱 표지로 손·망실되기 쉽도록 설치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관리 소홀.

3. 토지이동(분할 등)정리 부적정

- 「지적법」 제19조(분할신청), 제28조(신청의 대위), 제31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는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며, 토지표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 촉탁하여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천 하천정비사업이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선으로 결정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지 않아 토지분할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과로부터 토지분할신청서를 접수 받아 토지이동(토지분할)정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등기필증을 접수하였는데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 등 미 통지.

4. 토지(임야)분할 부적정

- 「지적법」 시행령 제39조(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제40조(지상경계의 결정 등)에 따르면 분할하고자하는 지상경계는 독, 담장, 구조물 및 경계점표시 등을 설치한 후 분할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지점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하여 측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면 ○○리 산 34-1번지 등 13필지를 분할처리 하기

위하여 현장측량 시 새로이 경계를 결정할 경계에 경계점표시가 미비한데도 측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시준이 곤란하여 측량하기가 어려운데도 적정하게 측량한 것으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한 후 지적공부 정리.

5.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처리 소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20조(자료제출 의무)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면 ○○리 258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2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관련부서의 통보 누락과 자체조사 소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관리를 누락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미 부과.

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및 결정·부과 누락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자료의 통보), 제20조(자료제출의무)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동 175-3번지 등 4건의 개발사업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물 신축허가 통보를 받고도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동 197-2번지의 개발사업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사업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누락.

7.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부적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4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5조의2 등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990㎡ 이상(도시 외 지역의 경우 1,650㎡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준공 인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준공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182건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 받고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지 않는 등 총 203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그 결과 개발이익이 총 78,893백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들에게 총 19,723백만 원⁴⁾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확정·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고지 가능일로부터(2008.4.9.부터 2012. 8. 27.) 3개월 내지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4) 납부의무자들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 반영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음.

8. 개발부담금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리는 납부 고지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같은 기간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 등을 하여야 함.
- 그런데 ○○시에서는 5년이 지나도록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등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총 19건에 대하여는 352백만 원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징수 할 수 없게 됨.

9.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미부과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동 316번지 등 ○필지를 사실상 ○○○동 2명이 매입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 했다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도 과징금 21백만 원을 미부과 하였고, ○○필지는 매입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정기간보다 늦게 등기하여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되는데도 과징금 166백만 원 상당을 미부과.

5) 개발비용 반영전 개발이익으로 산출 금액 임.

10. 건축허가 토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19조(허가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동 152-9번지 등 4건의 토지에 건축부서에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한 토지를 건축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11.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관리 소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구 ○○동 649-2번지 등 ○○필지를 ○○○등 13명이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미 조치.

12.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 업무처리 소홀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 지침」 제4조(산정지가 검증의 범위)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검증을 의뢰할 경우에는 검증대상 필지의 내역, 검증기간 등을 기재한 검증의뢰서를 지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시에서는 산정지가 검증을 읍·면·동별로 전체 조사필지 중 일률적으로 1/3씩 검증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검증을 의뢰할 때 검증대상필지 내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읍·면·동별로 전체 검증필지 수만 기재하여 의뢰하는 등 개별토지의 검증실시 여·부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산정지가 검증 업무 소홀.

13.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부적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9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등록기준(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 등록할 수 있는데도,
- ○○시에서는 생산녹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중개사무실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물에 관련법 검토 없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14. 부동산 증여계약서 검인 부적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동 488번지 등 9필지 5건의 증여계약서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로서 검인처리를 할 때, 증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확인을 하지 않고 부동산검인을 부적정 처리.

15.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부적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업무의 정지), 제51조(과태료)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같이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보관 등을 위반한 중개업소를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현지 시정조치만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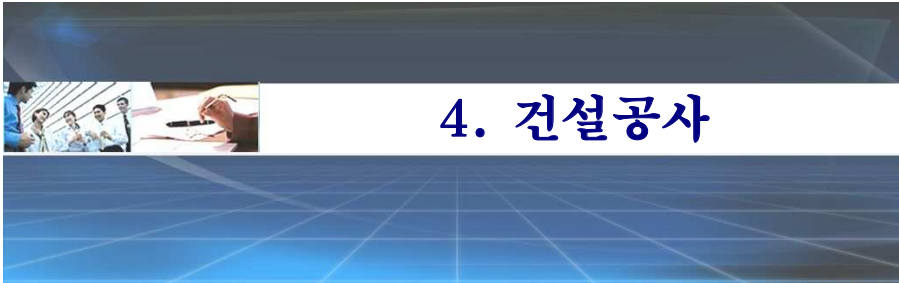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16.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조사·산정 소홀(○○광역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2-나'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Ⅱ」에 따르면 일단지 범위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그 일단지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특성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구에서는 일단지로 조사가 된 필지는 한국토지정보관리시스템(공시지가관리)의 일단지 현황에 작성·등록하여 일단지 토지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등록·관리하지 않아 소유자가 같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일단지의 토지가격을 서로 다르게 조사·산정.

제 1 편 감사착안 및 사례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건설공사의 집행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회계예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업무처리 절차

- 건설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입찰 및 계약 절차를 통해 공사를 시공할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사업 시행 절차

| 단계별 구분 | 관련부처(업체) | 세부업무내용 | 관련법령 |
|----------|-----------------------|--|--|
| 계 획 단계 | 지자체 수요부서 등 (엔지니어링 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예측 및 자원조달 ▶ 발주방법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 설 계 단계 | 지방자치단체 등 (설계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설기술관리법 |
| 입찰·계약 단계 | 조달청·발주관서 (시공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 입찰공고, 현장 설명 -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 시공·감리 단계 |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 공종별 하도급자 선정 및 시공 ▶ 감리업자 선정 및 공사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축사법 |

취 약 요 인

-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없이 예산편성
- 투자 우선순위 변경
- 사업비 확보 대책 없이 우선 용역발주 후 성과품 사장
- 설계 시 현지조사 불철저
- 전체사업비 확보 대책 없이 부분발주 후 공사 중단
- 인근 타공사 설계서 인용 작성
- 특정업체의 자재 및 공법사용 설계
- 비경제적인 작업수단 선정

감사 착안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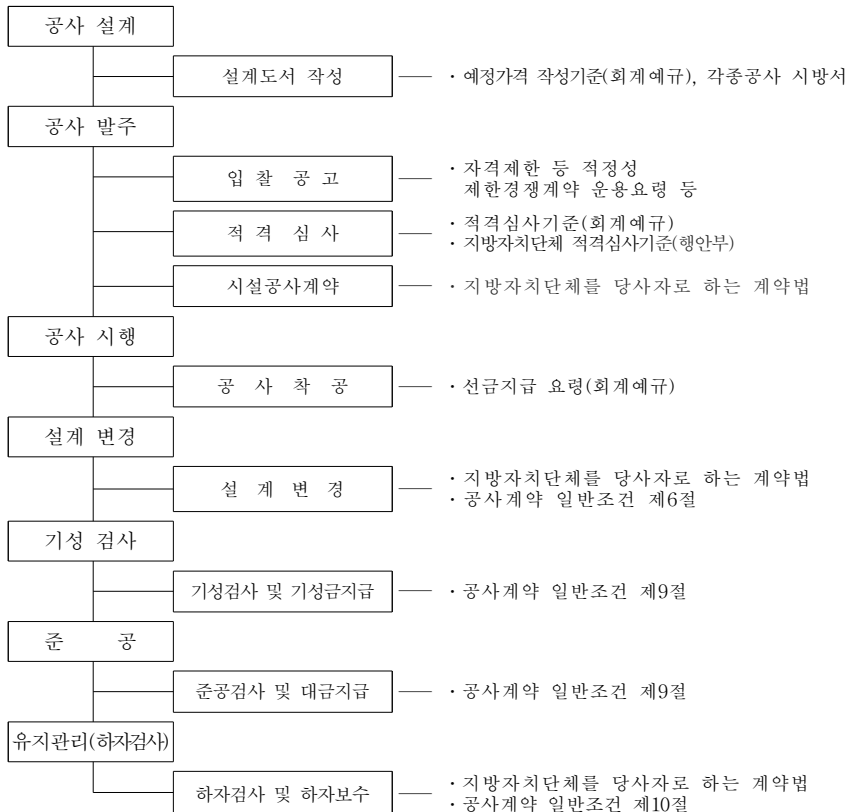
- 설계계획 및 사전 조사결과의 합당 여부
- 용역설계비 및 공사비 계산의 적정성
- 관계법규의 준수
 -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성검토,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 신공법 채택에 의한 경제성 여부
- 동일 공종의 중복계상 여부
- 작업수단 선정의 경제성
- 관계시설 기준에 의한 안전성 및 경제성
-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 소요재원의 확보 대책
-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 관계 기관과의 협조 상황
- 공사실시 계획의 적정 여부

시 설 공 사 시 공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사계약 일반조건, 책임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업무처리 절차



취 약 요 인

- 도급자에게 유리한 공법으로 변경
- 암추정선의 실지와 상이 함에도 미변경
- 도급자 귀책 지연공사의 부당연기 조치
- 불량 및 부적합 자재사용 묵인
- 공사완공전 준공계 접수
- 기성금을 공사진도 이상 지급

감사 착안 사항

- 공사의 계약절차 및 실제착공 여부
- 품질관리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상태
- 설계변경의 타당성
- 지급자재의 관리 상황
- 시공중 발생자재의 처리
- 불법 하도급 묵인 여부
- 공사 시공중 재해방지 등 임기응변 조치계획
- 공사기간 부당 연기조치 여부
- 준공 검사원의 기한내 제출 여부
- 준공검사의 지연 처리
- 부족 또는 조잡시공 묵인
- 미완성 공사의 준공 처리

세부 착안 사항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1. 설계 사전조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은 사용목적에 합당한 기능 및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 하였는지 ○ 수계, 지질, 지형 등에 관한 기본조사 및 측량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였는지 | |
| 2. 설계도서 작성시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은 구조계산이나 용량계산을 하여 작성 하였는지 ○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 설계수량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 하였는지 ○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상세도는 작성 되었는지 ○ 동바리는 목재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강관 동바리로 설계하였는지 ○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작업에 알맞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정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설계한 것은 없는지 |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면상의 단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하였으며 면적이 중복계산된 것은 없는지 ○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암반선을 추정하여 설계하거나 암반노출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 공사비 확보를 목적으로 암절취수량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 ○ 단가는 다짐상태로 산정하고 수량은 흐트러진 상태로 산출한 것은 없는지 ○ 발생토를 인근공사장에 유용할 수 있는 데도 먼 거리의 사토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없는지 ○ 기초의 위치, 형식 등은 지형, 지질, 기상 조건, 하중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하였는지 ○ 평면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 종단선형은 절토, 성토가 균형되지 않고 과다한 사토나 순성토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것은 없는지 ○ 도로의 배수시설은 계획 우수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용량으로 설계 하였는지 ※ 횡배수관은 최소관경 1,000m/m 이상 적용, 다만 지형 및 지역여건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800m/m 이상으로 적용 ○ 교량의 하부구조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형식과 구조로 설계하였는지 ○ 교량의 신축장치를 교량상판의 신축량 보다 작은 규격으로 설계한 것은 없는지 | <p>도로의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p> <p>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p> |

4. 건설공사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3. 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 적정 여부 | ○ 교량의 높이 및 길이는 하천의 계획 홍수위 및 통수단면을 감안하여 설계 하였는지 | 하천정비기본계획 |
| | ○ 교좌장치는 상부하중을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규격이며 이동방향은 상판신축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 하였는지 | |
| | ○ 터널공사 시 NATM공법에 있어 뿔어 붙이기 콘크리트 두께 및 락볼트 설치 간격 등을 암질의 종류에 부합되도록 설계 하였는지 | |
| | ○ 하천공사 시 제방고는 계획 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 하였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 | ○ 송수관은 필요한 량을 송수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규격으로 설계 하였는지 | |
| | ○ 송수관로의 부설심도는 차량하중 등에 안전하고 동파의 우려가 없는 길이로 설계 하였는지 | |
| | ○ 공사원가계산의 내용을 공사 종류별, 일위대가별 품셈적용의 적합 여부 |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정에 있어서 소정 규격 및 그 단위당 가격 적정 여부 | | |
| ○ 일반관리비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소정의 비율 적정 여부 | | |

제 5 장 도시주택건설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4. 설계서의 자재 규격 품질 선정 적정 여부 | ○ 이윤계산에 있어 노무비, 경비의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소정의 이윤율을 적용하였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 | ○ 총공사비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산재보험료를 계상 하였는지 | |
| | ○ 환경보전비를 내역에 계상하고 요율에도 적용 하였는지 | |
| |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산정 시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 노동부 질의회신 |
| | ○ 실적공사비 적용 시 제비율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 |
| | ○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는 하였는지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장 |
| 5. 작업수단 선정의 경제성 타당 여부 | ○ 국산자재 조달이 가능한데도 외산 자재를 구입하도록 설계한 것은 없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
| | ○ 동일한 품질의 자재가 있음에도 특정 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한 것은 없는지 | |
| 6. 공사기간 산정 적정 여부 | ○ 기계시공으로 공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을 인력작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 |
| | ○ 중기의 기종은 현장조건 및 작업거리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공사비를 계상하였는지 | |
| | ○ 계약상의 공사기간은 콘크리트 양생 기간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책정 되었는지 | |

4. 건설공사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7. 설계변경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 측에 불리한 공정을 유리한 타 공종으로 변경하여준 것은 없는지 ○ 당초 설계시 단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것은 없는지 ○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단가가 있는데도 신규단가를 적용한 것은 없는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정 한지 ○ 추정하여 설계한 양반선을 실제 시공대로 정산하였는지 ○ 토석류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한 장소와 상이한데도 설계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시공물량 증감에 따른 정산 미이행은 없는지 |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p> <p>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p> |
| 8. 관급자재의 관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를 승인 없이 타 공사에 유용한 것은 없는지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것은 없는지 | |
| 9.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이 아닌 중고품을 사용한 것은 없는지 ○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사용한 것은 없는지 ○ 시험을 요하는 재료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 |

제5장 도시주택건설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0. 하도급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일괄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은 없는지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나 당해공사의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 한 것은 없는지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것은 없는지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지 ○ 공사의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해당 업무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 선금급·기성금·준공금은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 <p>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p> <p>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9조</p> <p>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p> <p>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p> <p>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p> |
| 11. 공사기간 연기 조치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과실로 인한 공기의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 납부를 면제한 것은 없는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인데도 천재지변 등의 이유를 들어 공기를 연기하여 준 것은 없는지 | |
| 12. 공사시공의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푸집을 견실하게 조립하지 않아 콘크리트에 배부름현상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 |

4. 건설공사

제5장 도시주택건설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부재단면을 설계도면 보다 적게 시공한 것은 없는지 ○ 철근의 규격 및 배근간격은 설계도면과 일치 하는지 ○ 정착 및 이음길이는 시방서 기준치 이상을 확보 하였는지 ○ 철근의 피복두께는 시방서 기준에 적합 하게 되었는지 ○ 절토 및 성토공사를 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도와 상이하게 한 것은 없는지 ○ 치환해서 버려야 할 불량한 흙을 성토재료로 유용한 것은 없는지 ○ 말뚝을 박을 때 항타기록을 하지 아니하여 과항타에 따른 말뚝파손 등 잘못 시공된 것은 없는지 ○ 표면수 또는 용수로 인하여 비탈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수로, 맹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 ○ 보조기층, 표층의 부설두께는 설계도에 부합되며 입도 및 다짐은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 ○ 교량의 하부구조는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반까지 근입 시공 되었는지 |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장치의 가동량 및 가동방향은 상부 구조물의 신축량 및 방향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었는지 ○ 배수구가 시공중 막혀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없는지 ○ 터널공사시 NATM공법의 경우 설치된 위치에 변위 측정기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굴착 및 지보공 시공에 반영하고 있는지 ○ 100톤 이상 폐기물 처리를 분리발주 하고 있는지 ○ 하천공사시 축제 성토량을 적게하기 위하여 법면구배를 설계보다 세워서 시공한 것은 없는지 ○ 떼붙임 표토를 불량토로 시공하여 떼를 고사케한 것은 없는지 ○ 돌붙임의 길이 및 사석단면을 실제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것은 없는지 ○ 상하수도관 매설심도를 설계보다 얇게 시공하여 외압에 의한 파손 또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것은 없는지 ○ 상하수도관 보호를 위하여 관 하부에 모래를 부설하도록 설계된 것을 토사로 시공한 것은 없는지 ○ 방수공사시 도막, 시트방수재의 두께는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 |

4. 건설공사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3. 준공 및 기성고 검사원처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수립 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 준공검사원은 준공기일 내에 제출하였는지 ○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것은 없는지 ○ 검사한 기성고 금액 중에 시공 또는 검수되지 않은 공사비 및 기자재 값이 포함된 것은 없는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
| 14. 준공검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을 준공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없는지 ○ 시공부분이 규격, 품질, 용량 등에 미달되거나 조잡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한 것은 없는지 ○ 준공기간내에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사를 지연시킨 것은 없는지 ○ 시공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한 것은 없는지 ○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항목의 정산은 시행하였는지 ○ 준공계 접수 후 적정기간내 처리하였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

제5장 도시주택건설

| 세부사무명 | 감사착안사항 | 관계법규 |
|------------------------|--|---|
| 15. 하자관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였는지 ○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 설계도서 및 보수지시대로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 하자담보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자체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은 없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6. 유지관리 및 보수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구조물이 누수, 백화현상, 균열, 탈락 및 철근노출이 된 것은 없는지 ○ 강구조물의 도장이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하여 강재가 부식된 것은 없는지 ○ 교량의 교차장치는 부식이 없고 가동이 원활히 되는지 ○ 보수공사를 부실하게하여 보수한 구조물이 오히려 불안전하게 된 것은 없는지 ○ 교량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지 | |
| 17. 감리용역계약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능력이나 감리용역 수행실적 등 사전자격심사(PQ)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하여 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평가기준을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한 것은 없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 세 부 사 무 명 | 감 사 착 안 사 항 | 관 계 법 규 |
|-------------------------------|--|----------------------|
| 18. 상주감리원 관리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원교체시 당초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였는지 ○ 상주감리원이 타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이중 배치되는 등 실질적으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 기준보다 기술등급이 낮거나 실무경험이 없는 감리원만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
| 19.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적정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착공 단계에서 발주기관, 감리자 및 시공자간의 업무분담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 공사시행 단계별 검측, 품질관리, 사용자재검사, 안전점검 및 하도급관리 등에 대한 검토·확인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 공기내에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가 취한 공정만회대책 등 조치가 적정한지 ○ 시공중지, 재시공 등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정한지 ○ 감리자가 해야 할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발주관서에서 시행한 것은 없는지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와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 |

건설공사분야 주요 지적사례

1. 도로계획고 조정 검토 소홀
2. 하천공사 시행계획 부적정
3.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업무 소홀
4. 품질관리 운영 부적정
5.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검토 소홀
6.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 소홀
7. 소음방지대책 수립 부적정
8.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부적정
9. 감리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10. 감리원 배치·운영 관리 부적정
11.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설계 부적정(타 기관)
1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 설치계획 부적정(타 기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1. 도로계획고 조정 검토 소홀

- ○○도로 공사현장은 연약층이 최소 0.1m에서 최대 17.7m까지 분포하는 연약지반으로서 지반개량을 위하여 과재쌓기(H=2.16~4.76m)와 PBD를 병행 적용하여 구간에 따라 12.6~52.5m를 침하시킨 후 과재쌓기 제거(평균H=1.84m) 토공량 138,721m³를 사토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
- 그러나 동 공사현장은 본선 좌측이 농경지고, 우측이 하천이라 지하수에 영향을 덜 받도록 도로계획고를 올리는 것이 도로 유지 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장물이 없어 계획변경 검토가 용이함으로, 위 공사의 연약지반 개량 후 과재쌓기 제거 수량의 외부 반출을 138,721m³ → 66,438m³로 줄이는 대신에 도로 계획고를 약 H=35cm 올리면서 도로의 노상재 등에 유용하다면 사토처리비 ♪♪♪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검토·반영 하지 않음.

2. 하천공사 시행계획 부적정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이 하천변 쉼터를 선호한다는 사유로 ○○천의 통수단면을 3단에서 하천 기본계획과 다르게 1단으로 변경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하폭은 17m 감소되고, 홍수위는 1.35m 상승, 제방여유고는 0.23~0.61m 부족하게 되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치수기능을 저해하였고 향후에도 치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결과 초래.

3.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업무 소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의하면 지하차도 공사의 경우 정기안전 1차 점검은 토공사 시공시, 2차 점검은 총공정의 중기단계시, 3차 점검은 총공정의 말기단계시로 3차에 걸쳐 실시하여 공사단계별로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시공사에서는 위 공사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0000. 0. 00. △△기관과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중복 계상되어 ♪♪백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으며, 또한 위 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토공사 시공시 1차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차 점검을 생략하고 2차 단계인 총 공정의 중기단계(구조물 시공 중)에 첫 번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사단계별 품질과 안전 확보 소홀.

4. 품질관리 운영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시공사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운영을 위한 초급 품질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실제 배치하지 않았고, 품질시험실을 각종 자재 및 장비 창고와 겸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실 규모는 계약면적 보다 작게 설치하였고,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현장에서 제작·시험하지 않음. 특히 주요 구조체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원인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지하층 벽체 ○개소에 균열 부위로 누수가 발생하도록 부실시공.

5. 성토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검토 소홀

- 동상방지층은 포장구조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층이며,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인 부순돌, 막자갈 등을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 만큼 노상의 상부에 포설하는 층으로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6.포장공에 의하면 성토구간에서는 노상재료가 양호할 경우 동상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성토고 2m 이상 구간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고 노상토로 대체해야 함.
- 그런데도 △△기관에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노상 마무리 면으로부터 2m 이상 성토되는 구간인 총 000m 구간에 대하여 동상방지층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동상방지층을 30~50cm 포설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계획함으로써 공사비 ㄱㄱㄱ백만 원을 과다 계상.

6.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 소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7.교통안전시설공에 의하면 낙석방지울타리와 낙석방지망(또는 녹생토) 중복 설치 시 낙석방지울타리를 삭제하고, 경사가 급한 절개면에서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시에서는 ○○공사의 000m 구간의 비탈면 경사가 약 1:1~1:1.5로 완만하고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위험이 적으므로 식생보호공(암절개면보호식재공, Seed spray+거적덮기)만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동 구간에 식생보호공과 낙석방지울타리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공사비 ㄱㄱ백만 원 과다 계상.

7. 소음방지대책 수립 부적절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35호, 2011.9.30.)」 제4조(소음저감 목표기준)에 의하면 방음시설의 설치로 수음점에서의 소음저감 목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 1”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도로변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은 낮(06~22시) 75dB, 밤(22~06시) 70dB 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시에서는 위 공사의 소음방지대책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공업지역의 소음환경기준(낮 75dB, 밤 70dB)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낮 73dB, 밤 63dB)을 적용하여 방음벽 L=807m, H=3m를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공사비 ㄱㄱㄱ백만 원 과다 계상.

8.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고, 계약문서(계약서, 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 등)는 같은 규정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같은 규정 제19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설계서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런데도 △△시에서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하수처리수조의 예폭시 방수 공사의 자재가 시방서에는 무용제로, 일위대가표에는 수용제로 되어 있었고,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설계서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예폭시 방수 공종의 계약단가를 부당하게 증액 설계변경함으로써 공사비 000백만 원 낭비.

9. 감리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한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공종은 하천제방, 도로(국도, 지방도 제외) 공사 등, 보통 공종은 600mm 이상 하수관거, 400mm이상 상수관거, 단순 공종 및 복잡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 공사 등, 복잡 공종은 정수장, 하수 처리장 공사 등에 해당.
- 그런데도 △△시에서는 ○○공사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 별표1에 의거 단순 또는 복잡 공종에 해당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통 공종으로 구분하여 감리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복잡 공종으로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감리비 00,000천 원 과다 계상.

10. 감리원 배치·운영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E/S와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와 해당 공사 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비를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감리원을 투입할 때에는 착공 당시 공사예정공정표에 맞게 해당 공정에 맞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 진행공정과 감리 진행공정이 일치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정공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예정공정에 맞게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해야 함.
- 그런데도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공정표 상에 20△△. △. △. 공사발주 후 △월부터 △월까지 토목 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감리원은 토목감리원만 투입하여야 하나 토목공사와 관계없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및 소방감리원을 추가투입 하였고, 20△△. △월에는 건축, 설비 및 전기공종의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토목감리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리원 배치를 공사공종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사가 65.1% 진행될 때 감리비가 전액 지급되는 결과 초래.

타 기관 감사 지적사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허용 소류력이 20~25kg/m²인 돌망태로 호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 함으로써, 환경 훼손 우려 및 불필요한 호안 공사비 278백만 원 집행 우려가 있음.

11.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설계 부적정(○○도)

- 「○○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하여 준공하지 않은 공사구간 내 포장노면의 소파보수 등 간단한 도로유지보수를 맡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간단한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PS단가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 개략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그런데도 ○○관서에서는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물량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도로 포장공사비를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고도 986백만 원의 도로 포장 공사비를 별도의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에 중복 계상하였으며, 또한 아스콘 자재를 산정하면서 정당 단위 중량 2.32t/m³ 보다 5배나 큰 11.67t/m³으로 산정하는 등 총 2,538백만 원 과다 계상.

12.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호안 설치계획 부적정(○○도)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하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현재의 하천환경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허용소류력이 25kg/m² 이상일 경우에 돌망태 등 강성 호안으로 시공해야 함.
- 그런데도 ○○관서에서는 위 공사구간 중 380m는 남강의 배수(Back Water) 영향 구간으로 식생이 양호하고 소류력(0.07~0.71kg/m²)이 약하여 기존 제방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구간에 기존 식생 등을

제 2 편 감사관련 서식



1. 감사관련 서식

3. 질문서

| | |
|--|-----------|
| 발부번호 | |
| 제 목 :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미이행에 관한 사항 | |
| 질문사항 | 2011년 월 일 |
| ○○○○○시 ○○국장 | △ △ △ 귀하 |
| 감사원 사무처 감사단장(○○국 제1과장) | ◇ ◇ ◇ (인) |
| <p>다음 사항에 대하여 2011. 12.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p>귀 청에서 2010. 5. 10.부터</p> | |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경기도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위 (주)○○○○이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 2.
- 3.

※ 위 질문서의 내용은 감사원의 정식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 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대상기간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현지조치 요구서

| | |
|------|--|
| 일련번호 | |
| 수령자 | |

현지조치 요구서

2000년도 에 대한 기관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0.
□□기관 감사단장

(인)

| 소 관 | 시행년도 | 처분종류 | 금 액 | 인원 |
|-----|------|------|-----|----|
| | | | | |

제 목 :

(현 황)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 | | | |
|-------|-----|-------|-----|
| 담 당 자 | 팀 장 | 감사담당관 | 결 재 |
| | | | |

5. 변상명령서

| | | | | |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6급 김정래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 회신기일 | |
| 결재 담당자 |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경 기 도 변 상 명 령

변상명령 번호 20××년 변상명령 제××호

계 목 추징금 등 횡령

관 계 부 서 □□본부

회 계 연 도 20××, 20××

회 계 명 □□회계

변상명령대상자 □□광역시 □□구 □□동 ××(현 □□구치소 수감 중)
 갑○○(주민등록번호 : ××××××-×××××××)
 (전 □□본부 수입금출납공무원, □□주사)

주 문 위 사람은 국가에 1,438,118,070원을 변상할 책임 있다

이 유
 위 사람은

2000.
[별표 생략]

※ 감사결과를 시행할 때에는 위 표준서식 항목 중 상단 박스를 삭제하고 시행할 것

감사자 : 지방○○주사 김 ○ ○(시행문에 기재)

6. 징계 · 문책요구서

7. 시정요구서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급 ○○○ | | 공개(○) 비공개() |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급 ○○○ | | 공개(○) 비공개() |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경기도 징계요구

제 목
관 계 기 관
징 계 대 상 자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조치할 사항

감사자 : 지방○○주사 김 ○ ○(시행문에 기재)

경기도 시정·훈계요구

제 목
관 계 기 관
내 용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시 □□구 본청
□□시 □□구에서 20XX.

조치할 사항 □□시 □□구청장은

【 시정 】
000천원 부과 징수하고

【 훈계 】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생략]

감사자 : 지방○○주사 김 ○ ○(시행문에 기재)

1. 감사관련 서식

| | | | | |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급 ○○○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경기도 주의요구

계 목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관 계 기 관 □□시 □□구 본청
내 용

□□시 □□구에서 20XX.

조치할 사항 □□시 □□구청장은 000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 : 지방○○주사 김 ○ ○(시행문에 기재)

제 2 편 감사관련 서식

9. 훈계(경고)요구서

| | | | | |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급 ○○○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경기도 훈계(경고)요구

계 목 국외 어학연수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교육청 본청
내 용

□□□□교육청에서

조치할 사항 □□□□교육청 교육장은 앞으로 00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표 생략]

◇ 기관의 경우

조치할 사항 □□□□지방청장은 앞으로 0000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00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의 경우

- ① 앞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00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생략)

감사자 : 지방○○주사 김 ○ ○(시행문에 기재)

10. 법령상 개선요구서

11. 고발서

| | | | | |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행정 ○급 ○○○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감사관 | |

| | | | | | |
|----------|-----|-----|----------------|--------|-----------------|
| 일련번호 | | 감사자 | 5급 김△△, 6급 오○○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 ○명 | 수감부서 | 처분요구일자 | |
| 결재 | 담당자 | 팀장 | 감사담당관 | | |

경 기 도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주택특별공급 관련 규정 불합리
관 계 기 관 □□□□본부
내 용

□□□□본부에서는

경 기 도 고 발 서

제 목 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횡령
피 고 발 인 성 명 : 갑○○(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근무처 : □□□□부 □□사업본부 □□청 □□국
고 발 건 명 업무상 횡령
고 발 사 실
위 사람은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표 생략]

[별표 생략]

12. 수사요청서

| | | | | | |
|----------|----|------|----------------|--------|-----------------|
| 일련번호 | 1 | 감사자 | 5급 김△△, 6급 오○○ | | 공개(○) 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 수감부서 | - | 처분요구일자 | - |
| 결재 담당자 | | 팀장 | | 감사담당관 | |

경기도 수사요청서

- 수사대상자**
- ① 성명 : 갑○○(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도 □□시
근무처 : □□시 □□□국 □□□과
 - ② 성명 : 을○○(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도 □□시 □□구
근무처 : □□시장

혐의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사실

위 사람들 중

13.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서식 1] 지적사항 총괄

| (단위: 건, 백만 원, 명) | | | | | | | | | | | | | | |
|------------------|-----------------|-----------------|------------|------------|-----------|-----------|-----------|----|------------------|----|----|----|------------|------------------|
| 총건수 | 신분상 조치 인원 | 재정상 조치 금액 | 변상 (금액) | 징계 (인원) | 시정(금액) | | | | 훈계 경고 (인원) | 개선 | 권고 | 통보 | 고발 (인원) | 모범 사례 (인원) |
| | | | | | 소계 | 추징 | 감액 | 기타 | | | | | | |
| 27 | 21 | 116 | 1 (50) | 1 (1) | 3 (66) | 1 (46) | 1 (20) | 1 | 10 (15) | 1 | 2 | 4 | 3 (5) | 2 (4) |

※ 신분상 조치인원 : 처분요구 실적 중 개인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 인원수
(징계+훈계(경고)+고발)

※ 재정상 조치금액 : 처분요구 실적 중 변상이나 시정 등 재정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치금액
(변상+시정)

[서식 2]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1.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시책용)
 - 제목
 - 현행(문제점)
 - 대책
 - 기대효과
 - ※ 개조식으로 작성
2. 모범사례(개인용)
 - 소속, 직, 성명
 - 제목
 - 내용
3. 대상자 표창 공적요약서

| 소속 | 직 | 성명 | 생년월일 (만세) | 근무연한 (현 근무부서) | 공적내용 요약 |
|----|---|----|--------------|------------------|---------|
| | | | | | |

1. 감사관련 서식

[서식 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단위: 천 원, 명) | | | | | | | |
|--------------|---------------------|-----|---------|-------------|-------------|----------|-----|
| 일련 번호 |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 제 목 | 처 분 요 구 | | | 조치기 한 | 감사자 |
| | | | 처분종류 | 재정상 조치금액 | 신분상 조치인원 | | |
| | | | | | | | |

[서식 4]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제 목 | 처 분 내 역 | | | | |
|-----------------|---------|-----|-----|-----|---------|
| | 조치양정 | 소 속 | 직 급 | 성명 | 관련 지적사항 |
| ①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 혼계 | △△과 | 행정6 | □□□ | ① |
| ② 가족수당 부당 수령 | 경징계 | ××과 | 행정6 | ◇◇◇ | ①, ② |
| ③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 중징계 | ○○과 | 행정5 | △△△ | ①, ③, ④ |
| ④ 유가증권 관리 소홀 | | | | | |

[서식 5]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단위: 천 원, 명) | | | | | | |
|--------------|---------------------|-----|------|-----|----|---------|
| 일련 번호 |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 제 목 | 조치사항 | 금 액 | 인원 | 감사 자 |
| | | | | | | |

제 3 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1. 감사문장에 자주 쓰이는 용어 표기방법

1. 전문용어 표기

가. 다음 이름은 전문용어로 보아 붙여 쓴다.

- (1) 특별회계·기금 이름:
(보기) •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대외경제협력기금
- (2) 위원회 이름:
(보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 (3) 기관·법인·단체 이름:
(보기)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대일주식회사
- 다만,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이 상호의 앞부분에 올 경우에는 띄어 쓴다.
(보기) • 학교법인○○학원 • 주식회사○○건설
• 사단법인○○연합회
- (4) 제도·시책사업 이름:
(보기) • 수출입신고제 • 하천정비기본계획
- (5) 세금·부담금·부과금 이름:
(보기) • 법인세특별부가세 • 직업훈련분담금
- (6) 회계직 이름:
(보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관의 보조자
- (7) 행정처분의 이름: (보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나. 전문용어가 너무 길어 붙여 쓰면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작은따옴표(')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 (보기)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다. 기관명 뒤에 전문용어(규정)를 쓰는 경우 기관명과 전문용어(규정 등) 사이를 뚫는다.

- (보기)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또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취업규칙」
-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또는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라. 기관장(長)의 직위는 다음과 같이 쓴다.

- (보기) • 금융감독원∨원장 → 금융감독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2. 법령 표시

가. 법령 이름

- (1) 법령(법률, 조약, 시행령, 규칙, 조례), 훈령, 지침, 통첩, 예규, 내규 등의 이름은 관행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같은 규정' '같은 조'는 띄어 쓴다.
- (2) 법령 이름은 낫표(「 」) 안에 알맞게 띄어 쓴다.
 - (보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지침」

나. 조항 표시

- (1) 법령은 조·항·호 단위로 붙여 쓴다. 목에는 ()를 쓰고,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를 쓴다.
 - (보기)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별표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 [별지 제88호 서식]
- (2) 법령의 한 조항은 가지 번호로 나가더라도 붙여 쓴다.
 - (보기) • 「관세법」 제28조의6

다. 부칙 표시

- 부칙이 하나만 있을 경우: 「헌법」 부칙 제2조
- 부칙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산림법」 부칙(1990. 1. 13.) 제2조
- 부칙이 개정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1974. 12. 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라. 구법(舊法) 표시

- 개정일자,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구법을 표시한다.
 - ※ 개정 법령 자체는 '어떤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법령 표시로서 적정하지 않다.
- (1) 일부 개정의 경우:
 -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구 「예산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59호)
 -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 (2) 전문(全文) 개정의 경우:
 -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 전면 개정
 - (3) 법령 이름이 개정된 경우:
 - (○)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 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참조)
 -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4) 삭제된 경우:
 -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6호(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 (5) 폐지된 경우:
 -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 ※ 전문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은 조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부 개정 되었으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름 앞에 '구(舊)'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마. 판결문 등 인용

- (보기) • 감사원 √1998. √3. √10. 자 √98감심 √ 제68호 √ 결정
- 대법원 √1997. √10. √24. √ 선고 √97누447 √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 선고 √94다56852, √56853 √ 전원합의체 √ 판결
- 헌재 √ 1994. √7. √29. √ 선고 √92헌바49, √52 √ 결정

3. 소재지 · 주소 표시

가. 법인 · 개인사업자 · 자연인의 권리 · 의무관계와 관련 없는 경우

- 소재지 또는 주소를 쓰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법인 · 개인사업자 · 자연인의 성격을 쓴다.

- (보기) •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는……
- 토지소유자 ○○○은(는)……

※ 다만, 사건의 성립 여부, 법인 · 개인사업자 · 자연인 간 구분(예: 동명이인) 등과 관련하여 소재지 또는 주소를 기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괄호 안에 쓴다.

나. 시정요구 등 법인 · 개인사업자 · 자연인의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괄호 안에 쓰되, 필요할 경우 법인 · 개인사업자 · 자연인의 성격을 함께 쓴다.

- (보기) • 하천골재채취 대행업체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남도 시 동 876)는……
- 민원인 ○○○(광역시 구 동 345)은(는)……

4. 단위 표시

가. km, kg, %, m' 등 여러 가지 단위 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킬로미터' 등으로 풀어 쓰지 아니하고 부호 그대로 표기한다.(반드시 '인쇄체소문자'로 쓴다)

- (보기) • 5킬로미터 → 5km
- 5제곱미터 → 5m²
 - 5밀리미터 → 5mm
 - 5킬로그램 → 5kg
 - 5퍼센트 → 5%
 - 5톤 → 5t

5. 연월일 표시

- (보기) • 1996.∨11.∨22.∨위 업체가
- 같은∨해∨9.∨12.∨위 업체가
 - 1996년∨9월∨말경∨위 업체가
 - 1996년∨9월경∨위 업체가

※ 별표에 연월일을 아래로 맞추어 표시할 때에는 1~9월과 1~9일은 두 칸을 떼는다.

6. 금액, 이율 등의 표시

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함께 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보기) • 5,000,000원 • 오백만 ∨ 원
 • 미화 ∨ 200,000,000달러 • 미화 ∨ 합계 ∨ 200,000,000달러
 • 계약금 ∨ 3,000,000원 • 공사비 ∨ 3,000,000원
 • 500만 ∨ 원 • 300여 ∨ 만 ∨ 원 • 259만여 ∨ 원
 • 일억 ∨ 이천삼백오십만 ∨ 사천구백오십칠 ∨ 원
 [※ ‘만(萬)’ 단위로 띄어 씀]
 • 연 ∨ 2할 ∨ 5푼 ∨ 3리 • 월 ∨ 2푼

나. 판정금액, 추정·회수·보전금액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표시한다.

- 판정사항: ‘이유’의 손해발생은 1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주문’의 판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시정사항 등: ‘내용’은 1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조치할 사항’의 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만, 국세의 과세표준액, 수입금 중 철도운임 및 요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금액은 ‘주문’과 ‘조치할 사항’에 1원 단위까지 계산한다.

다. 금액단위는 1원 단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천, 백만, 억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 (보기) • 133,770,000원, 133,770천 원, 133백만 원, 1억 원

라. 외화금액은 그대로 쓰되, 행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 안에 표시한다.

- (보기) • 미화 100달러(한화 135,000원 상당)
 • 일화 100엔(한화 1,200원 상당)

7. 참고자료 등 작성 · 표시

가. 본문의 주석

(1) 인용 ·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본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①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보기) 박동서(1990)에 의하면 ~; 신무섭(1985)의 연구에서도 ~; 김창준 · 안병만(1989:79)은 ~; Hwang(1987)을 들 수 있다.; Perry와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Brown 등(1982)을 중심으로 ~

②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보기)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동서, 1990; 이종범 등, 1990:410-412; 김창준 · 안병만, 1989:79; 신무섭, 1985)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Perr & Wise, 1990; Hwang, 1987; Brown et al., 1982; Thomas, 1976:90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본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예: 하였다.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나. 표와 그림의 주석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본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예: [표 1], [그림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 아랫부분에 밝힌다.

(보기) 자료: Duncan(1981:349)의 재구성

(2) 표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 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p<.01, *** p<.001), 일반주(‘주:’로 표기하고 기재)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그림에 대한 주도 이에 준한다.

다. 참고자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 등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보기) 김창준 · 안병만(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 · 김광웅 편, 「의회와 행정부」, PP.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범 · 김준한 · 정용덕(1990), “행정과학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PP.367-426.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Hwang, Yun-Won(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erry, James L. & Wise, Lois R(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PP.367-426.

Thomas, Kenneth(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P.889-936, Chicago: Rand McNallyCollege PublishingCo.

Walter E. May, "International Equipment Leasing: The UNIDROIT Draft Convention", 105 Harv. L. Rev. 80(1991).

- ※ 105는 권수(volume number)를, 80은 면수(page number)를 각각 표시한다.
- ※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인용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책이름은 큰따옴표(" ") 또는 겹낫표()로, 논문 제목이나 잡지 제목은 낫표(「 」)로 표시한다.
- ※ 여러 명의 저자가 공동 집필한 논문집 또는 잡지 등을 인용할 때에는 참고한 논문이 포함된 면수를 반드시 기재한다.

8. 문장부호

가. 쌍점(:)

- 앞말에 붙이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단, 시와 분, 장과 절을 구분하거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는 붙여 쓴다.
(보기) • 바우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 오전 10:20
• 65:35의 비율

나. 물결표(~)와 붙임표(-)

- 물결표는 '내지(얼마에서 얼마까지)'를 뜻하므로 '~까지'를 쓰지 않는다.
(보기) • 서울~부산 • 2006~2008년
- 붙임표를 이용해 구간을 쓸 때는 '간(間)'을 붙인다.
(보기) • 서울-부산 간

다. 대괄호([])

- 괄호 안에 다시 괄호를 써야 할 때는 밖의 괄호를 대괄호로 쓴다.
(보기) • [신일(주)]
- 괄호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대괄호로 쓴다.
(보기) • 소[牛] 상인 • 나이[年齡]

라. 가운데뎨점(·)

-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 쓴다.
(보기) • 중·고교 부지, 병원·약국 부지, 주택 부지

마. 큰따옴표(“ ”)와 작은따옴표(‘ ’), 홑낫표(「 」)

- 큰따옴표는 대화, 남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작은따옴표는 남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할 때 쓴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사업, 계약, 계획 등의 이름을 쓸 때도 큰따옴표로 묶어 쓴다.

(보기) •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 “1항”의 내용과 같이
- “폐플라스틱 매립 위탁처리 계약”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 법령, 규칙, 약정, 예규, 고시 등의 이름은 낫표(「 」)로 묶어 쓴다.

(보기) • 「가축검역규칙」

-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9. 표 작성 방법

가. 단위는 표 오른쪽 위() 안에 모아서 쓴다.

(보기) • (단위: m², 만 명, 백만 원)

나. 작성기준일은 제목 옆 또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 표 내부의 각주는 반드시 본문 각주가 아닌 표 각주로 쓴다.

라. 자료출처를 반드시 쓴다.

마. 가로, 세로 항목별 수치 합산에 오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바. 본문에 인용할 때, 본문에 있는 표는 ‘[표 1]과 같이’처럼 번호만 쓴다. 단, 별표는 ‘[별표 1] “부처별 법령 및 규정 내용”과 같이’처럼 제목까지 함께 쓴다.

(표 작성 예시)

[표 1]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업무별 인력현황(2008.7. 1. 기준)

(단위: 명, %)

| 구 분 | 계 | 기획·분석 | 행정지원 | 자료처리 | 조 사 |
|--------|------------------|-----------------|--------------|---------------|-----------------|
| 계 | 4,809 (100.0) | 1,000 (20.8) | 385 (8.0) | 546 (11.1) | 2,888 (60.1) |
| 정부기관 | 4,334 | 739 | 362 | 411 | 2,822 |
| 중앙행정기관 | 3,339 | 627 | 336 | 368 | 2,008 |
| 지방자치단체 | 995 | 112 | 26 | 43 | 814 |
| 지정기관 | 475 | 261 | 23 | 125 | 66 |

주: 1. 중앙행정기관에는 통계청 · 노동부, 지정기관에는 한국은행이 포함됨

2. 2008. 7. 1. 기준

자료: 통계청

10. 본문 각주 기재 요령

가. 각주는 용어설명 등 본문에서 다루기 곤란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달며, 서술형이 아니라 명사 또는 명사형 어미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 ~를 교부한다. → ~를 교부함

나. 가급적 각주별로 4줄을 넘지 않게 작성한다.

제 3 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2. 순화대상 행정용어

1. 순화대상 행정용어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1 | 가건물 | 임시건물 |
| 2 | 가결의 | 임시결의 |
| 3 | 가이드 | 안내서, 지침 |
| 4 | 가이드라인 | 길잡이 |
| 5 | 각광 | 주목 |
| 6 | 간별 | 슈아베기 |
| 7 | 개산 | 어림셈 |
| 8 | 개호 | 보호 |
| 9 | 거버넌스 | 정책, 행정, 관리 |
| 10 | 거양 | 드높임, 들어올림 |
| 11 | 계첩 | 게시, 내붙임 |
| 12 | 관목 | 관목, 떨기나무 |
| 13 | 관련입니다 | (~와) 관련되다 |
| 14 | 구거 | 도랑 |
| 15 | 그랜드 플랜 | 발전 전략 |
| 16 | 그린 빌리지 | 친환경 마을 |
| 17 | 그린 캠퍼스 | 녹색교정, 친환경캠퍼스 |
| 18 | 그린카 | 친환경차 |
| 19 | 글로벌 | 국제(적), 세계(적) |
| 20 | 기 제출 | 이미 제출 |
| 21 | 내시 | 미리 알림 |
| 22 | 네이밍 | 작명 |
| 23 | 네트워크 | ~망, 연계망, 연락망 |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24 | 노에러 노다운 | 완벽한 |
| 25 | 노후시설 | 낡은 시설 |
| 26 | 뉴타운 | 새마을 |
| 27 | 니즈 | 요구 |
| 28 | 다큐멘터리 | 기록영화 |
| 29 | 다크호스 | 새로운 강자 |
| 30 | 단차 | 높낮이차 |
| 31 | 당해연도 | 그해, 올해 |
| 32 | 테크 로드 | 틔마루 산책길, 등산길 |
| 33 | 도작 | 벼농사 |
| 34 | 드라마창작 클러스터 | 협력지구 |
| 35 | 드림스타트 센터 | 희망가꿈터 |
| 36 | 득하다 | 받다, 얻다 |
| 37 | 랜드마크 | 마루지 |
| 38 | 러브투어 | 사랑방문 |
| 39 | 레퍼토리 | 공연목록 |
| 40 | 로드맵 | 밀그림 청사진, 길잡이, 단계별 이행안 |
| 41 | 로드쇼 | 홍보 마당 |
| 42 | 로열티 | 사용료 |
| 43 | 로하스(LOHAS) | 친환경살이 |
| 44 | 롤모델 | 본보기상 |
| 45 | 리더 | 지도자 |
| 46 | 리모델링 | 구조변경, 새단장 |
| 47 | 리스크 | 위험(요인, 요소) |
| 48 |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 | 재충전의 날 |
| 49 | 리허설 | 예행연습 |

2. 순화대상 행정용어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50 | 릴레이 | 이어가기 |
| 51 | 마스타플랜 | 종합계획 |
| 52 | 마스터 플랜 | 종합계획, 기본계획 |
| 53 | 마운틴 바이크 | 산악자전거 |
| 54 | 마인드 | 의식 |
| 55 | 마케팅 | 광고, 홍보 |
| 56 | 만경류 제거 | 덩굴치기 |
| 57 | 만전을 기하다 | 최선을 다하다 |
| 58 | 매뉴얼 | 지침, 편람, 안내서 |
| 59 | 매니저 | 지도사, 관리자, 운영자 |
| 60 | 매니페스토 | 참공약 |
| 61 | 매칭시스템 | 협력체계 |
| 62 | 매칭펀드 | 대응자금, 대응기금 |
| 63 | 메가시티 | ~특화도시 |
| 64 | 메가트렌드 | 흐름, 동향, 추세 |
| 65 | 메세나 | 문예후원 |
| 66 | 메시지 | 알림(말) |
| 67 | 메카 | 중심(지) |
| 68 | 명세 | 자세한 내용 |
| 69 | 모니터 | 살핌이 |
| 70 | 모니터 | 정보검색, 감시, 관찰, 점검 |
| 71 | 미스매치 | 불일치 |
| 72 | 바우처 | 복지교환권, 복지상품권 |
| 73 | 바우처 | 상품권, 이용권 |
| 74 | 바이오 메디컬 | 생명의약중심(지) |
| 75 | 바인더 | 서류 보관철, 서류묶음 |

제3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76 | 발행처 | 펴낸 곳 |
| 77 | 배너 | 현수막 |
| 78 | 백드롭 | 배경막 |
| 79 | 벨리 | 지구, 휴양지, 휴양골 |
| 80 | 뱅크 | 은행 |
| 81 | 벤치마킹 | 견주기, 따라잡기 |
| 82 | 벨트 | 지대, 구역, 띠 |
| 83 | 복명서 | 결과 보고서 |
| 84 | 붐 | 유행 |
| 85 | 브라운 백미팅 | 도시락 회의 |
| 86 | 브랜드 | 상표, 명품 |
| 87 | 브리핑 | (간추린)설명 |
| 88 | 블로그 | 누리사랑방 |
| 89 | 비전 | 이상, 전망 |
| 90 | 비즈니스 | 사업 |
| 91 | 상신 | 보고, 올림 |
| 92 | 색인 | 찾아보기 |
| 93 | 서번트 리더쉽 | 섬김지도력 |
| 94 | 서비스 | 봉사, 접대, 도움 |
| 95 | 서포터스 | 후원자, 지지자, 응원단, 뒷바라지꾼 |
| 96 | 세미나 | 발표회, 연구회, 토론회 |
| 97 | 센터 | 본부, 중앙, 중심(지) |
| 98 | 소셜커머스 | 공동할인구매 |
| 99 | 솔루션 | 해결책 |
| 100 | 스마트 워크 | 원격근무 |
| 101 |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

2. 순화대상 행정용어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102 | 스크랩 | 자료모음 |
| 103 | 스크린도어 | 안전문, 승강장, 차단문 |
| 104 | 스키드 마크 | 타이어 밀린자국 |
| 105 | 스토리텔링 | 이야기짓기 |
| 106 | 스팟 광고 | 반짝광고, 토막광고 |
| 107 | 스페아(스페이) | 예비 |
| 108 | 스포츠 콤플렉스 | 스포츠 복합단지 |
| 109 | 스피드건 | 속도측정기 |
| 110 | 슬로 시티 | 참살이지역 |
| 111 | 슬로건 | 표어, 강령, 구호 |
| 112 | 시그널 | 신호 |
| 113 | 시나리오 | 대본 |
| 114 | 시너지 | 상승효과 |
| 115 | 시니어클럽 | 어르신모임, 어르신동아리 |
| 116 | 시발 | 시작 |
| 117 | 신참 | 새내기 |
| 118 | 실링 | 정해진 한도 |
| 119 | 싱크탱크 | 두뇌 집단 |
| 120 | 아이디어 챌린지 | 창안공모전, 참신한 생각 공모전 |
| 121 | 양케이트(바른표기: 양케트) | 설문, 설문조사 |
| 122 | 애니메이션 | 만화영화 |
| 123 | 양수 | 넘겨받음 |
| 124 | 어메니티 | 쾌적함 |
| 125 | 어젠다 | 의제 |
| 126 | 에듀컬처 콘텐츠 | 교육문화 콘텐츠 |
| 127 | 에코 어드벤처 | 자연탐험시설, 체험시설 |

제3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128 | 엠블럼 | 상징(물/표) |
| 129 | 오가닉(organic) | 유기농 |
| 130 |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 오송 의료 중심도시 |
| 131 | 오픈닝 | 개막(공연) |
| 132 | 오피니언리더 | 여론주도층, 여론이끌이 |
| 133 | 온라인 | 누리망, 전산망 |
| 134 | 움부즈만 | 민원도움이 |
| 135 | 워크숍 | 수련회, 연수회 |
| 136 | 원스톱 | 바로, 한번에, 한자리 |
| 137 | 웰빙 | 참살이 |
| 138 |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 유비쿼터스 |
| 139 | 육림 | 숲가꾸기 |
| 140 | 이벤트 | 행사, 사건 |
| 141 | 인랜드포트 | 내륙항 |
| 142 | 인마운드 | 국내 |
| 143 | 인센티브 | 성과급 |
| 144 | 인센티브 | 유인책, 특전 |
| 145 | 인프라 | 기반(시설), 바탕 |
| 146 | 장르 | 분야 |
| 147 | 제로베이스 | 원점 |
| 148 | 주사(7급 이하 직원) | 주무관 |
| 149 | 카탈로그 | 안내서 |
| 150 | 카프리데이 | 연합체 |
| 151 | 칼퇴근 | 정시퇴근 |
| 152 | 캠페인 | 운동, 홍보 |
| 153 | 캠프 | 체험교실 |

2. 순화대상 행정용어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154 | 커뮤니케이션 | 의사소통 |
| 155 | 커뮤니티 | 공동체 |
| 156 | 컨버팅(converting) | 변환 |
| 157 | 컨소시엄 | 연합체 |
| 158 | 코너 | 방, 마당 |
| 159 | 콘텐츠 | 내용(물), 꾸림정보 |
| 160 | 컨퍼런스 | 회의 |
| 161 | 쿠폰 | 교환권 |
| 162 | 큐시트 | 진행표 |
| 163 | 클래식 콘서트 | 고전음악회 |
| 164 | 클러스터 | 연합(지구) |
| 165 | 클러스터 | 연합지구 / 연합단지 |
| 166 | 클로징 | 마무리, 맺음 |
| 167 | 클리닉 | 교실 |
| 168 | 클린 | 투명한, 깨끗한 |
| 169 | 클린카드 | 모범카드 |
| 170 | 타겟마케팅 | 주요관측, 중점관측 |
| 171 | 탐프루트 | 으뜸과실 |
| 172 | 태스크포스 | 전략팀, 기획팀, 특별팀 |
| 173 | 테라피 | 치유/치료 |
| 174 | 테마 | 주제 |
| 175 | 테스트 베드 | 가늌터 |
| 176 | 테이프 커팅 | 색줄자르기 |
| 177 | 테크노폴리스 | 첨단산업연구도시 |
| 178 | 템플스테이 | 사찰체험 |
| 179 | 투어 콘서트 | 순회공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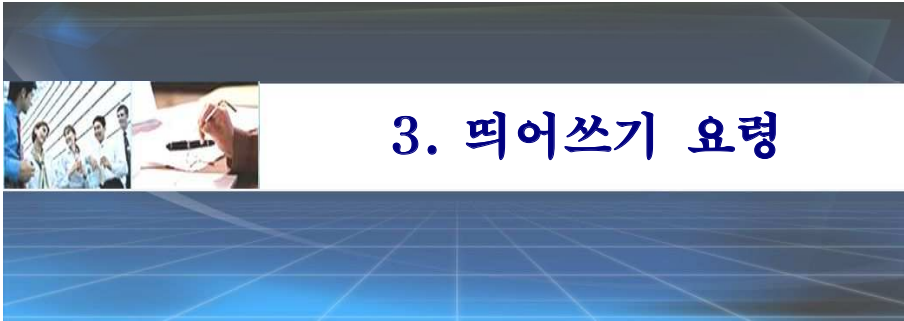
제3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180 | 티켓 | 표(예문에 한하여) |
| 181 | 파워블로거 | 인기누리(방)지기 |
| 182 | 파트너십 | 동반관계 |
| 183 | 팜스쿨 | 농어촌 체험학교 |
| 184 | 패러다임 | 틀, 체계 |
| 185 | 패밀리 | 가족 |
| 186 | 패키지 | 한묶음 |
| 187 | 패턴 | 유형 |
| 188 | 팸투어 | (초청)홍보여행 |
| 189 | 펀드 | 자금, 기금 |
| 190 | 펠릿 | (연료, 비료, 먹이)덩이 |
| 191 | 평방미터 | 제곱미터 |
| 192 | 포럼 | 토론회, 연구회 |
| 193 | 포스트잇(메모지) | 붙임쪽지 |
| 194 | 포스팅 | 올리기 |
| 195 | 포인트제 | 점수제 |
| 196 | 푸드 마켓 | 먹거리 나눔 가게 |
| 197 | 프러포즈 | 고백, 청혼 |
| 198 | 프로그램 | 계획표, 차례 |
| 199 | 프로젝트 | 연구(과제), 일감, 사업 |
| 200 | 프린터기 | 프린터 |
| 201 | 플러스 | 보태기, 증진 |
| 202 | 피드 백 | 되활용 |
| 203 | 하자 | 잘못, 흠 |
| 204 | 허브 | 중심(지) |
| 205 | 헬스케어 | 건강관리 |

2. 순화대상 행정용어

| 연번 | 순화해야 할 말 | 순화한 말(국립국어원 권장) |
|-----|---------------|-----------------|
| 206 | 홈스쿨 | 가정학교 |
| 207 | 홈페이지 | 누리집 |
| 208 | 힐링 | 치유 |
| 209 | 힐링(healing)뮤직 | 치유음악 |
| 210 | Live Poll | (실시간)여론조사 |
| 211 | MOU | 업무협약, 업무협정 |
| 212 | NGO | 비정부 조직, 시민단체 |
| 213 | R&D | 연구개발 |
| 214 | R&D | 연구개발 |
| 215 | SNS | 누리 소통망 |

제 3 편 감사문장 바로쓰기



1. 한글맞춤법 중 띄어쓰기 규정

제 5 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

| | | | | |
|------|-----|------|-------|-------|
| 꽃이 | 꽃마저 | 꽃밖에 | 꽃에서부터 | 꽃으로만 |
| 꽃이나마 | 꽃이다 | 꽃입니다 | 꽃처럼 | 어디까지나 |
| 거기도 | 멀리는 | 웃고만 | |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
|---------------|---------------|
| 아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 |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
|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 | |
|--------|-------|--------|---------|
|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 연필 한 자루 |
| 버선 한 짝 | 집 한 채 | 신 두 켤레 | 북어 한 켤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 |
|-----------|--------------|-----|
|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 육층 | 1446년 10월 9일 | 2대대 |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 10개 | 7미터 |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 | |
|---------------------|------------------|--------------------|
| 국장 <u>결</u> 과장 | 열 <u>내지</u> 스물 | 청군 <u>대</u> 백군 |
| 책상, 결상 <u>들이</u> 있다 | 이사장 <u>및</u> 이사들 | 사과, 배, 굴 <u>등등</u> |
| 사과, 배 <u>등속</u> | 부산, 광주 <u>등지</u> |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
|----------------------|----------------------|
| ㄱ | ㄴ |
| 불이 꺼져 <u>간다</u> . | 불이 꺼져 <u>간다</u> . |
| 내 힘으로 막아 <u>낸다</u> . | 내 힘으로 막아 <u>낸다</u> . |
| 어머니를 도와 <u>드린다</u> . | 어머니를 도와 <u>드린다</u> . |
| 그릇을 깨뜨려 <u>버렸다</u> . | 그릇을 깨뜨려 <u>버렸다</u> . |
| 비가 올 <u>듯하다</u> . | 비가 올 <u>듯하다</u> . |
| 그 일은 할 <u>만하다</u> . | 그 일은 할 <u>만하다</u> . |
| 일이 될 <u>법하다</u> . | 일이 될 <u>법하다</u> . |
| 비가 올 <u>성싶다</u> . | 비가 올 <u>성싶다</u> . |
| 잘 아는 <u>척한다</u> . | 잘 아는 <u>척한다</u> .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나. 전문용어

- (1)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 연결체는 붙여 쓴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면 전문용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붙여 쓰기로 한다.
 - 양별규정, 수산동식물, 환경오염, 수산종묘
 - 소유구조, 재정구조, 복합경영, 산지목재,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어업생산기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체납처분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2) 8음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미단위를 고려하여 띄어 쓴다.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 (3) 단순한 명사가 붙은 명사 연결체는 띄어 쓴다.
 - 신규어업면허 → 신규 어업면허
 - 기존건축허가 → 기존 건축허가
- (4) 다음과 같이 단순한 낱말의 나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띄어 쓴다.

| | |
|------------------------|----------------|
| • 토지소유자 → 토지 소유자 | • 직무분야 → 직무 분야 |
| • 납부관리인 → 납부 관리인 | • 선물신고 → 선물 신고 |
| • 정기에금이자율 → 정기에금 이자율 | • 보유주식 → 보유 주식 |
| • 판매금액 → 판매 금액 | • 위임규정 → 위임 규정 |
| • 허위자료제출 → 허위 자료 제출 | |
| • 출석거부 → 출석 거부 | |
| • 비밀누설 → 비밀 누설(→비밀누설죄) | |
| • 정보제공요구 → 정보 제공 요구 | |
| • 위반사실 → 위반 사실 | |
| • 일정규모 → 일정 규모 | |
| • 외국단체 → 외국 단체 | |
| • 주식취득 → 주식 취득 | |
| • 연장기간 → 연장 기간 | |

다. 복합어

- (1) 하나의 단어(복합어)로 보는 것: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붙임표 (-)로 연결된 것들은 붙여 쓰는 복합어이고, 꺾쇠표(ˆ)로 연결한 것은 붙여 쓰거나 띄어 쓰거나 상관없는 복합어이다. 이 두 복합어는 붙여 쓰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띄어 쓰도록 되어있는 복합어나 아예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복합어라도 관행적으로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붙여 쓴다.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민주택, 산업단지
 - 부과고지하다, 결손처분하다.
- (2) 복합명사처럼 쓸 수 있는 명사 연결체(시설, 사업, 행사, 계약, 신청, 서류, 조직, 기금, 회계, 면허, 처분 등의 이름)는 붙여 쓴다. 복합명사가 아니지만 하나의 단위로 쓰는 것이 편리한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붙여 쓴다.
 - (노인복지 → 노인 복지)→ 노인복지시설
 - (산촌개발 → 산촌 개발)→ 산촌개발사업
 - (산지목재비축 → 산지목재 비축)→ 산지목재비축계약
 - (소유구조개선 → 소유구조 개선)→ 소유구조개선사업
 - (택지개발 → 택지 개발)→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조성 → 공업단지 조성)→ 공업단지조성사업
 - (도시환경정비 → 도시 환경 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
 - (국가균형발전 → 국가 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영업정지 → 영업 정지)→ 영업정지처분
 - (세금납부 → 세금 납부)→ 세금납부고지서
- (3) 단, ‘기관, 사업, 계획, 시설, 행사’ 등의 명사가 있더라도 특정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띄어쓰기를 한다.
 - 공직유관단체 → 공직 유관 단체
 - 지방공기업 → 지방 공기업
 - 총괄기관 → 총괄 기관 • 대규모사업 → 대규모 사업

- (4) 정의 조항에서 규정한 것은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한 표현 단위로 인정하여 붙여 쓴다. 다른 법에서 이 법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철도시설” 이라 함은
 - “철도운영자” 라 함은
 - “철도시설관리자” 라 함은
- (5) 정의 조항은 아니나 법률 내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경우(약칭)에 붙여 쓴다.
- 이하 “종료시점지가” 라 한다
 - 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 이라 한다.

라. 법령명과 법조문의 띄어쓰기

- (1) 명사 연결체로 된 법령명의 경우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띄어 쓰되, 의미 단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능한 한 8음절까지는) 붙여 쓴다. 8음절을 넘는 경우에는 의미 단위가 현저히 나뉘는 곳에서 띄어 쓴다.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 「여객자동차 \vee 운수사업법」, 「정보통신기반 \vee 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vee 보장법」
- (2) 8음절을 초과하는 명사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이 조직 또는 단체(공사, 공단, 재단, 정보원, 연구원, 연구소, 연수원, 기술원, 진흥원, 선물거래소, 협동조합, 보험조합, 공제조합, 자문회의, 안전보장회의, 협의회, 공제회, 연맹등) 및 기금, 특별회계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3) 조사, 부사, 어미가 있는 법령제명은 띄어 쓴다.
- 「행정절차법의 \vee 시행에 \vee 따른 \vee 공인회계사법 \vee 등의 \vee 정비에 \vee 관한 \vee 법률」
- (4) ‘및’ 으로 연결된 경우: ‘및’ 좌우를 띄어 쓴다.
- 「국토의 \vee 계획 \vee 및 \vee 이용에 \vee 관한 \vee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vee 설립 \vee 및 \vee 운영 \vee 등에 \vee 관한 \vee 법률」
- (5)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조·항·호·목 등을 모두 띄어 쓴다.
- 제5조 \vee 제2항 \vee 제4호, 제4조 \vee 제3항 \vee 제1호 \vee (가)목
- (6) 각 항을 나타내는①, ② 등의 번호 다음은 띄어 쓴다.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① \ve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 기타 헛갈리는 띄어쓰기

- (1) 관형사 ‘각(各)’, ‘전(全)’ 따위는 띄어 쓴다.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전인구 → 전∨인구
- (2) ‘안, 밖, 전, 후, 중, 시, 내, 외,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는 모두 앞 말과 띄어 쓴다.
- 범위∨안, 공원∨밖, 시행∨전, 합병∨후, 전문가∨중
 - 계획 수립∨시, 기간∨내, 규정된 사항∨외, 10년∨이상, 5년∨이하
 - 3개월∨미만, 1년∨이내, 공표∨이전, 시행∨이후
- (3) ‘-상, -하’ 는 접미사로서 모두 앞 말과 붙여 쓴다. (단,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위 아래의 의미로 쓸 때는 띄어 쓴다.)
-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회의석상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4) ‘-별, -당’ 은 접미사로서 모두 앞말과 붙여 쓴다.
-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그것에 따른’ 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 마리당 삼천 원/시간당/월 마리당/40명당

(5) ‘간’ 의 띄어쓰기

- 의존명사 ‘간’ 은 앞말에 띄어 쓴다.
 -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 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고부간, 국제간, 다소간, 다자간, 동기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조만간, 좌우간, 천지간, 피차간
(한 단어로 굳어진 것들은 붙여 쓴다.)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 ‘-간(間)’ 은 앞말에 붙여 쓴다.
 - 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50분간

(6) ‘없이’ 가 붙은 단어는 ‘없이’ 를 띄어 쓴다.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허가없이 → 허가∨없이
- 단, ‘있다’, ‘없다’ 가 붙어 복합어가 된 경우에는 ‘있다’, ‘없다’ 를 붙여 쓴다.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를 분간하는 것은 복합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어려우므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7) 동작을 품은 한자어 명사 뒤에 ‘하다’ 나 ‘받다’ 가 붙는 경우 ‘하다’ 와 ‘받다’ 를 명사에 붙여 쓴다.

- 백지신탁하지, 결손처분할, 부과고지할, 체납처분한
- 제공받다, 통지받은, 허가받고, 환급받을, 교부받고자, 위탁받아

제 4 편 감사관련 기본법규(목록)



1. 감사관련 기본법규

감사관련 기본법규(목록)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법 시행령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공감사기준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7. 경기도 감사 규칙
8. 공무원 징계령
9.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0.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1.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2.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13.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14.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15.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16.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7.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8.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는다 -
감 사 액 정 편 람

발 행 인 : 경기도지사 김 문 수

편 집 인 : 감 사 관 이 필 광

발 행 일 : 2013년 1월 16일

발행부서 : 감사담당관 ☎(031) 8008-2691
